

제 1 장 허버의 기본개념 이해

I. 「자유」 개념 이해 활동



헌법에는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대 상 국민학교 상급학년

활동목표 이 활동의 목표는

- 청소년들이 신문을 읽으면서 헌법정신을 단계적으로 발견해 나간다.
- 청소년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활동순서 학급에 있는 일간신문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 ① 일간신문의 전국과 지방 부분을 고른다.
- ② 신문의 두 부분 중에서 정부, 정부 지도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거나, 혹은 공무원이나 그 직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있으면 색깔펜으로 표시를 하도록 학생들에게 시킨다.
- ③ 학생들이 표시한 기사 중 어떤 질문이 있는 것이나 애매한 것을 토의한다.
- ④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제시한다.
 - 만약 색깔펜으로 표시한 기사들이 다 없어진다면 신문은 얼마나 유익하고 재미있게 될 것인가?
 - 신문에 실린 어떤 내용 때문에 감정상, 직업상 혹은 경제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변하게 되었는가?
 - 언론의 자유란 절대적인가? 명예훼손, 출판의 자유, 공정한 재판, 국가기밀 누설 등의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언론(TV나 라디오 뉴스포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또는 단체)이 다른 지역(또는 단체)보다 덜 자유로운 경우가 있는가?
- ⑤ 학생들에게 헌법에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조문(13조~23조, 88조)을 복사하여 나눠준다.

- ⑥ 같이 복습해 보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보도록 한다.
- ⑦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 중 하나를 고르게 하여 그것과 관련있는 신문 기사를 찾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있는 기사가 있는 다른 잡지를 이용하거나 그 신문의 다른 논쟁으로 들어가도 된다.
- ⑧ 이제, 교사는 신문의 기사를 학생들이 칠판에 게시하도록 한 후, 그 위에 헌법의 해당 조문을 타이틀로 붙이게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대 상 국민학교 상급학년

활동목표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몇 가지 상황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 청소년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소개한다.
-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권리 뒤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배운다.

활동순서 ① 아래에 제시되는 “말의 자유” 사례와 헌법 제 21조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② 나누어 준 6가지 사례 각각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한다. 답을 결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배포해준 용지에 개인별로 직접 답을 쓰도록 한다.

③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답을 다 썼으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4명씩 그룹을 짓게 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그룹이 의견일치를 이루도록 지도한다.

그런 다음, 학급 전체에 자기 그룹의 의견을 보고하도록 한다.

④ 다음의 질문으로 토의를 마무리 한다.

- 질문거리
-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는가?
 - 언론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언제인가? (예를 들어 보라)
 -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말의 자유를 더 많이 가져야 하는가?
 - 사례에 소개된 사람들이 어른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 무슨 다른점이 있는가? 그 이유는?
 - 만약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헌법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 21조를 참조하면서, 「말의 자유」사례들에 나오는 6명의 국민학생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말의 자유」 사례들

보기

이종도는 교장선생님에게 욕설을 하였다.

- 이 행위가 다른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그렇다. 교장의 권리가 침해당한다.)
- 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를 규칙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그렇다. 규칙이 필요하다)
-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개인이 만들어야 한다)

사례 1

농담을 잘하는 김영지는 여자 선생님이 지도하는 수학시간에 벌떡 일어나 외쳤다. “담배 냄새가 나요” (사실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참고 : 일종의 명예감정, 인격권 침해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임.

-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행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행위는 규칙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 규칙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사례 2

유장현은 학교급식시간에 볶음밥에 햄이 적게 들어 있다고 불만이 생겨서, 항의편지를 써서 식당안에 넣었다. 편지내용은, “볶음밥에 햄이 너무 적어요.”

참고 : 이 사안은 유장현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써 바람직한 행동임.

-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행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행위는 규칙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 규칙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사례 3

강수지는 코를 킁킁 거리며, 할머니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참고 : 도덕 또는 예절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임. 다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와같은 사실적 행위시에는 할머니의 명예감정을 해치게 되어 명예훼손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행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행위는 규칙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 규칙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사례 4

박미경은 친구들과 도서관 창문 밖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이 행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행위는 규칙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 규칙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사례 5

허재 반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배구보다 농구가 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결정할 모임을 가져도 되는지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참고 : 위 결정모임에서의 결정이 모든 반아이들이 이에 구속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조건임. 만약, 모든 반아이들이 결정에 구속된다면, 일부 아이들만이 참석한 모임은 다른 학생들이 놀이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됨.

-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이 행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행위는 규칙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 규칙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사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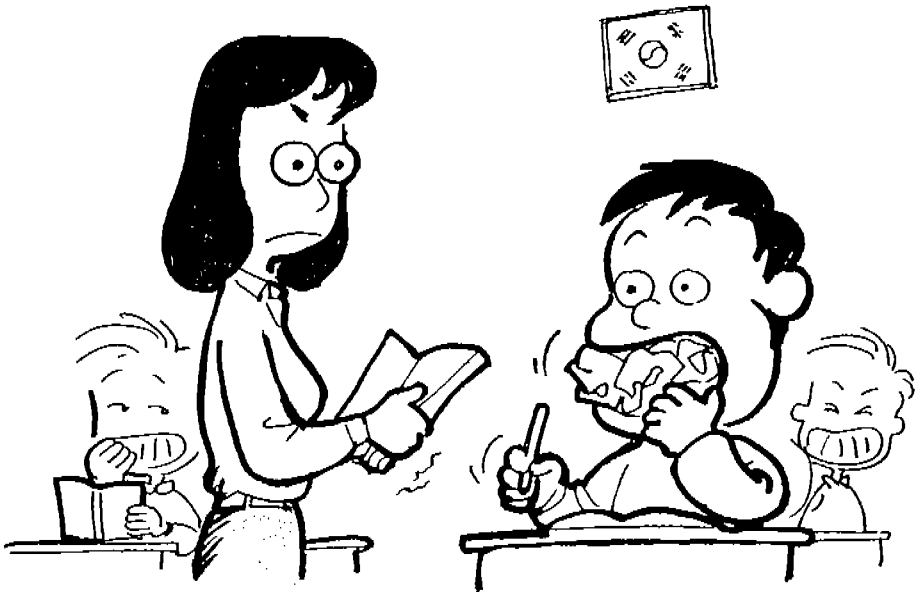
선생님이 김희라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김희라는 선생님을 조용하기 위해 종이 뭉치를 한 움큼 자기 입에다 넣었다.

참고 : 교사의 교수권 범수내에 있는 훈육권의 실행행위로서의 지시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행위이므로,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통제규범과 그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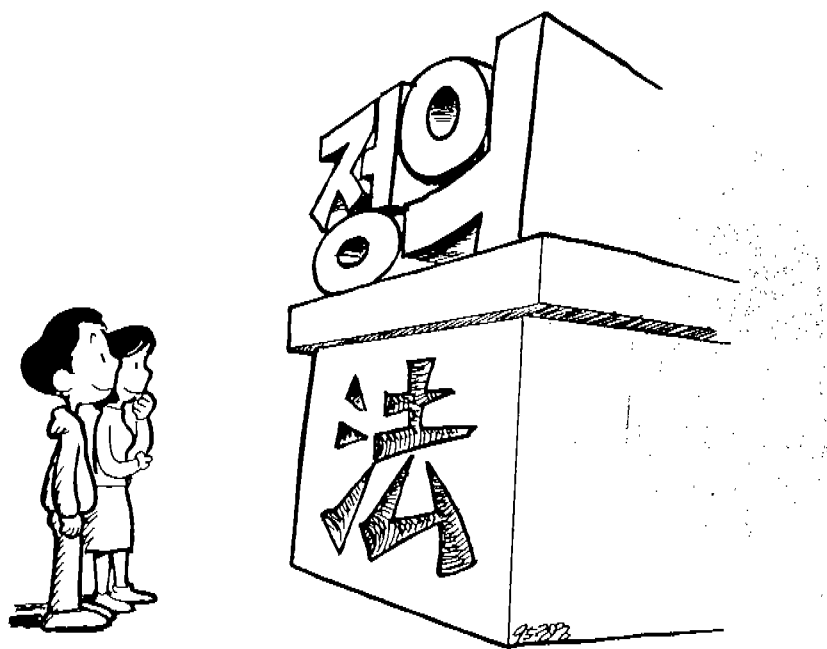
-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행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 이러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행위는 규칙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 규칙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II. 「정의」 개념 이해 활동



「정당한 절차」 개념 이해하기

활동목표

“정당한 절차”의 개념은 협의로는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개념으로서 “적법 절차”라는 법률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보편적 의미의 “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절차(due process)” 개념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행정청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 등 각종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이나 사적인 주체(개인, 법인) 내부에서의 인사처분 등에 대한 내부규정, 민법 등의 각종 법률행위와 관련한 절차적 통제규정 등은 모두 “정당한 절차”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

- “정당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당한 절차의 근원을 밝히고,
- 우리가 경험했던 “정당한 절차”가 무엇인지,
- 다양한 사례들에서 법적 정당한 절차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활동내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세부적 활동내용은

- “정당한 절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 개념의 근원을 밝힌다.
- 각자가 “정당한 절차”를 경험했거나 박탈당했던 상황들을 기술한다.
- “정당한 절차”가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민법 사건과 형법 사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본다.
- 민법과 형법 사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적용하는 대법원의 의견을 분석한다.
- 모의 청문회에 참가하여 정당한 절차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종합하고 정리한다.

활동순서

① 떠오르는대로 “정당한 절차”를 정의해 보자

- 교사는 칠판에 “정당한 절차” 라고 쓴다.
-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쓴다.
- 학생들은 자신들이 쓴 대답을 읽고, 교사는 칠판에 그 답들을 적는다.
- 다 적은 다음,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정의로 통일시키도록 유도한다.

② 「정당한 절차」의 법적 근원은 무엇인가?

- 교사는 학생들이 내린 정의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지시하고, 학생들이 부르는 답을 칠판에 적는다.
- 학생들에게 헌법 제 12조를 큰 소리로 읽게 한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구속(拘束), 압수(押收), 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 보안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노역(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혹은 주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혹은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 자신의 경험을 자진해서 발표하도록 한다(예 :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었던 일, 소비자문제, 학교규율에 대한 일 등).
- 각자의 경험을 듣고, 각 사례들의 경우가 왜 정당하였는지 혹은 왜 정당하지 않은 처사였는지를 토의한다. 정당하지 않은 처사

였다고 생각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처리 되었어야 했는지도 토의한다.

④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가? : 사례분석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들에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킨다. 즉,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시민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만약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그런 권리가 보호되는 것인지를 청소년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지도한다.

사례 1

한 지역의 주민들은 10대 청소년들이 한밤중에 음악을 시끄럽게 켜 놓고 거리를 활주해서 못 견디겠다고 여러 주 동안 불평을 해 왔었다. 어느날 밤, 경찰은 15~16살 쯤으로 보이는 세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빈둥대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잡아갔다.

질문거리

-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가?
- 정부가 정당한 절차없이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가?
- 이 경우에 시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 이 경우에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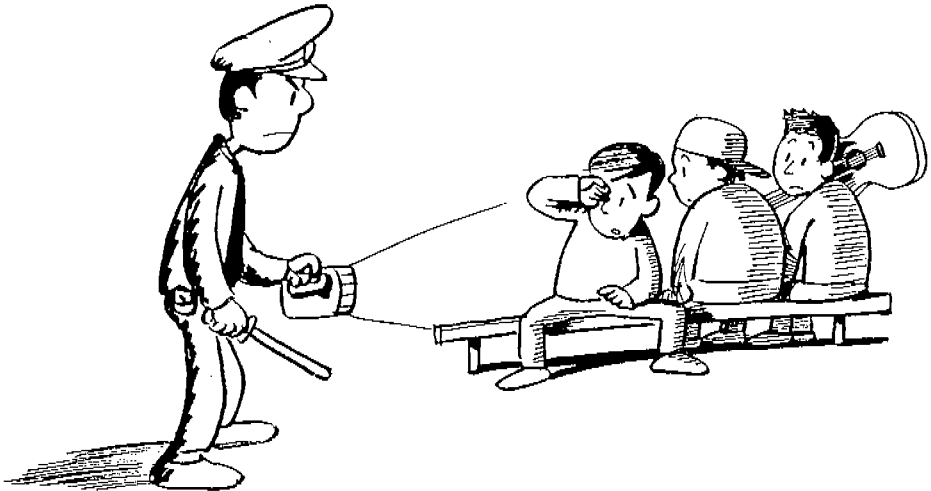
사례 2

서울지하철공사측은 지하철 요금을 25%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요금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 공공재 인상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소위 ‘행정 절차의 민주화’라는 의미를 인식하게 함. 또한, 소비자의 의견 진술권 등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의 개념도 포함됨.

질문거리

-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가?
- 정부가 정당한 절차없이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가?
- 이 경우에 시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 이 경우에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경찰청 사람들과 김건호」

사례 3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김건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혐의자와 외모가 일치했고, 희생자인 송영호 영감이 발견된 공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경찰차에 태워 그를 경찰서로 호송하는 동안 뒷 좌석에서 김건호의 옆에 앉아있던 한 경찰관이 말하기를 “송영감을 쏜 사람이 총을 땅바닥에 버리고 가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야” 김건호는 조용히 끄덕였다. “이 봐, 김건호. 자네 아이들 있나?”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셋이나 있소” 경찰은 조용히 말을 꺼낸다. “만약 애들이 놀다가 공원에서 총을 쏘으면 큰일인데...” 김건호는 가만히 있다가 경찰에게 그 공원으로 가자고 요청한다. 경찰차는 그곳으로 향했다. 김건호는 숲 아래 숨겨진 총을 경찰에게 건네 주었고, 경찰의 증언과 총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었다. (총에는 김건호의 지문이 묻어있고, 송영감이 맞은 총알이 그 총에 꼭 들어 맞았다.) 결국 김건호는 유죄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참고 : 총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는데 있어서는 권총에 묻은 지문이 소위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및 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증거법 상의 논란이 클 것임.

질문거리

-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 경찰이 왜 김건호에게 말을 걸었다고 생각하나?
- 김건호가 총이 있는 곳으로 경찰을 데리고 간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나?
- 이 사례에서 법적 논쟁은 어떻게 되겠는가?
- 정당한 절차는 이 사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 김건호의 변호사는 이 경우에 상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만약 상소된다면, 김건호를 변호하는데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는가?
- 만약 이 사례가 고등법원에 항소된다면, 경찰청의 주장은 무엇

이겠는가?

- 만약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 이유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조차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미국의 역사에 큰 혁명을 일으킨 일화 중 하나가 살인자로 고소당한 영국 군인들과 관련된 ‘Boston사건’이다. 그 군인들을 변호하겠다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존 아담스의 이야기는 인간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으며, 그의 결정은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 힘보다는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 정당한 절차와 법적 사실에 대한 존중
- 변호사의 결정적인 역할 등에 관한 것이다.

대 상 고등학생

활동목표 이 활동은 다음의 세가지 활동목표를 갖는다.

- 법의 정당한 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을 알게 한다.
-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는 피고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것과 법을 존중토록 하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수년동안 변호사들이 부딪혀온 윤리적인 딜레마를 생각해 본다.
 - 누가 범인인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범인의 변호를 수락해야 할 것인가?
 - 어떤 개인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야 할 것인가?

활동순서

1단계 : 학생들에게 뒤에서 제시되는 ‘어느 젊은 변호사의 딜레마’ 이야기를 읽고, 그 사건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 제임스 포레스트는 살인자로 고소된 영국 군인들을 변호할 사람으로 왜 존 아담스를 선택했는가?

(답 : 다른 어떤 변호사도 그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고 존 아담스는 정당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다.)

- 존 아담스는 왜 이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을거라 생각했는가?

(답 : 그는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법의 정당성에 대한 식민지 미국의 수준을 시험하는 것으로 믿었다)

2단계 : 그 사건에 내포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특히, 아담스 경우처럼, 변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중점을 두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지도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룹토의를 이끌어 간다.

- ① 존 아담스는 영국 군인들의 변호를 수락했어야 했는가?

아담스가 변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컨대,

- 이 사건을 맡음으로써 아담스는 왕과 총독, 왕당파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얻을 것이다
- 영국법의 전통아래, 피고인은 죄가 밝혀질 때까지 죄가 없으며 따라서 변호사에게는 변호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법의 정당한 절차는 식민지에서 전례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 ② 아담스가 이 사건을 맡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 중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가?

- 이 사건을 변호한다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아담스를 공격하거나 그의 집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 이 사건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그의 수입이 줄어든다.
- 그는 왕의 군인들을 해방시키려는 변호사로 알려져 그의 정치적 장래를 망칠 수 있다.
- Boston의 자유파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서 출현하고 있었다. 그 단체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아담스는 그들에

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 Boston 에는 왕과 국회의 명령 아래 군대가 있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 불법 외국 체류자들이라고 생각했다. 식민지인들은 군대가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③ 학생들이 변호를 찬성 또는 반대하던 간에,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아래 보기 중에서 어느 것인지를 토의케 한 다음, 진보된 생각 순으로 7가지 이유의 순위를 매기게 한다. 예를 들면, 「관습을 강조하는 이유」보다 「법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유」가 더 진보된 생각이다.

- 의견이 다른 단체에 맞서 복수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 자기 단체의 사리사욕에 쫓점을 맞추는 이유
- 관련있는 단체들에게 동정을 보여야 하는 것에 쫓점을 맞추는 이유
- 관습이나 전통을 강조하는 이유
- 입법의 권위를 존중하려는 이유
- 사회전체의 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 관련있는 모든 단체의 권리를 고려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3단계 :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존 아담스는 그 군인들이 살인의 죄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군인들이 유죄라고 아담스가 믿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자. 그래도 그가 그 사건의 변호를 맡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토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

변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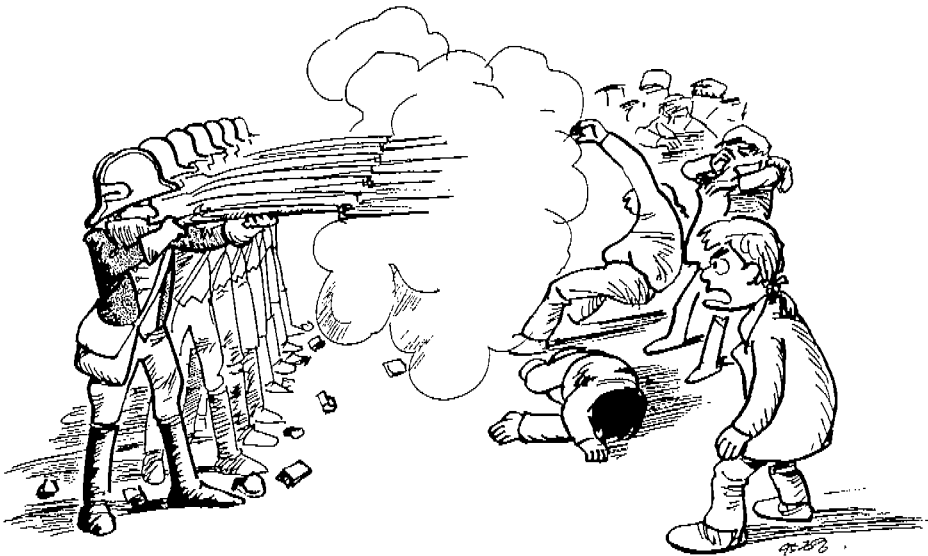
- 자신의 고객이 유죄임을 믿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외관상 유죄로 보이는 혐의자를 위해 노력해선 안된다.

- 만약 피고인이 현명한 변호사로 인해 무죄가 되었다면, 범죄의 희생자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변호해야 하는 이유

- 변호사의 직업상 의무는 고객에 관한 개인적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만약 모든 변호사들이 그 사람이 유죄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변호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 법적으로, 누구도 법정에서 선고받기 전까진 유죄가 아니다.

4단계 :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이준희장」의 변호를 맡고자 한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신문기사를 예로 제시하여 토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본 책에 수록된 「모의 재판의 실례」를 참고해도 좋다.)



어느 젊은 변호사의 딜레마

1760년대는 영국과 미국 식민지 간의 긴장이 팽팽하던 시기였다. 식민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던 것이 혁명을 유도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지세(Stamp Act)라는 세금 부과에 대한 식민지의 반응은 폭력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들은 1765년 8월 14일, 영국왕이 임명한 검인 세관원인 앤드류 울리버의 초상을 ‘자유의 나무’라고 알려지게 된 보스턴 중심가에 있는 큰 나무가지에 목매달았다. 그날 저녁, 군중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울리버의 집 대문을 다 부숴버리고, 그 형상을 질질 끌고 들어 갔다. 가구들도 다 망가뜨리고, 가족들을 위협했다.

12일 후, 무질서한 군중들은 식민지 총독인 토마스 허친슨의 집에 그렇게 또 쳐들어갔다. 그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군중들은 도끼로 문을 박살내고 집을 불질렀다. 그들은 담요, 시계, 가구, 가족 사진 등도 다 파괴했다. 남은 거라곤 지붕과 다 벗겨진 벽,마루 뿐이었다.

샘 아담스가 이끄는 이들 폭도들 중 몇 명은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거리의 폭력을 정치적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밝은 붉은색 코트를 입은 영국 군인들은 이 참담한 보스턴에서 주목을 끄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빨간코트의 사나이들은 드럼을 치고, 파이프를 연주하고, 영국 국기를 흔들며 보스턴의 킹 스트리트를 행진하곤 했다.

끔찍한 학살

1770년 3월 5일 밤, 보스턴에는 미국과 영국의 총돌이 절정을 이루었다. 눈이 발까지 덮히고 달빛이 차갑게 흐르던 날이었다. 영국군의 제 29연대의 휴 화이트 병사는 킹 스트리트를 따라 혼자 걸어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초소 근처에 왔을 때, 난폭한 모습의 남자들이 떼를 지어 그를 조롱했고 그의 머스켓 부츠

를 걷어찼다. 그 바람에 군중들이 모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눈덩이, 얼음 덩이, 석탄더미 등을 마구 던졌다. 그는 놀라서 세관으로 뛰어갔지만, 문은 잠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밀려들어 “저자를 죽여라 . 저자를 죽여라” 고 외쳐댔다.

군중들은 빨간코트를 입은 그 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장교인 토마스 프레스톤 대위는 그 소식을 듣고 화이트를 구하라며 7명의 군인을 보냈다. 그들은 무력으로 군중을 뚫고 화이트에게로 가서 그를 한줄로 둘러쌌다. 군중들은 군인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야유를 퍼부으며 놀려댔다.

군인들 몇명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 한명이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젠장! 발사해!” 그리고 머스켓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무도 맞질 않았다. 그러자 다른 군인들도 쏘아대기 시작했다. 연기가 짙어졌을때 보니, 다섯명이 눈위에 쓰러져 있는데, 세명은 죽어있었고 두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군인들이 다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조용한 분위기를 깼다. 그제서야 프레스톤 대위는 군인들을 거리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했고, 죽은자와 부상자를 옮겼다.

법의 판결

갑자기 전 도시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분노한 군중들은 제각기 구할 수 있는 무기들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싸우자!” 라는 외침이 온 거리에 울려퍼졌다. 토마스 헛친슨 총독이 즉시 킹 스트리트로 뛰어나왔다.

그는 군중을 뚫고 국회 의사당에 도착했다. 그는 달빛을 받으며 발코니에 서서, 저 아래 광장을 가득 메우고 분노해서 울부짖는 군중들을 마주보았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법이 판결해 주도록 합시다. 오늘밤 흘렸던 이 피와 끔찍한 일에 대해 내일 조사가 있을 것ियो.” 군중들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새벽 3시경이 되어서야 모두 돌아갔다.

해가 밝기도 전에 프레스턴 대위와 8명의 군인을 체포하라는 법정 논쟁이 일어났고, 그들은 감옥에서 살인에 대한 재판을 기다렸다. ‘자유의 아들들’의 우두머리인 샘 아담스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끔찍한 학살”이라고 이름지었다. 역사에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 ‘보스톤학살’이라고 남아 있다.

젊은 변호사 존 아담스는 그날, 이 사건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걱정되어 집으로 급히 달려갔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서 제임스 포레스트라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피고인이 된 영국장교 프레스턴 대위의 친구이며 왕당파의 한 사람이었다.

포레스트는 감옥에 있는 프레스턴 대위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 존 아담스가 물었다. “무슨일로 오셨나요?” 포레스트는 아담스에게 프레스턴 대위의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포레스트가 요청하길 “그의 생명이 위험하오, 아담스. 아무도 그를 변호하려 하지 않고 있소. 제발 당신이 좀 해주지 않겠소?” 그는 거의 울먹이며 애절하게 말했다. 그가 아담스를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존 아담스는 정당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존 아담스의 갈등

아담스는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었다. 이 도시의 모든 변호사들은 프레스턴 대위와 8명의 영국 군인을 변호하지 않으려 했다. 그 ‘붉은 코트’를 변호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담스는 식민지에서, 정의로움과 법의 정당한 절차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이 세상 어느 법정에서 있어왔던 재판보다 중요한 재판이 되리라 믿었다.

그는 이 딜레마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집으로 걷고 있었는데, ‘자유의 아들들’ 일당이 나타나서 그를 가로막고 그 “살인

자”들을 변호해선 안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왕당파들은 아담스가 이 사건을 말도록 촉구했다. 그는 그의 아내 에비게일에게 우울하게 말하기를 “토리당의 열명 중 아홉이 내가 자기들편에 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소.” 자기가 이 변호를 맡으면 왕당파들은 자기를 영웅으로 여길 것이지만 그의 친구들인 자유파들은 그에게 실망할 거라는 생각에 그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그는 헛친슨 총독이 그 8명의 군인 모두에 대해 왕의 사면을 청원할 수도 있고,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하리란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담스의 실력으로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총독은 왕의 사면을 청원하는 것보다는 군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나기를 더 바랬었다. 아담스는 만약 자신이 이 사건을 맡는다면, 그는 조지 3세 왕의 명령을 받드는 왕당파의 심복이 되어 버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어느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그는 창문이 깨져있는 걸 봤다. 그의 아내가 방에서 주운 돌맹이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그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그의 집과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 사건은 이기기가 힘들 것이다. 96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 94명이 전적으로 군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증언에 맞서기 위해서 변호사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 그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그는 준비만으로 한달을 꼬박 이 일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리고 재판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의 모든 시간을 이일에만 매달린다면 그는 파산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유지할 시간은 거의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일이 그에게 경제적인 회생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작은 농경지를 좀 늘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정당하게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길 원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이 일을 맡으면 그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집에서조차도 그가 자신의 가족을 특별히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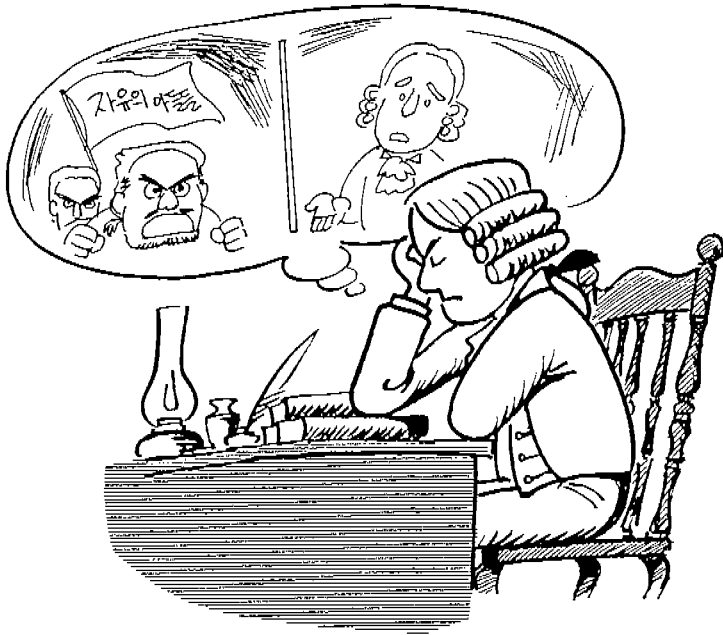
다른 생각도 떠올랐다. 그의 마음 저 편에는 그의 정치적 경력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이 영국 군인들을 변호한다면 그가 입법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 것인가?

영국은 물론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는 친구 자스와 퀸시에게 말하기를, “만약 영국 군인들이 총을 발사하게 된 것은 단지 미국인 폭도들의 조종 때문이라고 증명해 버린다면, 그건 우리 적들을 유리하게 하는 일이지.” 그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들을 감추려 애쓴다고 생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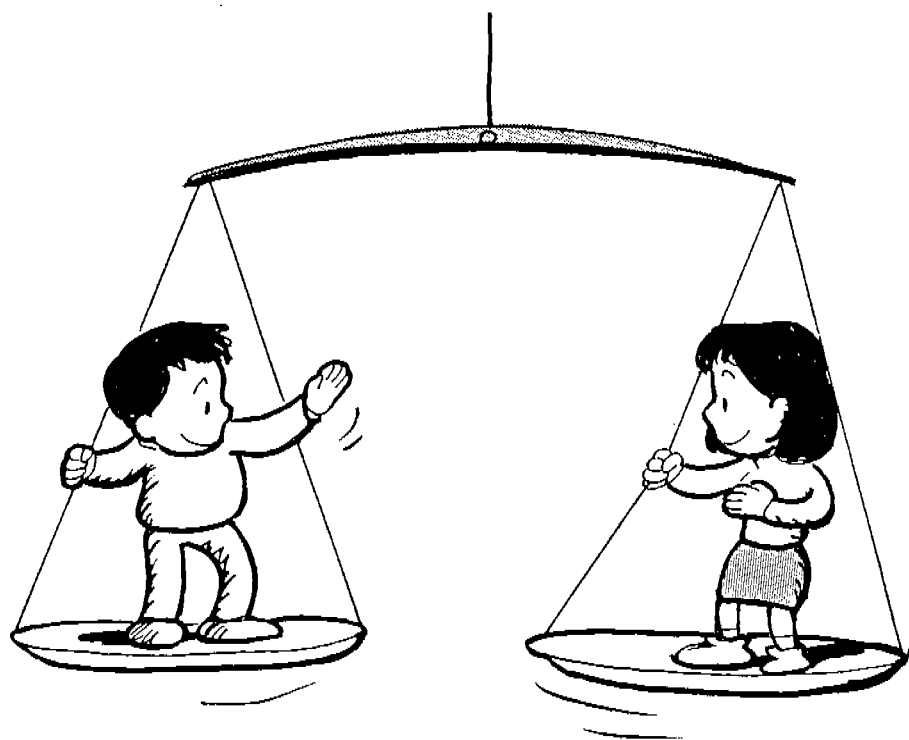
그렇다면, 진정 8명의 영국군인들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

참고 : 역사적 사실

존 아담스는 결국 영국 군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군인 여덟 명 모두가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그 중 두명은 살인보다는 낮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담스의 경력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는 개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이 ‘보스턴 사건’은 이 나라에서 법의 정당한 절차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III. 「평균」 개념 이해 활동



「성차별」인가? 「성구별」인가?

대 상 중고등학생

활동목표 성차별에 관한 여러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한 법적인 원칙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이 끝날 때 쯤에는

- 성 차별 사례에 대한 법적 논리를 설명할 수 있고
- 남녀에 대한 기회 균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활동순서 ● 헌법 제 11조를 칠판에 써 주고, 불법적인 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한다.

● 한 학급을 네개나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하고, 생각할 「성 차별 사례들」을 아래의 보기에서 그룹별로 한가지씩 선택하라고 한다.

● 각자가 자기의 사례에 대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린 다음, 그룹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답변을 토의한다. 각 그룹은 각각 다른 사례를 토의해야 하고, 각 사례마다 그룹의 의견 일치를 보도록 한다.

● 자신들의 사례에 대해 그룹내에서 분석하는 일이 끝나면, 그룹장은 전체 학급 친구들과 토의를 한다. 조장은 각 사례의 근본을 이루는 논리성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도 답변한다.

● 끝으로 학급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거리에 관해 토의하게 한다.

질문거리 ●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대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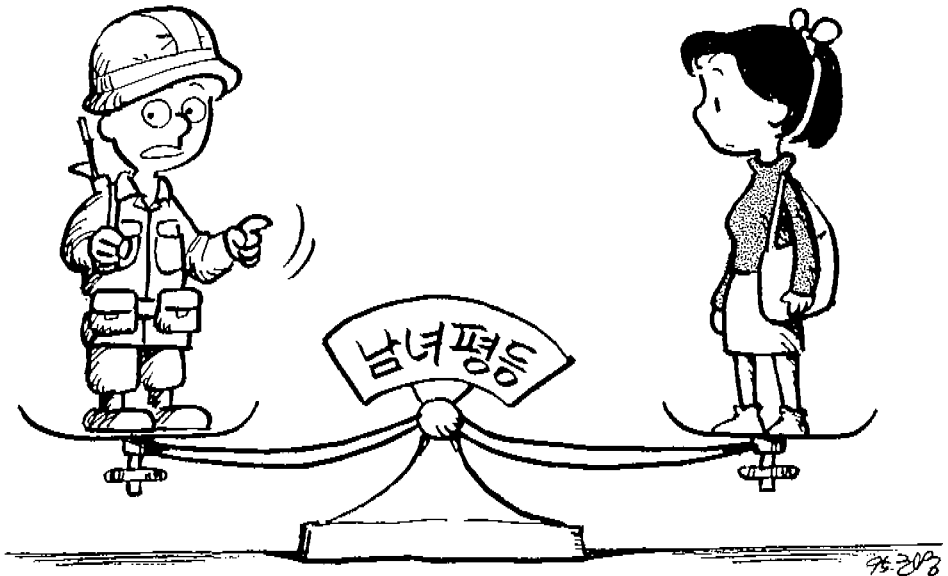
성차별 사례들

다음에 나오는 상황들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 합법적인 「성구별」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성차별」인지를 판단해 보라. 그리고 각 상황에서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대해야 하는 이유와 똑같이 대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사례 1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 성차별이다 ——
- 왜 남녀는 똑같이 대해야 하는가?
- 성구별이다 ——
- 왜 남녀를 다르게 대해야 하는가?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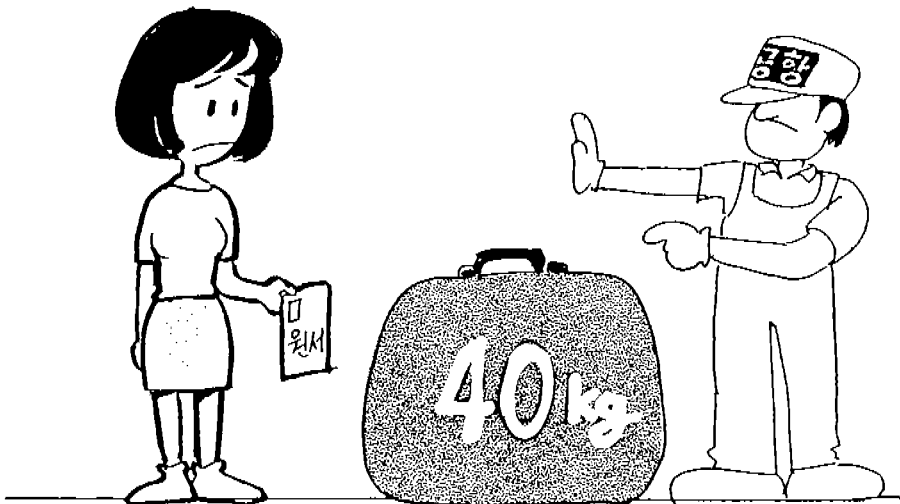
이길자 양은 공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 일은 40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가방들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성차별이다 ——
- 왜 남녀는 똑같이 대해야 하는가?
- 성구별이다 ——
- 왜 남녀를 다르게 대해야 하는가?

사례 3

건국도자기공장에서는 밤에 일하는 남자들 보다 낮에 일하는 여자들에게 낮은 월급을 주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같은 것이다.

- 성차별이다 ——
- 왜 남녀는 똑같이 대해야 하는가?
- 성구별이다 ——
- 왜 남녀를 다르게 대해야 하는가?



사례 4

한양자 선생님은 중학교 체육선생님이시다. 그녀의 아이 출산일 2달전에 학교측은 월급도 지불하지 않고 강제로 그녀를 퇴직시켰다.

- 성차별이다 —— ● 왜 남녀는 똑같이 해야 하는가?
- 성구별이다 —— ● 왜 남녀를 다르게 해야 하는가?

사례 5

진성산업 주식회사에는 150명의 고용인이 있는데 그들 모두 남자이다. 그 회사에서 말하기를 생산부에는 여자들을 절대로 고용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여자들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성차별이다 —— ● 왜 남녀는 똑같이 해야 하는가?
- 성구별이다 —— ● 왜 남녀를 다르게 해야 하는가?

사례 6

장진영양은 여상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서울의 모 시중은행에 입사원서를 냈으나 ‘용모단정한 자’가 아니라고 면접에서 탈락됐다. 그런데, 진영이 옆에 있었던 어떤 남자는 진영보다 훨씬 ‘용모가 단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합격했다.

- 성차별이다 —— ● 왜 남녀는 똑같이 해야 하는가?
- 성구별이다 —— ● 왜 남녀를 다르게 해야 하는가?

사례 7

유장군은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일한다. 이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은 모두 자기보다 더 머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그에게 숏커트를 하라고 요구한다. 여자들은 헤어 네트를 쓰고 일하고 있다.

- 성차별이다 —— ● 왜 남녀는 똑같이 해야 하는가?
- 성구별이다 —— ● 왜 남녀를 다르게 해야 하는가?



사람차별하는 것이 불법인가?

대 상

고등학생

활동목표

어떤 종류의 차별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네살 짜리 아이는 운전 면허증을 가질 수 없다. 여러 상황에서의 차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 차별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 평등권의 주요 근원을 해석할 수 있다.
- 모든이들에게 평등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활동순서

도입단계 : 학생들에게 몇가지 기본적 사항을 질문한다.

- ① 차별은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차별에 대한 정의 : “어떤 편파적인 기준에 의해 사람들을 각각 분류하는 것”)
- ② 학생들에게 “합법적 차별”에 대한 법적인 예를 들어 보자.
 - 운전 면허증은 일정한 나이가 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경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다.
- ③ 왜 이런 차별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답 : 이러한 차별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

분석 단계

- ① 네 명이 한 그룹이 되게 조를 나누고, 헌법 제 11조를 기초로 하여 조 별로 유인물로 제시되는 「사람차별 사례들」 중 하나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각 사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② 맨처음에는 학생 각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종이에 제각기 쓰도

록 한다.

- ③ 그런 다음, 그룹내에서 토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으로 조정한다.
- ④ 끝으로, 조장은 반 전체 토의에서 그룹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한다.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람차별 사례들

사례 1

브레인 웨버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카이저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는 백인 남성이다. 그는 기술적인 무역을 배울 수 있는 부서에 지원을 했지만, 이 부서의 반은 백인을, 반은 흑인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탈락됐다. 노동자의 40%가 흑인들인데도 기술부분에는 단지 2%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회사는 흑백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웨버는 자신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미합중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① 누가 누구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가?

② 이 차별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③ 이 차별이 없다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④ 이 차별은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사례 2

남자 유도선수 10여명이 운동연습을 끝낸후 회식을 하기 위해 서울의 유명한 뷔페 식당에 갔다. 이들은 외모로 보아서도 해비급 거구일 뿐 아니라, 실제 체중도 모두 100kg 이상이 나갔다. 이들이 식당에 들어가려 하자, 식당 지배인이 나와 “죄송하지만, 우리 식당은 운동선수들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다. 이 선수들은 체격으로 인해 식사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에 분개해 식당 시장을 상대로 하여 평등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① 누가 누구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가?

② 이 차별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③ 이 차별이 없다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④ 이 차별은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사례 3

박철순 양은 최근 모대학에서 교정학과를 졸업하고,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교도관 임용시험에 지원을 했지만 탈락했다. 그녀의 키와 몸무게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녀의 키가 160cm가 안됐고, 몸무게가 50Kg이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신체적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키와 몸무게의 문제에서 본다면, 모든 여성의 42%가 그 일자리에서 제외되지만, 남성은 단 1% 만이 제외될 뿐이다. 그녀는 이 규율이 법적으로 정당한 기준이 되지 못함을 주장했다.

참고 : 이 사안의 경우 교도행정의 필요상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임용규정(일종의 법령임)에 명시할 수도 있는데 그 채용조건은 제한된 이유 여하에 따라 평등원칙 위배여부가 결정될 것임.

① 누가 누구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가?

② 이 차별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③ 이 차별이 없다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④ 이 차별은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사례 4

김선희 양은 심한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 청각 보조기를 달아도 사람들의 입술 움직임을 읽지 않으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녀는 국립간호학교의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면접시험에서 그녀의 청각장애는 확연히 드러났고, 학교측은 이 사람은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도 없으며, 나중에 간호원이 되어서도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살피지 못할 것을 주장하며 그녀의 입학을 거절하였다. 그녀는 장애인 차별을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① 누가 누구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가?

② 이 차별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③ 이 차별이 없다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④ 이 차별은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IV. 「생존권」 개념 이해 활동



모 의 국 회에서 법률 만들 기

헌법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동정신보호법 (가상적 법률)

18세 이하의 부모 혹은 양육자는 아동의 관찰이나 진단을 위해 국립정신병원의 원장에게 아동의 보호를 맡길 수 있다. 만약 아동이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원장의 진단이 내려질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사건개요

14살인 홍길동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이 보시기에 행동에 문제가 좀 있었다. 수년동안 많은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어서 그의 부모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을 의뢰해서 홍길동은 입원하게 되었다. 홍길동은 자신의 입원은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홍길동의 부모와 국립정신병원 측은 홍길동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부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홍길동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아동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행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리는 입원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묻는 기회를 줌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동은 독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청문회에서 발언할 기회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회는 법령을 다시 고쳐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세가지의 다른 입장으로 나누어 졌다.

제 1 그룹 : “국회는 대법원이 말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꼭 그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

제 2 그룹 : “법원의 결정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령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확대해석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제 3 그룹 : “법원은 가족의 삶을 간섭하고 부모의 권위를 빼앗고 있다”

활동순서

- ① 토의하기 며칠 전에 아래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숙제로 내준다.
 - 위의 어떤 입장에 가장 공감이 가는지 결정한다.
 - 앞에서 제시된 「아동정보보호법(가상법률)」에 대한 자기 그룹의 입장이 반영 되도록 법령을 대강 수정한다.
- ② 입법부의 세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반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 ③ 각 그룹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법령을 고쳐쓴다.
학생들은 숙제로 써 온 법령을 그룹활동에서 이용한다.
- ④ 그룹에서 발표자 한명이 새로운 법령을 반 친구들에게 읽어준다.
칠판이 있으면 입안내용을 칠판에 써도 된다.
오버헤드 프로젝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⑤ 토의단계로서, 시간이 충분하다면 각 제안을 소개하고, 논의하고, 수정하고, 표결하는 식의 완전한 입법 토론 형태를 취한다. 시간이 부족하면, 세가지 다른 법령을 비교 분석하면서 진행시켜도 된다.
- ⑥ 마무리 단계로서 아래의 질문을 제시한다.

질문거리

- 이러한 입법 연습이 정당한 절차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이 행위가 입법부에 필요했는가?
홍길동 사건의 정당한 절차 문제가 다른 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는가?
- 이 사례에서 부모의 결정과 비교하여 아동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 받을 권리를 가져야만 하는가?
-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상황은 무엇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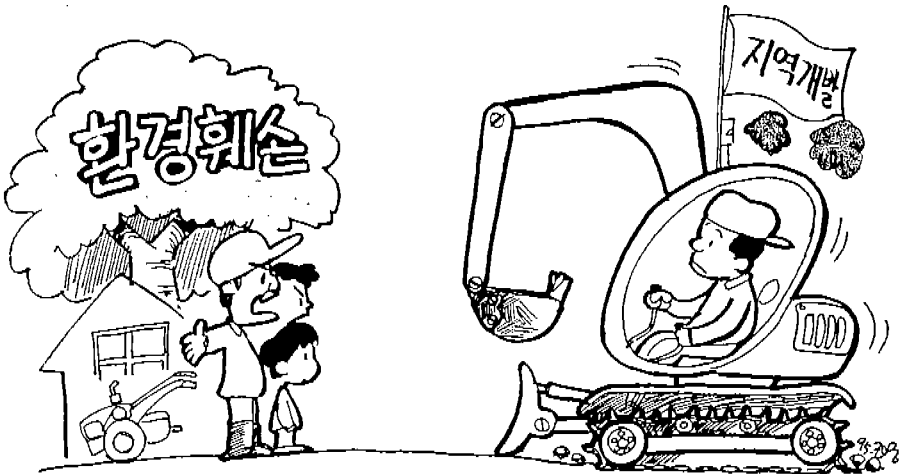


모의 행정 청문회 : 「지역개발」 대 「환경훼손」

지역개발에 관한 모의 청문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은 이전 단계에서 배운 정당한 절차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정당한 절차의 유용성을 조사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의 의미와 유용성에 관한 어떤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다.

헌법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지역은 조용하고 한적한 학교주변 마을이다. 깨끗하게 구획지어져 있고, 한 집에 한 가구씩 살며, 집은 거의 벽돌과 나무 판자로 지어져 있다. 작은 쇼핑센터도 있는데 그곳에는 슈퍼마켓, 신발 수선집, 샌드위치 가게, 빵집, 철물가게, 오래된 향토주막 등이 있다. 이곳 거주자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곳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집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형태이고,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20대, 30대 부부들이 급속도로 이곳을 빠져 나오고 있다는 조사발표 때문에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다. 시장이 알기로는, 젊은 부부들은 학교주변 마을의 느릿느릿한 생활속도와 오락이나 사회적인 다양함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이다.

젊은층의 진출을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장은 택지 개발자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택지개발자는 극장, 음식점, 나이트 클럽 등의 유흥가로 전환하기 위해 마을 주변의 땅을 사기로 결정하였다. 개발자가 사고자 하는 땅은 원래 모자 가정에게만 거주가 허용된 지역이고, 시전역은 술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향토주막만이 유일하게 오래전부터 예외적으로 술판매를 허용받은 상태였다.

개발자는 이러한 지역개발 규칙에 예외를 적용하여 유흥가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지역개발위원회는 청문회를 소집하였고, 마을 사람 반 정도가 참여하였다.

유흥가 개발을 찬성하는 그룹 : 개발자, 시장, 지역주민들

증인 진술

개발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일은 매우 흥미롭고, 이 지역과는 잘 어울리는 일이 될 겁니다. 이 일은 이 지역의 경치와 주변지역의 모습에 약간의 변화를 줄 뿐입니다. 이 지역 변두리에 지을 것이므로 이곳 주민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든이의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 장 : “전 이 개발자와 오래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이곳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이 고향을 계속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 : “저는 30대입니다. 제 배우자와 아이들은 시내로 이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곳에 직장이 있고, 매일 밤 잠자는것 빼고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영화를 보고 싶거나, 조용히 한잔 하고 싶을 때면, 시내로 운전을 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하죠. 젊은 사람들은 이곳의 향토주막에선 술을 마시고 즐길 재미를 못 느껴요. 너무 작고 빈약하니까요”

유흥가 개발을 반대하는 그룹 : 술집주인, 목사, 지역주민들

향토주막 주인 : “이 모든 처사는 저를 망하게 하려는 시장의 얽박한 속셈이에요. 이 술집은 75년간 이 마을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온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현 시장의 정책이 우리 마을을 망칠것 같아 저는 지지하지 않았죠. 시장이 부추키지 않는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어요.”

목 사 : “전 저의 집회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이 마을 모든 교

회를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린 또다른 술집은 원하지 않습니다. 향토주막 만으로도 문제는 충분하니까요. 우린 건전한 오락장소를 반대할 이유는 없소. 하지만, 유흥가를 개발해서 갖가지 공격적인 영화들이 이곳에 침투하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곳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개발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유흥가개발을 허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전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 : “우린 수년동안 잘 살아오고 있소. 시장은 이 거리에 교통문제를 끌어들이고,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유흥문화와 술을 제공하면서 우리 주변을 망치게 하려 하고 있소. 시장과 지역개발 위원회는 우리 마을과 우리 삶에 이런 파괴를 가져올 아무런 권리도 없소. 이곳이 싫은 사람은 조용히 이곳을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절차 ① 학급 전체에게 사건 진상과 증인 진술을 읽게 한다.

②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학급토의를 유도한다

- 가장 중요한 요지는 무엇인가?
- 법적 논쟁은 무엇인가?
- 각 입장의 주장은 무엇인가?
- 이 경우에 모든 사람이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지역개발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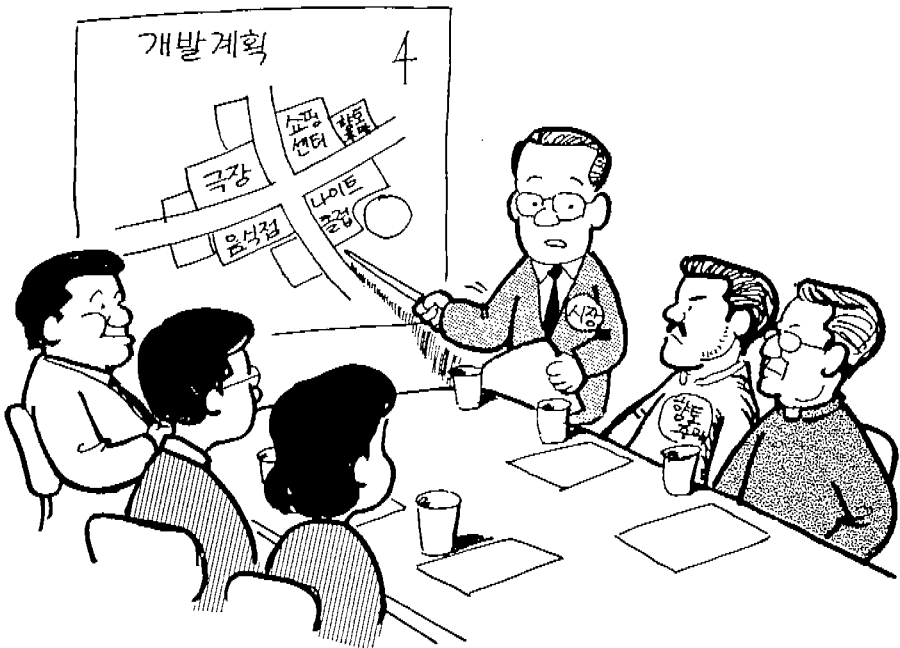
③ 역할을 배정한다.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 증인 : 6명
개발을 찬성하는 그룹 : 개발자, 시장, 거주자
개발을 반대하는 그룹 : 술집주인, 목사, 거주자
- 입회원들을 도와줄 보조 상담원 1명

④ 소그룹으로 청문회 사전준비 활동을 한다.

- 세 그룹으로 나눈다 : 지역개발위원회, 개발찬성자, 개발반대자

-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들은 증인 각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협의한다.
 - 증인들은 자기 진영의 사람끼리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을 짠다
- ⑤ 청문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 위원장이 회의 개시를 선언하고, 논의점을 알린다.
 - 위원장이 증인을 증인석으로 부르되, 먼저 찬성자를 부르고 다음에 반대자를 부른다.
 - 증인 각자가 진술을 하고 난 다음, 위원들이 질문을 한다.
- ⑥ 위원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투표를 한후 결정된 사항을 통고한다.
- ⑦ 청문회 종료후 학생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마무리한다.
- 각각의 세 그룹이 청문회에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는가?
 - 어떻게 하였다면 이 절차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었겠는가?
 -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정당한 진행의 결과를 기반으로 했는가?
 -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가?
 -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절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V. 「정당한 권한」 개념 이해 활동

권 한



누가 책임자인가?

대 상 국민학생

활동순서

- ① 우리는 거의 매일의 활동을 집에서 시작하고 집에서 마칠 것이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에 가는지 변화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평일이나 주말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해보라고 하고, 그런 장소를 칠판에 적게 한다.
- ② 장소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는 그 장소들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말해 보라고 한다.
 - 집에서 쓰이는 규칙들은 무엇인가?
 - 학교에서 쓰이는 규칙들은 무엇인가?
 - McDonald 햄버거집에도 규칙이 있는가?
 - 극장이나 식료품 가게나 교회에도 규칙이 있는가?
- ③ 이 장소들에서 책임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규칙들을 잘 지키는지 누가 감독하는가?
- ④ 위에서 말한 각각의 장소에 있는 “책임자”에 관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 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아래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 중에서 한가지씩을 선택해서 역할극을 해 보게 한다.

유치원에서

한 학생이 교사역할을 한다. 3명의 아이가 학생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장난감이나 그 외 물건들을 마구 끄집어 내놓고 치우는 걸 잊어버렸다.

백화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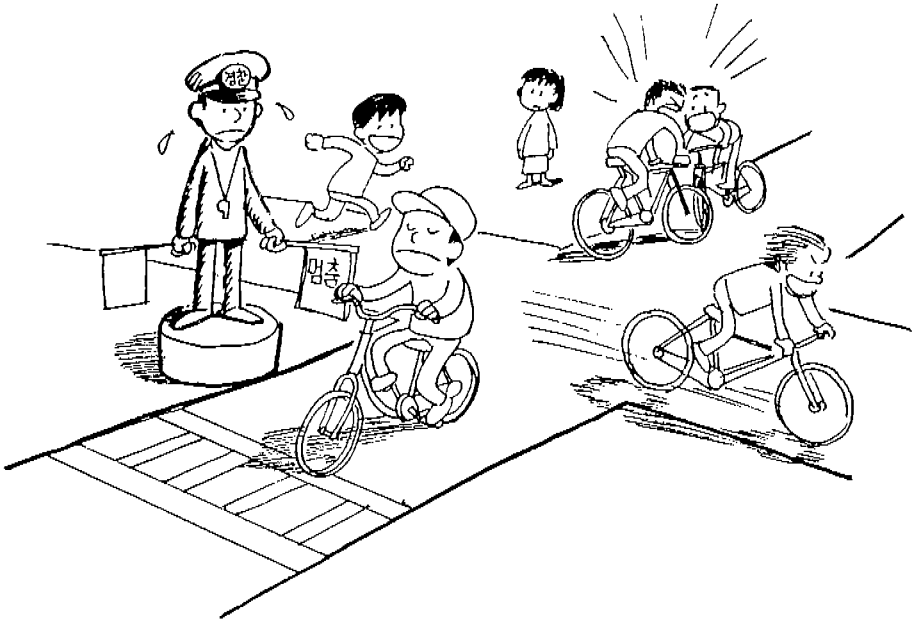
한 학생이 백화점 점원역할을 한다. 두 아이가 자신들에게 맞는 크기의 옷을 찾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극장에서

한 학생이 극장 경영인 역할을 한다. 두 의자에 각각 4~6명의 아이를 앉게 한다. 가장 큰 아이들을 앞줄에 앉히고 또 한명에게는 큰 모자를 쓰게 한다. 큰 모자 쓴 아이 뒤에 가장 작은 아이를 앉게 한다. 혹은 다른 아이들이 영화에 귀기울이고 있을 때 몇명은 막 떠들도록 시킨다.

길거리에서

한 학생이 경찰관 역할을 한다. 몇명의 학생은 자전거를 타는 아이 역할을 시키고, 다른 몇명은 길을 건너는 아이 역할을 시킨다. 여기 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길로 건너는 아이, 자전거를 너무 빨리 달리거나 ‘멈춤’ 표시를 무시하는 아이 등



가정에서

한 학생이 부모역할을 한다. 다른 두 학생은 같은 장난감으로 싸우고 있는 형제역을 맡는다.

학교에서

한명이 학생들을 강당으로 이끄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 다른 아이들은 줄 서 있는 학생들 역할을 한다. 그 중 한명이 줄에서 빠져나가 앞으로 달려가 버린다.

도서관에서

한 명이 도서관 서기 역할을 한다. 또다른 학생은 책을 망가 뜨려 반납하는 아이 역할을 한다.

수영장에서

한명이 수영장의 구조원 역할을 한다. 여러명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자꾸 다른 한명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구조원이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만, 그 아이는 들은 체도 않는다.

수퍼마켓에서

한 명이 수퍼마켓의 점원 역할을 한다. 세명이 고객 역할을 한다. 두명이 점원을 정신없게 만드는 동안 한명이 물건을 바구니에 집어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오려고 한다.

⑥ 역할극을 다 마친 후, 각 상황에 나오는 책임자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한다.

- 그 상황에서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그 외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책임자의 행동은 정중했는가?
- 정중한 태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⑦ 위 상황에 나오는 책임자들은 어떻게 “책임자의 권한”을 얻게 됐는가?

- 자기 마음대로 원해서 된 것인가?
- 더 높은 사람이 임명한 것인가?
- 여러 사람이 투표해서 된 것인가?
- 만약 책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남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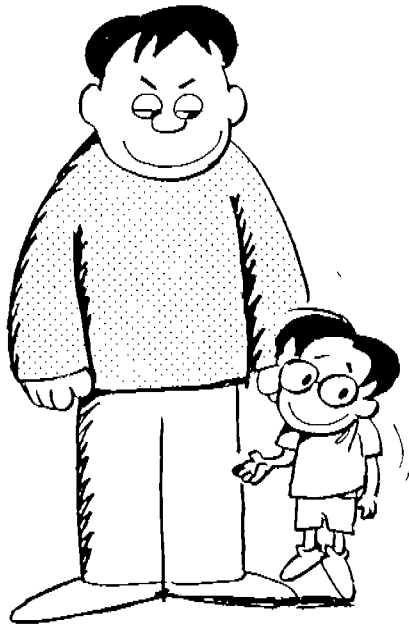
⑧ 책임자는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통제받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토의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안내자나 규칙 따위를 원하는 한편, 자신과 타인을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 주는 예의와,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소유권 등도 인정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⑨ “악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이가 더 많거나 덩치가 더 큰 아이들이 못살게 구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 학생 각자가 “악동들”에게 당한 개인적 경험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한다.
- 시청각 자료로서, 비디오 영화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후 청소년 주인공들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질문거리

- 체격이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못살게 굴 권리가 있는가?
- 체격이 큰 아이나 나이를 더 먹은 아이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정당한 권한」과 「부당한 권력」은 어떻게 다른가?

대 상

중학생

활동목표

국민이 통치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궁극적인 근원이라는 철학적 원칙(국민주권)이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활동은, 헌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국민주권」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 학생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권위를 정부에 부여한다는 것은 행정가들이 법을 통해 국민들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권리와 의무를 준다는 것이며, 이러한 권한에도 제한은 따른다.
- 권한의 위임은 단지 정부의 정책 하나 하나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활동순서

- ① 칠판에 「권력(power)」과 「권한(authority)」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이 활동에서는 정부 권한의 근원에 대해 공부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 ②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여 권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도입단계로 들어 간다.
 - 어느 경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가?
 - 당신이 언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하는지 부모님이 지시할 권리가 있는가?
 - 당신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정부에게 있는가?
 - 정부는 이 권한을 어디로부터 얻은 것인가?

권한과 권력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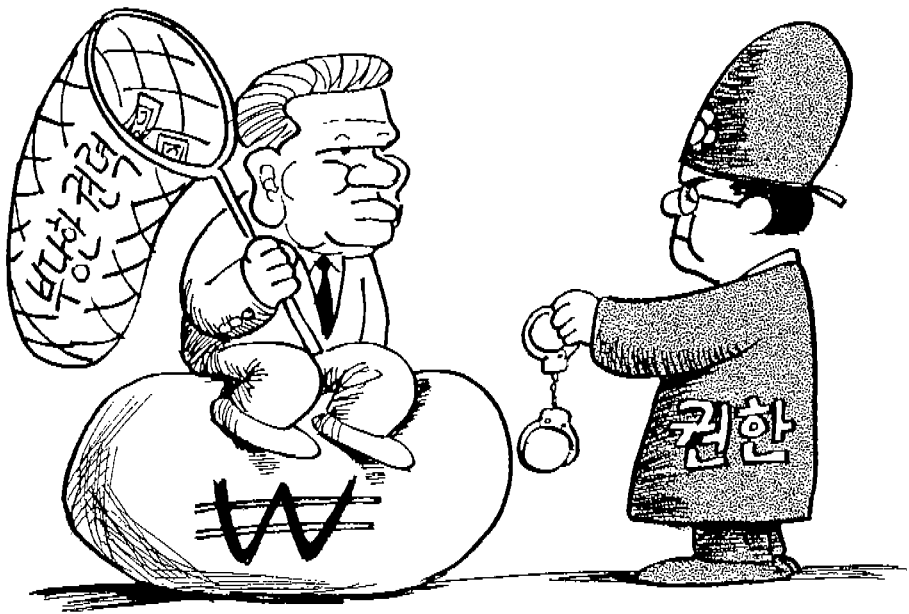
당신은 경험에 의해 어느정도 권한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규칙”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권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할 권리가 있는지를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은 바로 “권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권한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규칙에 합법적으로 부여되는 힘인 것이다.

권한과 권력 두가지 모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휘하고 통제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은, 권한은 ‘관습, 법률, 도덕률 등에 의해 부여 받은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권력은 ‘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누를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한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합리성, 합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권력에는 합법적인 권력도 있지만 부당한 권력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관이 빨간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대통령의 승용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보장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권한”인 것이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기업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자기 재산으로 취한 것은,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른 극단적인 예이다.

③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을 읽고, 어떤 것이 「정당한 권한」이고, 어떤 것은 「부당한 권력」인지를 판단해 보자.

- 각각의 사례에서 어느 것은 “권한”이고, 어느 것은 “권력”인가?
-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권한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 권한은 권력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말로 표현해 보라.



사례 1

「모래시계」에서 판사는 박태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례 2

최민호는 김용팔에게 자기 여자친구 근처에 얼씬도 하지말라고 경고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례 3

나영의 아버지는 나영에게 말하기를 “지난 화요일에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왔으니 이번 주말은 집에만 있으라고 하셨다.

사례 4

중학교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들에게 학교 잔디밭에 앉지 말라고 말했다. 3학년생은 “이곳은 3학년이상만 앉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1학년생들도 잘 알고 있었다.

사례 5

국회는 공해를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례 6

불법 도박집을 운영하는 여주인이 한 손님에게 빨리 빚을 갚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거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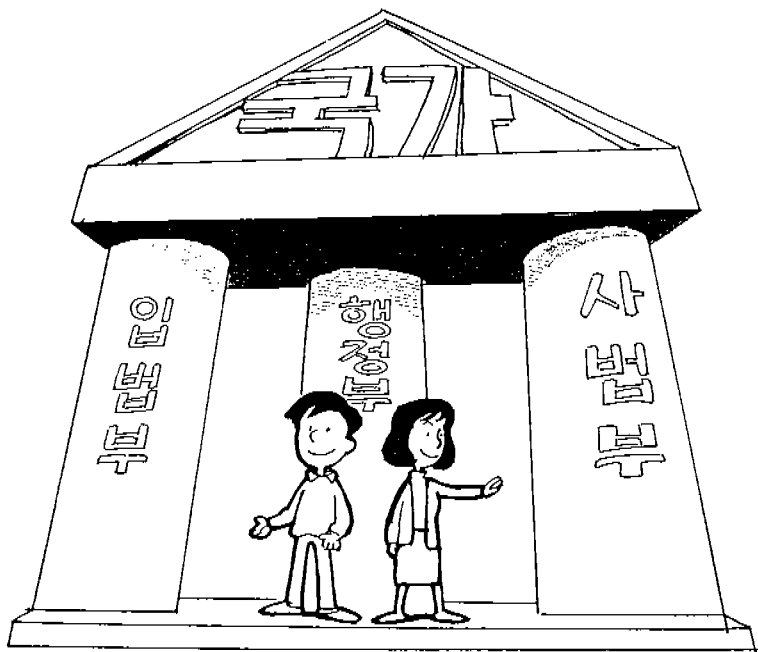
사례 7

극장에서 관객인 한 남자가 옆에 앉은 두 소녀에게 “너무 떠들어 시끄러우니 나가라”고 말했다.

사례 8

교감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그를 경찰서로 보냈다.

VI. 「삼권분립」 개념 이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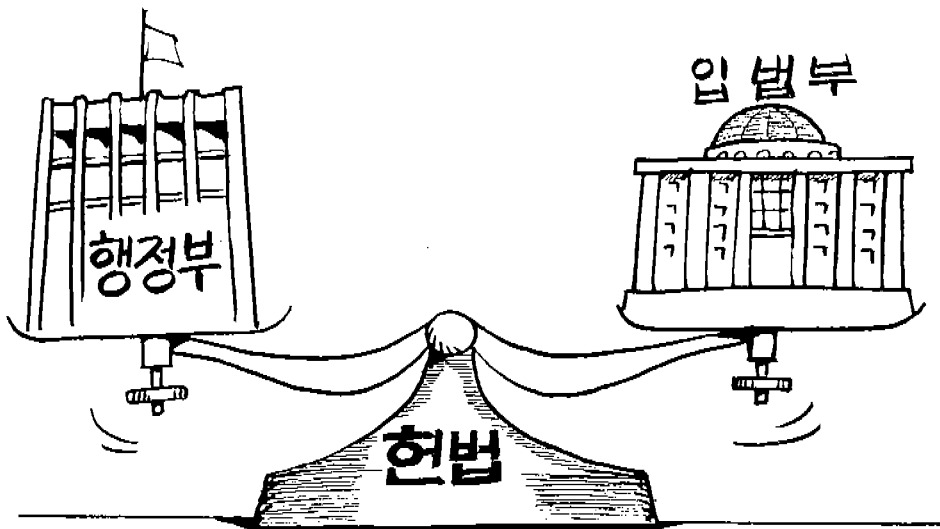


처음에 헌법을 작성한 사람들은 새로운 국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만약 지도자가 없다면, 국민들은 각자 돈을 벌면서, 자신이 선택한 법을 따르며, 군대에 물품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결정하며, ‘모든 일을 자신 스스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만, 전제국가에서처럼 왕이라는 존재에 의해 자신들이 지배받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 왕의 권력을 줄이고 왕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법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힘을 부여하지만, 국회에 의해 제약을 받도록 하였다. 국회란 무엇인가? (국회는 투표자들에 의해 뽑힌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법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권력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한 나라를 이끄는 책임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와 국회가 서로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 권력을 시이소오처럼 생각하면 된다.

만약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균형을 잃는다면, 그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해 너무 힘이 센 쪽의 힘을 좀 덜어 내야 하고, 반면에 힘이 약한 쪽에 힘을 더 주어 시이소오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힘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다.



국회의원, 경찰관, 판사는 어떻게 다를까?

대 상 국민학생

활동목표 이 활동은 법을 만드는 기관, 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기관, 일을 법대로 잘했는지 안했는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왜 달라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정부기관을 세 범주로 나누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법을 만드는 곳 - 입법부
- 법을 집행하는 곳 - 행정부
- 법을 적용하는 곳 - 사법부

활동순서 「그 사람 혼자 모든 것을 다한다」라는 역할극 대본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어 읽힌다. 이 때 학생 중 1명을 뽑아 해설가로 하고, 2명을 뽑아 “경찰관”과 “당신”역을 맡게 한다.

〈그 사람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

따뜻한 4월의 어느날 오후이다. 소파에 앉아 내가 18세가 된다면? 하고 상상을 하고 있다.... 당신은 방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당신이 막 문을 들어서는데, 책을 한아름 들고 있는 어머니와 마주친다. “이 책들을 도서관에 반납 좀 해 주겠니? 오늘까지 갖다 줘야 하거든. 아니면 연체료를 내야 될거야.” 그리고, 당신을 흘리는 말씀을 곁들이신다. “괜찮다면, 엄마 차를 가지고 가도 된다” 와! 당신은 얼마전에 운전면허증을 얻었던 것이다. 당신은 즉시 달려간다.

책을 반납하고 차로 돌아오는데, 경찰관이 차 옆에 서 있다.

제발... 무슨 일이지? 그는 당신에게 위반 스티커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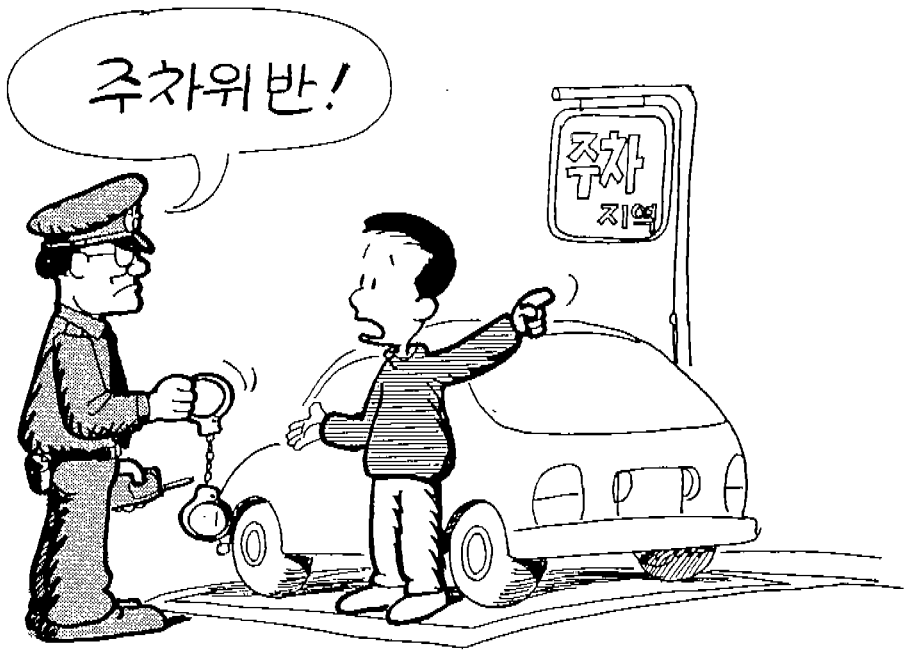
“뭐가 잘못 됐나요?” 당신은 묻는다. 그리고 다음의 대화가 오간다.

경찰관 : 여긴 주차가 안 되요
 당 신 : “주차금지”라는 표시판이 없잖아요.
 경찰관 : “주차금지”라고 방금 내가 만들었요.
 당 신 :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경찰관 : 지금은 할 수 있요. 당신은 체포되었요.
 당 신 : 체포? 법을 어긴게 없는데 왜 제가 잡혀가야 되죠?
 경찰관 : 당신은 법을, 내 법을 어겼소. 잡시다.
 당 신 :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 : 당신을 심판하는거요?
 당 신 : 심판? 당신이 판사예요?
 경찰관 : 지금은 그렇소. 당신은 범죄자요. 3만원의 벌금과 소송
 비용을 매기겠소.
 당 신 : 벌금과 소송비용? 소송비용이 얼마인데요?
 경찰관 : 5만원.
 당 신 : 하지만, 전 죄가 없어요!
 경찰관 : 돈이나 내시오.

질문거리

- ① 이 가상의 경찰관은 모든 일을 다 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
 1. _____
 2. _____
 3. _____
- ②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설명 :
- ③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법적 체계가 운영되는지 토의한다.
 - 사법체계 안에서 권력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 경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경찰관이 체포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 나는가?

- 재판에서 경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원고와 피고 양편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판사의 역할은?
 -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은 누가 만들었나 ?
- ④ 실제 사례의 예들이나 전형적인 사례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이란 무엇인가?

① 삼권 분립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입법부

-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 그들이 하는 일 : 법을 만들고, 바꾸고, 철폐한다.

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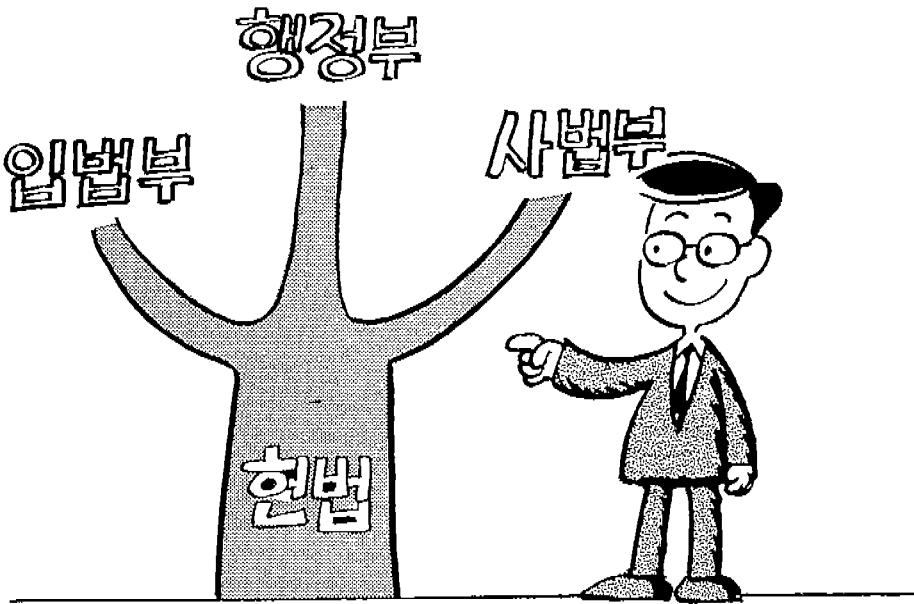
-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각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 그들이 하는 일 : 법을 집행한다.

사법부

-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 : 대법원장과 판사들.
- 그들이 하는 일 :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법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규정한다. 어떤 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지를 결정한다.

- ② 신문의 정치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범주로 구분해 보자.
- ③ 학생들에게 헌법 제 3장, 4장, 5장을 복사해 주고, 연필과 크레용, 종이를 나눠준다.
- ④ 칠판에 나무 줄기를 그리고 제목으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쓴다. 칠판 맨 위에는 “정부의 세 영역”이라고 쓴다.
- ⑤ 나무에 가지 하나를 그린 후 “국회”라고 쓰고, 국회의 주된 활동에 대해 아는대로 말하라고 한다.
- ⑥ 나머지 두 나뭇가지에도 각기 “정부” “법원”이라고 쓰고, 행정부가 하는 일, 법원이 하는 일을 말해 보라고 한다.

- ⑦ 헌법 제 3장(국회), 4장(정부), 5장(법원)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그린 세 개의 나뭇가지와 비교하면서,
- ⑧ 세가지 정부구조의 이름과 그들의 기능, 권력 분산의 개념 등을 요약해 보고, 왜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정부 형태에서 중요한지를 토의한다.



대통령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대 상 중학생

활동목표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이 활동은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 대통령직은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임을 말해준다.
- 대통령직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권력임을 알게 한다.
- 신문기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활동내용에 대해 배운다.

- 활동순서**
- 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 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 초대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 우리 나라 역사에 있는 대통령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국회의원 중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 우리나라에 여자 국회의원이 있는가? 누구인가?
 - ② 신문 복사한 것을 나눠 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만화나 사진, 기사를 찾아 보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름에 밑줄을 그어 보자.
 - ③ 헌법 제 4장을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을 칠판에 적는다.

대통령 피선거권 : 5년 임기

적어도 40세 이상

5년이상 국내에 거주

- ④ 대통령의 자격으로 더 들어 가야 한다고 ‘학생들 각자가 생각하

는 자격' 조건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라고 하여, 그 답들을 칠판에 적어 본다.

- ⑤ 헌법에 나와 있는 자격 조건과, 자신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으로서 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격에 맞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상적으로 써 보도록 한다. 다 마친 후, 그 '후보자'는 나머지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서 적은 것을 읽어준다. 반아이들은 대통령 후보자의 자기소개서가 헌법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한다.
- ⑥ 뒤에 제시되는 “한국 중학교의 독재자”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 이 이야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독재자 한명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임을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음의 질문들을 제시한다.
 - 이 이야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는가?
 -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 학생회에서 최진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⑦ 어느 모임에서 최진영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독재자를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 본다.
 - 어떤 모임에서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한국 중학교의 독재자

최진영은 한국중학교에서 제일 인기있는 여학생이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통솔하기를 좋아했다. 매년, 학급에서 학생회 임원을 뽑도록 되어 있다. 학생회에서는 소풍 경비를 올리는 방법이나, 특별한 계획안, 그리고, 문제점 등을 토의한다.

올해 첫 회의에서 임원들이 선출되었는데, 최진영이 학생회 회장으로 뽑혔다. 임원들은 특별 기획부, 자금조달부, 불만건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진영은 모든 반을 다 통솔한다. 10월달까지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는 듯 했다.

최진영은 아동박물관에 있는 “괴기전”에 소풍가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특별기획부에서는, 소풍을 동물원으로 갈 것인지 아동박물관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진영은 절대로 동물원에는 갈 수 없으며, 만약 회의에서 동물원으로 결정이 난다면,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모두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물관으로 정했다.

자금조달부에서는 소풍 비용을 올리는 방법을 결정해야 했는데, 최진영은 자기가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탕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금조달부 부장인 김철수는 티셔츠를 팔기를 원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김철수 주장에 투표를 한다면 자신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들 사탕파는 것에 투표를 했다.

불만건의부의 경우에도 최진영이 회의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그녀의 버릇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그녀와 적이 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사탕 회사에서는 사탕 1봉지에 천원에 파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지만, 최진영은 학교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므로 1봉지에 3천원에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님들도 그 높은 가격에 불만을 품었고, 학생들도 그렇게 비싼 사탕은 팔 수가 없으므로 불평을 했다. 빨리 무언가 다른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소풍은 취소되고 말 것이다.



제2장 도덕성 딜레마 판단



I.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콜버그(Kohlberg)는 아래에 예로서 제시된 「하인츠의 딜레마」와 같은 가상적 딜레마를 아동들에게 제시하여, 아동들이 그 딜레마 상황에 대해 어떤 도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가 사용한 도덕판단 딜레마들은 「하인츠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적인 도덕성의 문제와 논리적인 합법성의 문제가 동시에 내포된 딜레마 상황이다.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던 간에 도덕성과 합법성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근본적으로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기초로 해서 도덕성 발달을 보다 상세화한 이론으로서, 콜버그 이론의 기본 가정은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발달 수준이 도덕성 판단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콜버그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아동이 선택에 대해 어떤 답을 하느냐, 즉,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상, 벌의 응답보다는, 왜 그 아동이 그런 답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배후의 인지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6단계 발달수준을 이론화한 것이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의 특징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딜레마에 대해 아동들이 “벌 줘야 한다” 또는 “벌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아동은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만 했다” 또는, “하인츠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탐구하였다.

둘째, 이 딜레마 척도는 도덕적 사고에 관한 것이지, 도덕적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세째, 도덕적 사고와 불복종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 사람들은 권위에 의해 비인간적인 행동이 강요당할 때 그 권위에 복종할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나찌 독일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히틀러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적 판단을 증진시키는 여러가지 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들이 성인들의 도덕적 설교를 듣고서 생긴 도덕판단의 변화란 사소한 것일 뿐, 아동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재구성하여야 도덕교육의 자율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둘째, 아동들이 도덕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맞붙어 논쟁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집단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덕발달이 촉진된다.

세째, 프로그램 실시 방법으로는 청소년들이 열띤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주제로(예컨대, 가정에서 ‘아들과 딸’차별)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청소년집단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도록 한다. 의장도 그 안에서 선정한다. 지도자는 단지, 논점을 요약하거나 명료화하거나 의견제시를 위해서 가끔 개입할 뿐이다.

네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기존의 도덕적 사고에 도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논거를 형성하도록 지적 자극을 주는 대안적 견해를 접하게 되면 도덕판단이 상위단계로 올라간다.

하인츠의 딜레마

유럽의 어느 마을에 특수한 종류의 암으로 거의 죽음에 임박한 여인이 있었다. 의사들의 생각으로는 여인을 구할 수 있는 특효약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약사가 최근에 발견해 낸 것이다. 그 약은 원가가 비싼데다가 약사가 원가의 열배나 되는 값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약의 원가는 200달러 정도인데 조그만 약 한 알에 2,000달러를 요구했다. 앓고 있는 여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약값의 절반밖에 안되는 1,000달러 밖에 빌릴 수 없었다. 그는 약사를 찾아가,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약을 싸게 팔거나, 아니면 나중에 갚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약사는 “안됩니다. 나는 이 약을 발견했고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인츠는 절망한 나머지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자기 아내를 위해 약을 훔쳤다. 과연 이 남편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는가?



II. 도덕성 딜레마 채점 방법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제 1 단계 : “하라는 대로 하는” 도덕성

제 2 단계 : “거래”로서의 도덕성

이 수준의 아동은 도덕적 규칙 내지 선악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이 개념을 행위의 쾌락적 결과, 또는 도덕적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제 1 단계 : “하라는 대로 하는” 도덕성

이 시기의 아동은 도덕적 규칙이라는 것은 아동자신을 포함한 사람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1) 아동자신이 그런 합의를 한 일이 없고, (2) 어른들의 의도나 뜻이 아동에게는 가려져 있으며, (3) 아동 자신이 도덕적 규칙을 세우는 일에서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아동의 규칙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그것이 만들어진 동기 따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규칙들간의 상호 관련성도 이해하지 못한다.

〈채점 기준〉

1. 행위의 물리적 및 신체적 결과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2. 행위의 결과가 어떤 의미 또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도외시된다.
3. 벌을 피한다든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 제 2장에서 이 부분이라는 김안중, 박전환, 신재철, 조난심 등이 발표한 「한국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198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중 pp. 14~17, 56~73, 90~91, 94~109에서 나온 사례 및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임.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본원 연구팀에서 각색 및 편집했음.

가치를 가지며 별이나 권위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원리가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다(이것은 4단계에 속한다).

4. 나쁘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와 필연적인 결과들은 무시된다.
5. 행위의 부적절한 물리적 형태(예컨대, 거짓말의 양)와 행위의 결과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
6. (도덕적) 행위는 별의 회피를 위한 것이다.
7. 양심은 별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를 말한다.

제2 단계 : “거래”로서의 도덕성

이 단계에 속하는 아동은 “나”만이 아니라 “남”도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옳은 행위란 행위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서로 협동한다고 생각하며, 이 협동은 거래(bargain)와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 이러한 협동관계는 지속적인 사회적 수준의 협동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1회적인 교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채점 기준〉

1. 올바른 행위는 자기 자신의 필요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이다.
2. 인간관계는 일종의 교환관계로 간주된다.
3. 공정성, 상호성 또는 공정한 분배 등의 개념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반드시 실용적인 관점에서 해석된다.
4. 상호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네가 내 등을 긁어 주니까 나도 네 등을 긁어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며, 신의를 지킨다든가, 감사를 느낀다든가, 공정을 기한다든가 하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5. 행위의 물리적 형태나 결과를 행위의 인간적 필요라는 것과 구분한다.

6. 행위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한다(자신의 욕구충족, 다른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방해하지 않음).
7. (도덕적) 행위는 보상이나 이익에 대한 욕망에서 일어난다.
8. 어떤 행위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작용은 무시되고 별은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이해된다.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제 3 단계 :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도덕성

제 4 단계 : 사회질서를 위한 “준법” 도덕성

이 수준에서는 개인이 가정이나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그 즉각적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아동은 자기자신에 대한 기대나 사회의 질서에 단순히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며, 그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지지하고 정당화하고 그 질서에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과 자기를 동일시한다.

제 3 단계 :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도덕성

제3단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동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만 거래하자”는 생각(2단계)에서 벗어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3단계에서의 도덕성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된다.

〈채점 기준〉

1. 올바른 행위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행위,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승인하는 행위이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러운”행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에 동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3. 행동은 흔히 의도에 의하여 판단된다. “좋은 의도로 그런 일을 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중요시된다.
4. 행위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동기나 인간성에 의해 평가된다.
5. “훌륭한” 또는 애타적 동기 혹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행위는 나쁘지 않으며, “비천한” 또는 이기적 동기 혹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행위는 좋지 않다.
6. 법에 위반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용서 혹은 정당화될 수 있다.
7. 좋은 동기와 이기적 혹은 도구적 동기를 구분한다.
8. 다른 사람들의 불승인(비난)이 두려워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다.
9. 벌, 공포, 고통과 불승인을 구분한다.

제 4 단계 : 사회질서를 위한 “준법” 도덕성

2, 3단계와는 달리 4단계에서는 서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사회전체가) 법에 의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며, 법에 의해 서로의 기대를 조정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법에 의해서 사회전체가 유지되며, 각 개인은 이 법에 의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법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허용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믿는다.

〈채점 기준〉

1. 이 단계에서 아동은 권위나 고정된 규칙 또는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올바른 행동이란 의무를 수행하는 행동, 권위를 존경하는 행동, 주어진 사회질서를 그 자체로서 유지하려는 행동이다.
3. 규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동기

나 상황을 고려할 것 없이, 항상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다.

4. “훌륭한” 또는 자연스러운 동기에서 우리나라의 행위와 규칙준수에 대한 의무감에서 나온 행위를 구분할 줄 안다.
5. 의무의 불이행 또는 다른 사람에의 구체적인 가해에 대한 제도화된 비난을 두려워 한다.
6. 형식적인 불명예(법적 처벌)와 비형식적인 불승인(타인의 비난)을 구분할 줄 안다.

인습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제 5 단계 : “전체의 합의”로서의 도덕성

제 6 단계 :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

이 수준에서는 도덕적 가치나 원리가 그 가치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위와는 관계없이, 또 자신과 그 집단과의 유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4단계까지의 아동이 주어진 법 안에서의 상호이익 증대에 관심을 두는 반면, 5~6 단계 아동은 새로운 법의 제정에 관심두고 어떻게 하면 좋은 법을 제정할 수 있을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제 5 단계 : “전체합의”로서의 도덕성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색채가 짙다. 올바른 행동은 개인의 기본권리에 비추어, 또 사회 전체가 비판적인 합의에 도달한 도덕기준에 비추어 정의된다. 개인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상의 원리를 강조한다. “법적 관점”이 중요시되지만 법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에 따라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시된다.

사회제도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산출하는 과정 또는 절차에 의해서 그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는 생각이 이 단계의 사고를 지배한다.

사회적 협동에 공헌하지 않는 제도나 법은 그 의미를 잃고, 그러한 관점은 절차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다. 특히 그러한 절차나 과정은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정하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추리하여 그것을 자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가상적 합리성”이라 부를 수 있다. 이 가상적 합리성의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그 특징으로 한다. 첫째, 제정의 절차 및 과정이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가, 둘째, 인간의 기본권이 다수의 결정 때문에 희생되는 일은 없는가.

〈채점 기준〉

1. 올바른 행동은 개인의 기본권리에 비추어, 또 사회전체가 바람직한 합의의 도달기준에 비추어 정의된다.
2. 개인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상의 원리를 강조한다.
3. “법적 관점”이 중요시되지만 법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에 따라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시 된다.
4.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황이나 동기가 참작되긴 하지만,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일반적인 규칙은 엄연히 존재한다).
5. 상황이 위법적인 행위를 어느정도 정당화해 주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범주의 확대에까지 이끌지는 못한다(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을 구분할 줄 안다).
6. 공동체와 평등의 유지에 관심을 둔다(이는 이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7. 자존심을 유지하려 하며, 비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목적이 없다는 비난을 두려워 한다.
8. 제도화된 비난과 공동체에서의 명예훼손 또는 자기불신을 구분한다.

제6 단계 :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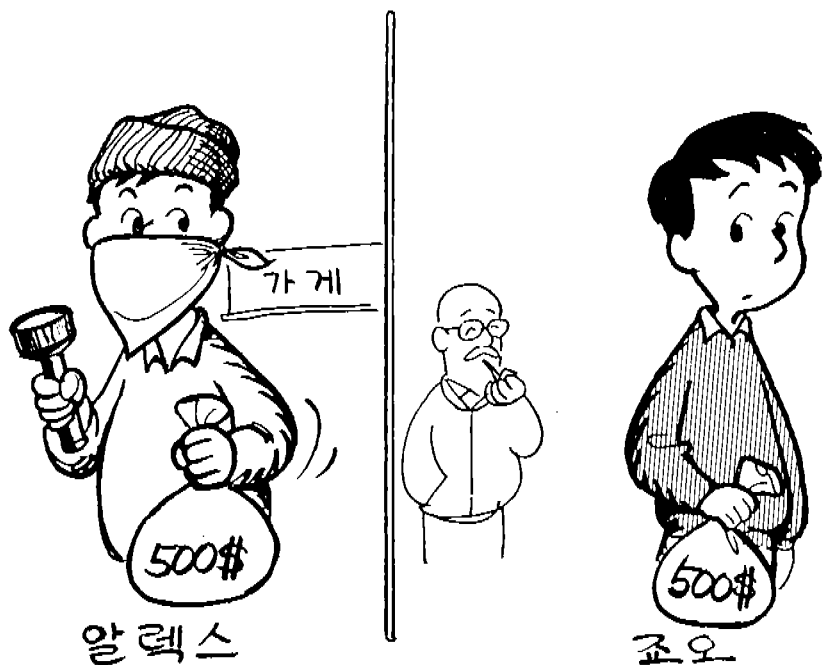
올바른 행위는 스스로 선택한 도덕원리에 따른 양심의 결단으로 정의된다. 이 도덕원리는 논리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일관성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도덕원리는 예컨대 “십계”와 같이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라 추상적 논리이다. 이러한 도덕원리라는 것은 공정성, 인간권리의 상호성과 평등,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법의 제정절차에 관해서 어떤 것을 좋다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사회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협동체계의 구현에 있어 어떤 원리를 채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합리적이고 평등, 공정한 협동관계를 규정하는 추상적 원리의 호소가 이 단계의 특징이다.

〈채점 기준〉

1. 올바른 행위는 스스로 선택한 도덕원리에 따른 양심의 결단으로 정의된다.
2. 이 도덕원리는 논리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일관성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이 도덕원리는 예컨대, “십계”와 같이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라 추상적인 도덕원리라는 것은 공정성, 인간권리의 상호성과 평등,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이다.
4. 선한 동기가 옳은(혹은 그른)행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려는 결단으로 이루어오는 행위는 나쁠 수가 없다.
5. 규칙위반과 도덕적 원리의 위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하에서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실제로 옳은 행위이다.
6. 규칙을 다르려는 동기와 도덕적 원리를 따르려는 선한 동기를 구분한다.
7. 법적 규칙들과는 달리 도덕적 원리들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8. 자기 자신의 도덕적 원리들을 위반함으로써 생기게 될 자기 비난에 관심을 둔다.
9. 공동체로부터의 존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을 구분한다.



III. 청소년의 도덕성 단계 분석

탈옥한 박태수

박태수는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그는 2년을 감옥에서 보낸뒤 감옥을 탈출하여 낯선 곳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는 숨어 살았다. 그는 8년을 숨어사는 동안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며, 공장도 하나 운영하게 되었다. 그의 공장은 다른 공장들보다 직원들에게 잘 해 줄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무척 잘해주는 모범적인 회사였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대부분 자선사업에 쓰여졌다. 그러던 어느날, 박태수는 고향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는 그가 8년 전에 감옥을 탈출한 사람이며 지금도 경찰에서는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질문거리

1. 그 친구는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고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탈옥수를 고발하는 일은 시민이면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의 하나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만약 그 친구가 박태수와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사이라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박태수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판사는 그를 감옥으로 도로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의 도덕판단 예

도덕 판단의 1단계 응답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이유

- “아무리 탈옥을 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탈옥을 하였으니까 고발해야 한다.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이유는 탈옥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구 국교생)
- “아무리 친구이지만 고발을 해야 한다. 8년만 감옥살이하고 뛰쳐나오면 용서해 줄 수 있으나 2년만 살고 나온 것은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광주 국교생)
- “아무리 두 친구가 사이가 좋다고 하여도 법은 모두 지켜야 하므로 고발해야 한다.”
(전주 국교생).

* 참고 : 1단계에서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없었음

도덕 판단의 2단계 응답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이유

- “아주 친한 친구라도 고발해야 한다. 이유는 자기 자신도 어느새 그 친구와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산 국교생)
- “10년 징역형의 죄수인 그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밥도 잘 못 먹을 것이고 잠도 잘 못 이룰 것이나, 고발하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주 국교생)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 “모른체 한다. 친구로써 우정을 변치 않고 모른체 해야 한다. 또,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 새사람이 되려고 힘썼는데, 어찌 고발하겠는가? 친구의 잘못을 숨겨줘야 한다. 어릴 때 같

이 놀던 친한 친구라면 어찌 고발하겠는가? “ (부산 국교생).

도덕 판단의 3단계 응답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 “탈옥수가 탈옥하여 행한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장발장과 같이 어쩔 수 없어서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 여중생).
- “사람은 지금 사회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많은 선행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쨌든지 지금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으니 고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부산 중학생).

* 참고 : 3단계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없었음

도덕 판단의 4단계 응답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이유

- “탈옥수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긴 사람이다. 법과 질서를 어긴 사람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용서해 준다면 우리 사회에는 법이 있으나 마나이다.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안됐지만 할 수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대구 중학생)
-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 때문에 죄인을 그것도 탈옥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사는 박태수를 당연히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부산 여중생).

* 참고 : 4단계에서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없었음

도덕 판단의 5단계 응답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이유

- “나는 우리 사회에 있는 법을 믿는다. 그 법은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게 되어 있으며, 단 그 사람이 법에서 용서 받을 수 있다면 판사는 법에 의해서 죄를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시민이면 누구나 고발하여야 할 것 같다. 그 후의 일은 법에서 정하여진대로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다. 내가 그 친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제 삼자인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판사가 지식이 있고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면 법에서 정하여진 대로 또 합법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부산 중학생)

“박태수를 경찰에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 “그는 친구이다. 더구나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감옥이 왜 필요한가? 양심을 바로 잡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의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태여 감옥이라는 곳이 필요 없다. 구태여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를 고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탈옥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죄를 씻지 못한 괴로움이 남아 있을 것이다.” (광주 여중생)
-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미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징역은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감옥은 이 사람에게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지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 중학생)

* 참고 : 도덕판단의 6단계에 해당하는 응답은 없었음.

라듐 약을 훔친 박철수

철수의 아버지는 의사들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의 아버지를 살리는 데는 어느 약제사가 제조해 낸 라듐 성분의 약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 약을 한 병 만드는 데에 10만원 정도 들 뿐인데, 그 약제사는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철수는 1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 다녔다. 그러나 철수는 50만원 밖에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약제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해 보았다. 50만원만 받고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나머지 50만원을 나중에라도 갚도록 해 주고, 그 약을 우선 자기에게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약제사는 한 마디로 잘라서 거절했다. 그 약은 적어도 1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인데 그 반 값만 받고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철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자신의 처지에서 나머지 50만원을 구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물론 철수는 그 약제사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약을 훔쳐낼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것인가?

질문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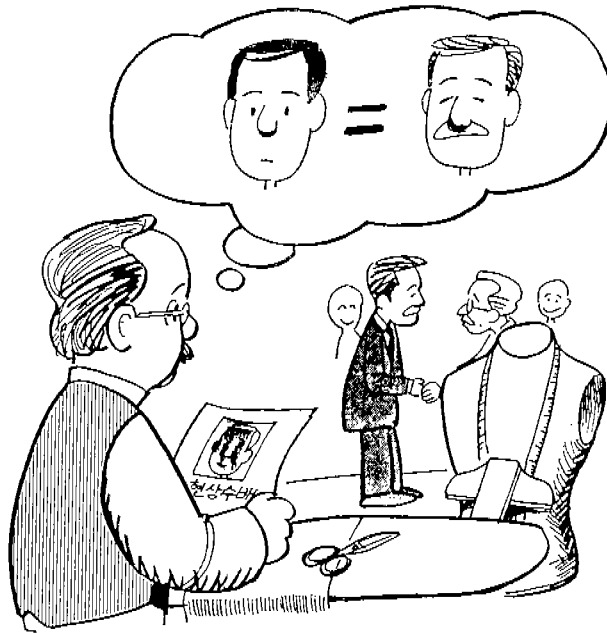
1. 철수가 그 약을 훔쳐서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생명을 못 구하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철수가 약을 훔쳐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답하시오.)
2. 철수가 자기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철수는 그 약을 훔쳐야 합니까?

(“철수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답하시오.)

3. 만일 당신이 철수이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 해도 당신은 그 약을 훔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답하시오.)

4. 철수가 그 약을 훔치려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때 판사는 철수에게 징역을 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학생 및 중학생의 도덕판단 예

도덕 판단의 1단계 응답

“철수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이러한 나쁜 짓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훔치지 않겠다.” (대구 국교생)
-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해도 우리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한다.” (광주 국교생)
- “도둑질은 우리 같은 어린이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또 나이도 많지 않은 어린이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을 절대로 훔치지 말아야 한다.” (부산 국교생)
-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할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아버지를 구하기 싫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를 꼭 구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전주 국교생)
- “아무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철수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서 약을 사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 국교생)
- “라디오이라는 약을 훔치면 경찰서, 아니면 지서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 국교생)
- “만약 철수가 훔친다면 철수는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 것이다. 그리고 버릇이 들면 다른 것도 훔치게 될 것이다.” (전주 국교생)
- “훔치지 말아야 한다. 철수가 그 약을 훔치면, 다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다시 물건을 훔치게 되어 그것이 버릇이 들어 커서 큰 도둑질을 하여 장래 교도소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국교생)

“철수가 약을 훔쳐야 한다”는 이유

- “내가 만약 이 처지에 있을 때 분명히 훔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장사 아저씨에게는 자기가 모은 돈 만큼 드리고 쪽지에 죄송하다고 쓸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것인가? 내가 들켜서 잡힌다 하여도 우리 아버지만 살 수 있다면 나는 훔치겠다. 철수에게는 징역을 내려야 한다. 이 법은 나라에서 정한 것이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자기가 사형을 받는다 해도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대구 국교생)

도덕 판단의 2단계 응답

“철수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 “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한다.”(대구 국교생)

“철수가 약을 훔쳐야 한다”는 이유

-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셨고, 또 자기가 감기 몸살 등 여러 가지 위험한 병에 걸리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병원에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철수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 드리기 위해서 훔쳐야 한다.” (부산 국교생)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철수가 된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다녀서 겨우 밥만 먹고 살고 있는 철수인데 가정을 이끌어 나갈 힘도 없다.” (부산 국교생)
- “그 약제사가 욕심 많고 도둑이다. 10만원을 100만원이라 우기는 걸 봐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훔쳐도 괜찮다. 또 철수는 가난하다. 돈은 이따 받아도 손해 볼 것도 없는 데 기어이 돈은 더 받으려는 것은 좋지 않다. 아버지의 병은 고쳐야 된다. 약제사가 돈을 더 받지 않는다면 나도 기어이 훔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 약제사가 알몸이다. 그래서 약을 훔쳐야 한다.” (전주 국교생)

도덕 판단의 3단계 응답

“철수가 약을 훔쳐야 한다”는 이유

- “아버지는 어머니와 더불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살리는 약을 자신의 힘으로 구하지 못할 처지에 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식의 도리로서 훔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훔치려고 한 의도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 착한 마음가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리고 벌이 허용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주 중학생)
- “철수의 행동이 그것을 훔치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나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철수는 그 약의 적당한 구입 방법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그는 그 약을 훔쳐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절도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법과 이익을 떠나서 그 약제사가 약을 주었어야 할 것이다. 철수의 행동은 즉 훔치는 것은 옳다. 철수가 아버지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철수의 아버지인 것만은 확실함으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철수라면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 중학생)

도덕 판단의 4단계 응답

“철수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 “우리 주위에는 이런 난처하고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수가 많다. 모두가 자기의 최우선책으로 이런 도둑질을 한다면 사회의 질서는 문란해지고 불신 풍조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질서를 잡고 인간의 행복을 갈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판사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

다.” (부산중학)

- “그 약제사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약국을 차려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는가? 어떤 약제사라도 땀흘려 만든 것을 그렇게 허무하게 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대구여중)
- “훔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하여 약을 훔친다는 것은 아버지를 살릴 수는 있어도 자신은 사회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철수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지만, 약제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감정으로 이 사회를 산다면 이 사회는 어지러워 질 것이다.” (전주중학)

“철수가 약을 훔쳐야 한다”는 이유

- “약을 훔쳐야 한다. 약제사의 할 일은 자신이 만든 약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다. 지금 이 약제사는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는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사람이다. 철수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여도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징역을 내려야 한다. 그 대신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내릴 수는 있다.” (광주여중)

도덕 판단의 5단계 응답

“철수가 약을 훔쳐야 한다”는 이유

- “인간의 생명은 가장 귀중한 것이다. 특히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훔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훔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훔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는 설령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광주 중학생)
- “이 세상에 단 한분인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무슨 이유에서라도 구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다. 만약 훔쳐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법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인간이 주체이므로 이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판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 법도 인간을 위해서 정한 것처럼 사람의 도리에 합당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주중학)

* 참고 : 도덕 판단의 6단계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청소년은 없었음.



IV. 도덕성 딜레마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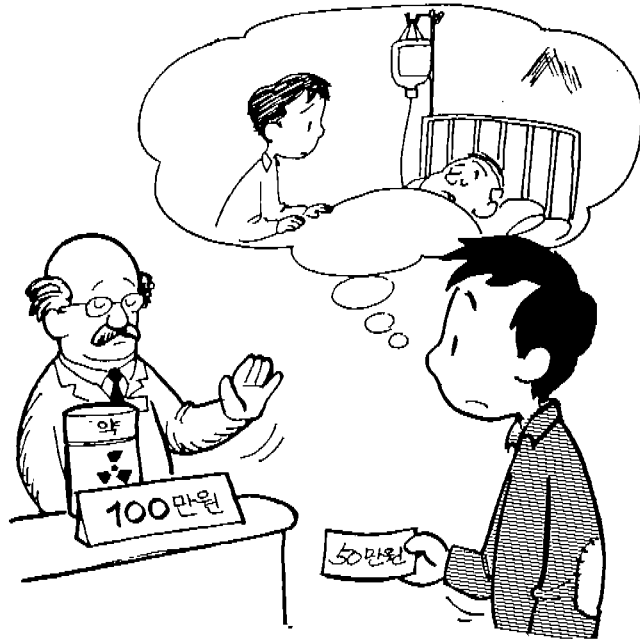
하인츠의 딜레마 (I)

유럽에 사는 한 부인이 무서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의사들은 그 부인을 살려낼 수 있는 약은 단 한 가지 뿐이라고 한다. 그 약은 그 부인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약제사가 최근에 만들어낸 라듐 성분의 약이다. 그런데, 그 약제사는 자기가 약을 만들 때 들었던 돈의 10배가 되는 값을 요구한다. 그는 라듐을 사는데 200달러가 들었을 뿐인데 약값은 2,000달러를 요구한다. 병든 부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돈을 구했다. 그러나, 그가 구한 돈은 약값의 절반만 1,000달러였다. 그래서, 하인츠는 약제사를 찾아가 자기 부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 약을 더 싸게 팔거나 아니면 나머지를 외상으로 해서라도 약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하인츠의 하소연을 들은 약제사는 “안돼요. 내가 그 약을 발명했으니 나는 그 약으로 큰 돈을 벌어야 하겠요.”라고 말하며 약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어진 하인츠는 약국에 몰래 들어가 부인을 위해서 그 약을 훔쳤다.

질문거리

1. 하인츠는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가? 그것은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왜 그런가?
2. 어쩔 도리가 없을 때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약을 훔치는 것은 남편의 의무인가? 아니면, 좋은 남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3.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약제사가 그토록 높은 값을 부를 권리가 있는가? 왜 그런가?
4.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답하시오.)
 - a) 그 남편이 아니에게 애정이 없어도 약을 훔쳐야 하는가?

- b)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인츠의 부인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친구는 약을 살 돈도 없고 그를 위해서 약을 훔쳐줄 만한 가족도 없다. 이런 경우에 하인츠는 친구를 위해서 약을 훔쳐야 하는가? 왜 그런가?
5. (하인츠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답하십시오.)
- a) 당신의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면 약을 훔치겠는가?
- b) 당신 자신이 암에 걸려 있고, 약을 훔칠만한 힘이 남아 있다면, 당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약을 훔치겠는가?
6. 하인츠는 약국에 몰래 들어가서 약을 훔쳐내어 자기 부인에게 주었다. 그는 경찰에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판사는 하인츠에게 벌을 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석방해야 할 것인가? 왜 그런가?



하인츠의
딜레마
(II)

라듐 성분의 그 약은 효과가 없었다. 이제 하인츠의 부인을 살릴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의사는 그 부인이 여섯달 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무서운 고통에 휩싸여 있는데, 상당량의 에테르나 모르핀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고통없이 곧 죽을 수 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다. 그녀는 의사에게 자기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에테르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자기는 어쩌면 몇 달 안에 죽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한다.

질문거리

7. 의사는 그녀의 요구대로 약을 주어 그녀를 죽게 해야 하는가? 왜 그런가?
8. 애완동물이 심한 상처를 입고 곧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죽임으로써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가? 왜 그런가?

(의사가 약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답하시오.)

9. 만약 의사가 그녀에게 약을 준다면 당신은 그 의사를 비난하겠는가?
10. 무서운 고통 속에서 6개월을 더 사는 것과 고통없이 곧 죽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겠는가? 왜 그런가?
11. 곧 죽게될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라면 의사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모두가 답하시오.)

12. 그 의사는 결국 그녀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경찰이 그 사실을 알게되고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배심원은 그가 그녀를 죽였음을 확인하였고, 그녀가 죽여달라고 부탁했

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살인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판사는 그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는가? 왜 그런가?

13. 그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14. 당신은 어떤 경우에는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믿는가? 왜 그런가?
15. 법은 국가에 대한 반역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신도 반역죄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믿는가? 왜 그런가?



**하인츠의
딜레마
(Ⅲ)**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하인츠는 약을 훔친 죄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10년 징역형을 받았었다. 그러나, 2년 후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낯선 지방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 이제는 큰 공장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그의 공장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었고 암을 치료하는 병원을 짓는 데에 그가 번 돈의 대부분을 바쳤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한 양복 재단사가 그가 하인츠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하인츠가 탈옥한 후 경찰에서는 내내 그를 찾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질문거리

16. 그 재단사는 하인츠를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가? 못본 체하고 지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 일인가? 왜 그런가?
17. 하인츠를 고발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인가? 아니면 좋은 시민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18. 만약 하인츠가 그 재단사의 좋은 친구라면,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왜 그런가?
19. 하인츠는 재판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는가? 왜 그런가?

쥬오의 딜레마 (I)

쥬오는 캠핑가기를 무척 원하는 열네살난 소년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캠핑에 필요한 돈을 저축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쥬오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착실히 저축하여 캠핑가는데 필요한 40달러와 약간의 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캠핑을 출발하기 직전에 그의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다.

쥬오의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낚시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약간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쥬오가 푼 돈이 저축한 돈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쥬오는 캠핑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질문거리

1. 쥬오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해야만 하는가? 왜 그런가?
2. 아버지는 쥬오가 저축한 돈을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3. 좋은 아들이 되려면 그 돈을 주어야 하는가?
4. 아버지가 아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쁜가?
5. 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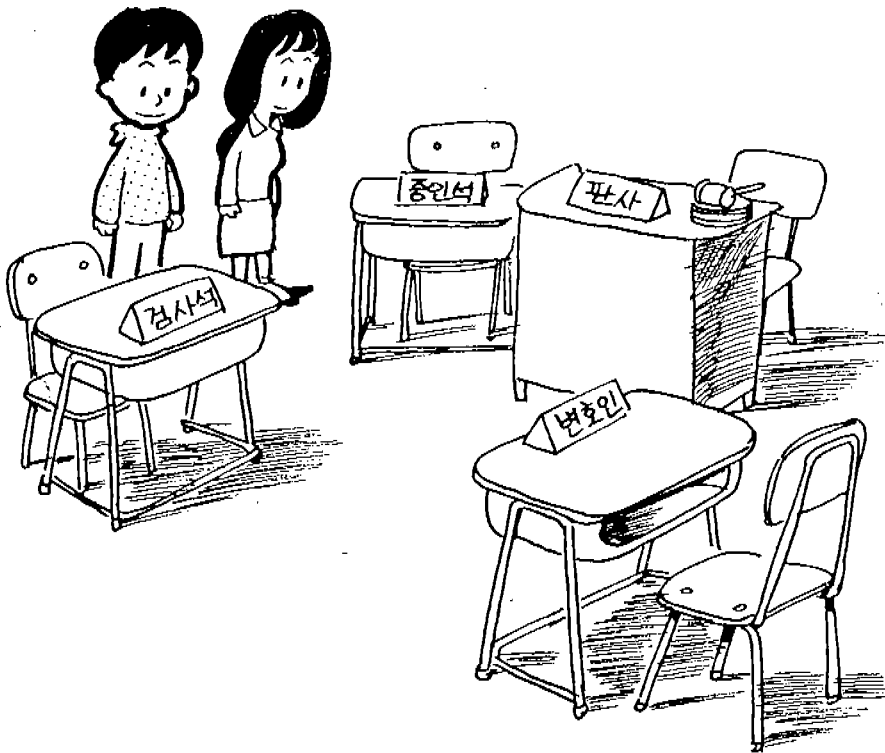
쥬오의 딜레마 (Ⅱ)

몇 년이 지난 후에 쥬오와 그 형은 난처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급히 동네를 떠나려 하는데 돈이 필요했다. 형인 알렉스는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500달러를 훔쳤다. 동생인 쥬오는 동네에서 자선사업을 하며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갔다. 쥬오는 그 노인에게 자기는 몹시 앓고 있으며 수술을 하기 위해 500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지로 그는 아픈 곳은 전혀 없었고, 그 돈을 돌려줄 의도도 없었다. 그 노인은 쥬오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래서, 쥬오와 알렉스는 500달러씩 가지고 마을을 빠져 나갔다.

질문거리

- 만약 당신에게 둘 중 누가 더 나쁜가를 묻는다면 당신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500달러를 훔친 알렉스가 더 나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갚을 의도도 전혀 없으면서 500달러를 빌린 쥬오가 더 나쁘다고 할 것인가? 왜 그런가?
- 당신은 알렉스처럼 훔친 사람과, 쥬오처럼 사기를 한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 왜 사람은 누구나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되는가?
- 가게에서 도둑을 맞은 사람과 빚을 주고 사기를 당한 사람 중 누가 더 기분 나빠 하겠는가? 왜 그런가?
- 법은 알렉스 처럼 훔치는 것과 쥬오처럼 사기를 치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명확하게 강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왜 그런가?

제 3 장 모의재판하는 방법



I. 모의재판의 목표

모의재판으로 이룰 수 있는 교육적 목표는 무엇인가?

모의재판에 참여하고 이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 ① 학생들은 법정 절차에 대한 내부인의 관점을 잘 알게 될 것이다.
- ②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사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는 법적 운영 체계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 ③ 재판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배우면서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몇가지 비판 능력도 배우게 될 것이다. 예컨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전략적 사고, 질문 기술, 청취 기술, 구술 표현과 즉흥적인 발언에 필요한 기술, 소재를 준비하고 만드는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 ④ 특히 성공적으로 모의재판을 하기 위해서 학생 상호간의 고도의 협동이 있어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협동적인 학습 활동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간에 서로의 인식도를 높이고, 학교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다.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사법 체계에서 행하게 되는 역할들과 그들이 매일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갈등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좀 더 고급 단계에서는, 권위나 정당성 등과 같은 법관련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 모의 재판이 학생들에게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의 재판은 현장 경험과 지역의 자원인사를 학교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실제 활동 중인 판사, 변호사, 목격자들을 관찰하기 위해 법정으로 견학가는 일도 모의 재판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유익한 법교육 활동이다. 게다가, 모의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과 대학생 등이 이 프로그램에 공헌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지역 자원 인사는 학

생들이 판사역을 하는 것을 도와 주거나 재판진행과정을 보충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법 체계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상호 활동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변화를 줄 것이다. 게다가, 자원 인사는 모의 재판에서 얻게 되는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의재판의 경험은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재판에서 목격자로, 또는 당사자로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곤란에 대비하게 해 준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이러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II. 모의재판 준비활동

법정 견학 가기

활동목표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학습시킬 수 있다.

- ① 재판 소송 절차의 목적을 설명한다.
- ② 재판 절차에 대해 적어도 한가지를 기술한다.
- ③ 재판에서의 중요 단계를 나열하고 설명한다.
- ④ 민사, 형사 두 재판에서 볼 수 있는 역할의 이름을 말한다.
- ⑤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활동순서

1. 읽기 과제 : 숙제로 하거나, 혹은 수업중에 학생들에게 재판 절차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읽도록 시킨다.
2. 단어 연습 : 칠판에 중요한 법률용어나 구절을 쓰면서 토의를 시작하고 학생들에게서 그 정의를 유도해 낸다. (예를 들면, 당사자주의 체계, 원고, 기소, 피고, 증언 등)
3. 소집단 토의 연습 : 3~5개의 그룹으로 반을 나눈다. 재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형사적 분쟁의 예를 2가지씩 찾도록 한다. 각 사례마다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의하게 하고, 어느 경우에 재판이 유일한 해결방법인지를 찾아내게 한다.
4. 숙제와 토의 연습 : 재판을 일으킨 사건관련 기사를 신문에서 찾아오도록 시킨다. 왜 이 사건이 분쟁을 일으켰는지를 반에서 토의한다. 법정 밖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들을 토의한다. 학생들에게 “재판에 관련된 각 팀이 법정에 들어 서면 그들이 성취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5. 재판 단계 익히기 : 학생들에게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를 말해보라고 하고 칠판에 적는다. (또는, 작은 그룹을 나누어 그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재판 절차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적게 한다.) 토의가 충분히 진행되면, 학생들의 생각과 실제 법정 절차와 다른 것 혹은 일치하는 것들을 토의한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 절차에 대해 개인적으로 목록을 만들게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기사를 모아서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특정한 재판 단계는 무엇인지를 알아 오도록 숙제를 내준다. 숙제해 온 다음에는, 재판 절차와 단계에 대해 퀴즈게임을 할 수도 있다.

6. 법정 견학 : 학생들이 법정을 견학하도록 미리 예약을 해 놓는다. 각 법정마다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곳 직원과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눈다면 법정을 방문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견학할 법정은 계획하는 모의재판과 동일한 절차 (민사 또는 형사 소송)를 관찰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견학 가기 전에 민사 혹은 형사 소송 절차의 특성들을 예측하는 것이 좋다.

7. 방문 보고서 작성 : 견학한 직 후,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숙제를 내준다.

- 어떤 종류의 재판을 관찰했으며, 어떤 부분이었나?
-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무슨 일을 했나?
- 관찰하면서 배운점은 무엇인가?
- 이 특정 문제를 다루는데, 이 절차가 좋은 방법처럼 보였는가?
- 당신이 생각하기에 추천할 만한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숙제해 온 다음에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숙제해 온 것을 기반으로 견학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

III. 모의재판 수행활동

학급모의재판 절차

1. 사건의 진상 및 배경, 관련 법조문, 목격자진술 등이 적힌 모의 재판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숙제로 읽어 오도록 한다.
2.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재판에 이용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모의재판에 익숙하지 않으면,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이 모의재판의 목적이 실제 재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학생들에게 학습할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자. 피아노를 배울 때, 간단한 연습부터 배우는 것과 같이 모의재판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차 드라마나 혹은 실제 재판과 가까운 것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한다.
3. 변호사와 목격자 역할을 할 학생들을 뽑은 다음, 그들의 재판 준비를 도와주고 반 전체가 재판에 다 참여하도록 그룹을 형성한다. 재판에서 원고측은 진술을 시작하고, 원고 증인의 신문과 피고 증인의 반대 신문을 진행하고 진술을 종결한다. 그 다음에 피고팀이 진술을 시작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진술을 한다. 그 후 원고 증인신문과 피고의 반대신문을 한 후 피고 증인 신문과 원고의 반대신문을 진행하여 모의재판을 종결한다. 또, 증인으로서는 4명의 학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략 12명의 학생들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판사, 법정 간수, 법정 리포터 역할을 하게 되고, 갑자기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인원도 필요하다.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은 이 재판을 관찰하여 나중에 기사형태로 반 학생들에게 발표를 할 매스컴의 기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4. 위 활동을 진행하는데, 지도자나 자원인사(변호사, 법학도 등)

의 도움으로 한 시간 정도나 혹은 그 이상의 수업이 소요될 것이다. 학생 변호사는 자기측 증인에게 물을 질문을 만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직접 신문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 증인들에게 질문할 반대 신문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쪽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유동성있는 발언을 할 것이므로, 빈틈 없는 논쟁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한다 해서 긴장하지 말자. 학생들은 연습을 반복하면서 질문하는 법이나 변호하는 기술들을 향상 시켜나갈 것이다.

5.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책상 배열을 다시 하여 교실을 법정으로 만든다.
6. 학생, 지도자, 그리고 자원 인사(실제 판사, 변호사, 법학도 등)와 함께 재판을 실행한다. 판사는 주로 법적 질문을 다루고 사건의 진상을 결정한다. 이는 주로 양쪽의 증인들이 제공하는 증언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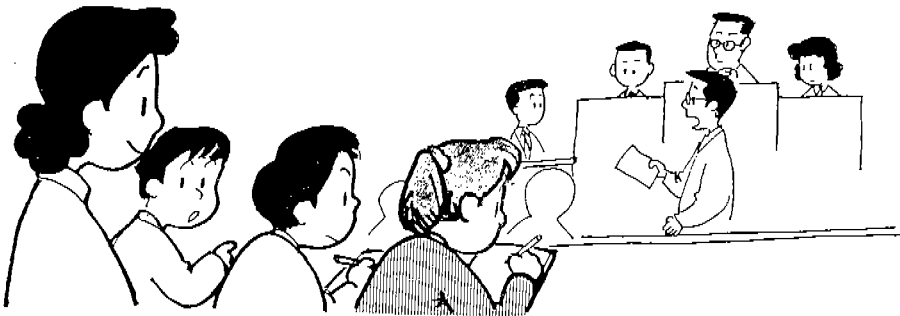
학생들의 실수를 지적하기 위해 지도자가 재판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목격자가 엉뚱한 진술을 하거나, 변호를 맡은 학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때라도 그대로 진행시킨다. 전체적으로 이 연습을 평가할 때까지 기다린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 재판부의 논의 과정을 실제 재판에서처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보다 학생들 앞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우선 판결 내리는 과정을 보게 되고, 어떠한 증거가 결정적인 것이었으며, 왜 그러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7. 마무리 토의과정 : 재판과정과 결과를 학급에서 보고하는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다. 모의 재판에서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는 우리 나라 법정체계의 진행 과정과 학생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들은 재판의 논쟁점과 양쪽 팀의 강점과 약점, 좀 더 일반적인 재판 체계를 토의한다.

예컨대,

- 우리의 사법 체계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재판을 보장해 주는가?
-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한 쪽이 있는가?
- 재판 과정에서 판사, 변호사,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무리 토의과정은 자원인사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모의재판은 자원인사가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는데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학생들은 자신이 토의되고 있는 중요 논쟁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소송과 조정의 차이점

활동목표

법교육은 사법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모의 재판은 소송적 전략이므로, 우리는 종종 소송 이외의 다른 갈등해결방법을 간과하게 된다.

아래에 나오는 전략들은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소송” 절차와, 다소는 생소한 “조정” 절차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활동은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의 나이와 법률지식 수준에 따라 조정해도 된다.

사례 1

원고 : 진수

피고 : 노마

지난주에 노마는 아파서 신문 배달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진수에게 대신 좀 배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마는 진수에게 3천원을 주겠다고 했다. 진수는 신문을 배달하긴 했지만 비닐 종이에 넣지를 않았다. 그런데, 비가 와서 신문이 다 젖어서 신문 보급소에 항의가 많이 들어 왔다. 노마는 진수에게 3천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사례 2

원고 : 박달재

피고 : 이정호

이정호씨는 박달재씨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박달재씨는 정년 퇴직을 해서 주로 자기 정원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 박달재씨는 두 집 사이에 4미터 높이의 울타리를 세웠다. 이정호씨의 말에 따르면, 이 울타리 때문에 그의 집에 해가 안 들어와 낮에도 방에 전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박달재씨에게 울타리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서 대답이 없었다. 이정호씨는 이 울타리 때문에 자기 가족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답을 무너뜨렸다. 이때문에 박달재씨는 화가 났고, 이정호씨에게 50만원의 울타리 수리비용을 요구했다.



1. 소송 역할극 이해하기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 절차와 조정 절차이다.

반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먼저 소송 절차를 사용하여 역할을 해보도록 설명한다. 한 그룹은 최소한 3명으로 구성된다. 3명 중에서 한명은 원고, 한명은 피고, 또 한명은 판사역을 맡는다. 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 ① 판사는 원고측에게 사건을 진술하도록 한다.
- ② 다음 피고측이 사건을 진술한다.
- ③ 각 입장의 진술이 있는 동안이나, 혹은 끝난 후에 판사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그 결과를 알린다.

이 역할극을 여러 그룹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난 다음,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판사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판사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점과 싫어하는 점은 무엇인가?
-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느끼는가? 판사의 결정에 그들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2. 조정 역할극 이해하기

학생들에게 같은 사건에 대해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소송 역할극에서 판사역을 맡았던 사람은 이제 조정자가 될 것이고, 피고와 원고는 이제는 논쟁자가 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 역할극에서 맡았던 것과 반대 역할을 맡도록 한다. 조정자는 이 사건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지, 그의 역할은 논쟁자들이 합의를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조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조정자는 양측이 서로 합의를 보도록 설명한다. 양측 각각은 서로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조정자가 양쪽 각각에게 따로 말을 할 것이다.
- ② 조정자는 각 분쟁자가 자신이 보는 사건의 문제점과 스스로

느끼는 감정 등에 대해 진술하게 한다.

- ③ 양측 논쟁자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진술한다.
- ④ 조정자는 양측의 견해를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 ⑤ 조정자는 제 1분쟁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제 2분쟁자에게 이에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자는 제 2분쟁자에게 해결 방안을 묻고, 제 1분쟁자에게 이에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자는 그들이 승인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합의사항을 다시 정리해 준다.
- 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자는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지를 각각의 분쟁자에게 따로따로 물어 본다. 그리고, 다시 양측 분쟁자를 모으고, 자신들의 해결방안을 말해 보라고 요청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자는 합의사항을 정리해 준다.

3. 소송과 조정을 비교하기

역할극이 모두 끝나면, 전체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마무리단계로 아래 사항을 질문한다.

- 판사와 조정자는 어떻게 다른가? 어느 역할이 더 쉬운가?
- 논쟁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절차에 대한 그들의 느낌은 무엇인가?
- 해결이 됐는가? 판사의 결정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이 두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인가? 각각의 갈등해결방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건들의 예를 들어 보라.

IV. 모의재판 평가활동

모의 재판 끝난후 집단토의

절차와 경험

-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맡은 각각의 역할을 기술하라.
- 이 게임의 이름을 “정의”라고 한다면, 이 사례에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 정의를 실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형사 사건

- 어떤 범죄로 피고인은 기소되었는가?
- 이 사건에서 어떤 법적 논쟁이나 문제거리가 발생하였는가?
- 피고인측의 주장을 말해보자.
- 검찰측의 주장을 말해보자.
- 검찰측은 어떻게 자기의 입장을 증명하려 애썼는가?
- 피고인측 전략을 기술해 보라.
-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면, 당신은 어떤 주장이나 사실을 제시하겠는가?
-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겠는가? 그 결정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대답에 대한 이유는?
- 상급법원에 상소할 근거는 있는가?
- 당신 판단에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민사 사건

- 원고가 얻으려고 했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법정 밖에서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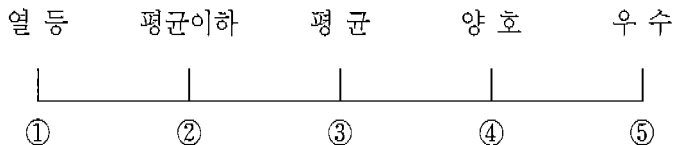
간의 화해가 가능했겠는가? 법원 외에 다른 기관중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법적 논쟁이나 질문은 무엇인가?
- 피고측의 주장을 말해보라.
- 원고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원고측의 전략은 무엇인가?
- 당신이 만약 변호사라면, 당신은 어떤 주장이나 사실을 제시하겠는가?
- 판사의 판결은 무엇이었겠는가? 거기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대답에 대한 이유는?
- 당신 판단에, 원고측이 정당한 재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모의 재판 평가서

이 도표는 모의 재판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 아래에 있는 14개의 각 기준에, 아래 보기에 있는 것을 척도로 평가를 해 보자.

원고 이름 : _____
 피고 이름 : _____



	평가 기준	원고측	피고측
변 호 인 평 가	1. 시작 진술 : 준비한 발표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2. 직접 신문 : 변호인은 자기편 증인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증인이 관련없는 말은 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3. 반대 신문 : 변호인은 상대방 증인에게 악의없이 그들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그들 증언이 모순됨을 폭로하였다.		
	4. 증인 신문사항 : 변호인은 적절하게 질문을 만듦, 재판 절차를 확실하게 이해시켰다.		
	5. 최종 진술 : 변호인이 자기편에 유리한 점을 강조하여 합리적으로 발표문을 만들고 반대편 주장의 오점을 드러내도록 말했다		
	6.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논쟁점과 법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7. 변호인은 증인의 말에 대처하는 능력과 소송 전반에 걸쳐 자발성을 보였다		
증 인 평 가	8. 성격묘사는 믿을만한 것이었고 증인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다.		
	9. 변호인의 질문을 다루는 증인의 태도에는 준비한 흔적이 보였다.		
	10. 증인이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한 증언은 사실 상황이나 증인 기록에서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11. 질문에 대처하는 증인은 자발적이었다.		
팀 평 가	12. 팀원들은 예의바르고 단정했고 목소리는 분명하고 명확했다.		
	13. 팀 전원이 사건 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4. 팀워크가 잘 이루어 졌다.		
총 점			

V. 모 의재판 시연활동

모 의재판 참여자의 역할

변호인

변호인은 재판에서 증거 제시를 통제하고, 자기편 입장이 유리하게 주장을 편다. 이들은 혐의 행위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증인들이 모든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질문을 유도하고 증거를 제시한다.

검사는 피고인측과는 상반되는 사건 진술을 한다. 증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확실히 유죄임을 판사가 믿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범죄의 동기를 제시하고, 피고인의 알리바이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를 부정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술한다. 자신의 사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하도록 증인을 세운다. 검찰측 증인은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으며, 사리에 맞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검찰측 사건진술을 약화시킨다.

증인

이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려 준다. 자신이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내포될 수 있는 사실에 한해서만 증언하여야 한다.

만약, 주어진 자료에서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을 받는다면 증인은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해야만 한다. (주의: 만약 검찰측 증인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증언하려고 한다면, 그 재판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외모에 기초를 두고 진술을 해야한다. 따라서, 증인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법정 서기와 정리

이들은 재판을 수행하는 데 있어 판사를 도와준다. 실제 재판에서, 서기는 개회를 선언하고, 증인들에게 선서를 시킨다. 정리는 피고인이 법정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관찰한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릴때 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착석해 주시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증언할 증인을 데리고 나오면 서기는 다음과 같이 선서를 시킨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모의재판 참여자 유의사항

시작진술 검사(형사 사건) 혹은 원고측 변호인(민사 사건)

- **목적** :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것으로 변호사와 피고인에 의한 반대, 법적 토론, 주장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함되는 내용**
 - 사건 이름
 - 검사 또는 원고변호사의 이름
 - 원고의 이름
 - 피고 이름과 피고측 변호사
 - 재판으로까지 가게 된 상황 및 사건에 대한 진술
 - 각 증인들이 증언할 중요 사실의 요약과 어떤 기록들의 중요성들을 소개
- **피해야 할 내용** :
 - 너무 자세한 것 : 판사를 혼란스럽고 지치게 할 수도 있다.
 - 과장이나 허풍 :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증명하십시오” 혹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등의 말은 삼가한다.
 - 주장 : 원고 측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시작 진술의 기능을 위배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항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피고측 변호사가 할 말을 미리 예상하는 것
 - 겉거나 왔다갔다하는 행위 : 이는 판사를 혼란시키고 판사의

집중을 방해한다.

피고측 시작 진술

- 목적 : 검사나 원고측 변호인의 입장을 부인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측 입장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한 윤곽을 잡는다. 검사나 원고측이 끼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피고의 이름과 피고측 변호인의 이름
 - 일반적 변호 논거
 - 검사나 원고측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진상 진술
 - 피고측 증인이 증언할 내용의 개요
 - 결론
- 피해야 할 내용
 - 논쟁점이 아닌 내용의 반복
 - 과장이나 주장
 - 원고측 입장에 대한 강한 지적
 - 건거나 왔다갔다 하는 행위

증인의 직접 신문

- 목 적 :
 - 변호인이 자기측 의뢰인을 유리하게 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는 증인의 증언과 기록에 의한 증거로 도출되어야만 한다.
 - 사실진술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 기억을 새롭게 해 주라.
자기 측 증인이 기억을 못할 경우, 신문사항을 다시 낭독해 줘서 그의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조언
 - “자유진술형(open-ended)” 질문을 한다. 다시말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고 시작하여 증인이 “설명”하거나 “기술”하도록 요청한다.

- 복잡하거나, 길게 꼬인 질문은 삼가한다. 질문은 명확하고 간단해야 한다.
- 증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친절하게 유도” 한다. 증인 이 주목을 끌게 만든다.

반대 신문

● 목적

- 자기 편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대편 증인에게 질문을 한다.
- 반대편 증인의 신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반대편 주장을 약화 시킨다.

● 범위

- 증인은 그들의 직접 증언한 내용에 대해 반대 신문을 받을 수 있다. 반대 신문은 증인이 직접 신문에서 이미 진술한 것을 설명하고, 수정하고, 의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접근

- 증인에게 대답을 암시해 주는 주도적이고, 정밀한 질문을 사용한다.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 상대방 증인의 증언에 진실성이 없음을 폭로한다.
- “왜?”라고는 묻지 않는다. “왜”라는 질문은 증인이 잘 짜여 지게 준비해온 대답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 보통,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 정당하고 정중하게 한다. “는 사실이 아닌가요?”식의 질문은 피한다.

최종 주장

- 변호인은 증언과 기록 중에서 자기편의 입장을 지지하고 반대편 입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증언과 기록의 핵심을 요약한다.
- 사건 해석은 법에 충실하고, 설득력있게 한다.
- 판사가 자기 편에서 주장하는 판결을 해 줄 것을 자신있게 요청한다.

모 의재판 사례

초·중학생 모의재판 사례

초등학교 상급생 또는 중학생들이 모의재판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 진술 형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진상

노마와 그의 친구들은 1985년 3월 15일, 금요일에 자전거로 이웃 동네를 돌아다녔다. 오후 6시 쯤, 다른 동네에 사는 몇 아이들이 노마와 그 친구들 옆으로 와서 그들에게 김씨노인 집 창문에다가 돌맹이를 던지라는 것이었다. 김씨노인은 가끔씩 아이들이 자기집 담 밑에서 놀면 시끄럽다고 쫓아내곤 하던 늙은 노인이다. 그가 아이들을 혼 내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창문이 몇 개 깨져 있었고, 그가 발견한 사람은 다른 아님 노마였다. 그래서 그 노인을 노마를 폭력행위로 고소했다.

쟁 점 : 노마는 김씨노인의 깨어진 창에 돌을 던졌는가?

증 인 : 원고로는 김씨노인, 신문 배달원, 피고인으로는 노마와 다슬이가 나왔다.

증인 진술

김씨노인 : 난 이곳에 47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작은 집을 지었죠. 아내는 5년전에 죽었소. 그 이후로 전 이 장난에 시달리고 있소. 1985년 3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우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죠. 난 뒷문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죠. 난 아이들이 모여있는 걸 봤죠. 난 노마를 알아요. 그 애는 저 아래 마을에 사는데, 가끔씩 우리집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요. 저는 저 애들이 우리집 창문을 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마침 노마의 손에 돌맹이가 쥐어져 있었고, 또 막 던지려고 하고 있었죠.

신문배달원 : 저는 김씨노인 집에 3년 동안 신문을 배달하고 있어요. 1985년 3월 15일, 금요일에 저는 김씨노인 집과 그 옆 세탁소 집에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들의 함성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씨노인 집으로 달려갔죠. 앞 마당에 10명 쯤 아이들이 모여있는 걸 봤어요. 노마와 다른 아이들이 서로 밀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다른 아이들이 노마가 돌맹이 던지는 걸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돌 던지는 건 보지 못했어요.

다슬이 : 노마와 저는 1985년 3월 15일 금요일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우리는 노마집 주위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서 우리들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네 창문에 돌을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은체 하려고 애썼어요. 그들은 돌을 들어 앞 현관 창문에 던졌어요. 그리고 몇번 더 던졌어요. 두개 정도가 깨졌다고 생각이 되요. 노마와 저는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한 아이가 돌을 들었을 때 노마는 말리려고 했어요. 그 때 김씨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들은 안 던지고 노마가 던졌다고 말했어요. 아마 노마가 자기들을 말리려고

했으니까, 노마한테 화가 났었나봐요. 노마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는 유리창을 깨지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노마 : 저는 1985년 3월 15일 금요일에 친구들과 자전거를 탔어요. 다른 아이들이 우리 옆으로 다가와서 못살게 굴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도 자기네와 같이 김씨 할아버지 집에 돌을 던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그 할아버지 집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무척 싫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제 옆의 한 아이가 돌을 집는 걸 봤어요. 저는 돌을 뱉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 애는 던지질 못했어요. 그 때 김씨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도 그 때 나타났어요. 전 돌을 절대 던지지 않았어요.”

유의점

원고측은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판사가 확실히 믿도록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논쟁점

- 날이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 없었는가?
- 노마는 돌을 던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던지려는 걸 막으려고 했는가?
- 김씨노인은 노마가 그의 집 주위에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밖으로 나 와 봤는가?
- 노마는 김씨노인집 창을 깨 정도로 그를 싫어했는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가?
- 어느 증인이 더 믿을만한가?

법적 개념

-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
- 증인의 신뢰도
- 입증 책임 : 논리적 확실성

고등학생 모의재판 예

사건의 진상

최민호와 박수지는 술을 마시기 위해 나이트 클럽에 갔다.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김용팔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자기는 수지를 잘 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최민호는 화가 나서 김용팔에게 사라지라고 말했다. 둘 사이에 말싸움이 오가더니 이내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이트클럽 지배인은 곧 경찰을 불렀고, 김용팔은 최민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김용팔의 주장은 최민호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데, 자기는 방어만 했다는 것이다.

증 거 : 이 재판에는 물리적인 증거나 기록적인 증거가 없다.

증 인 : 원고 측 증인 : 최민호, 박수지
피고 측 증인 : 김용팔, 나이트클럽 웨이터
양측에서 시작 진술을 하고 난 다음, 자기편 증인을 신문하고, 상대방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다음,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문을 읽어준다.

법률 용어정의

폭행과 구타 : “금방이라도 상대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려고 힘을 과시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 보일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시도 혹은,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위협들이 폭행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치거나 신체적 해를 입히지 않고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구타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는 구타에 속한다.” 이 지시문에 사용된 것처럼, 불

법적이라는 것은 법에 반대되거나, 혹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방어 : 원고가 불법적으로 피고인을 친 경우에만 형법상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을 쳤다고 해서 항상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법은 인정하고 있다. 자기가 위험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길 기다릴 필요는 없다.(예를 들면,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지체할 필요는 없다. 사실, 공격자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있다) 시험해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움직이게 마련이다.”

증인 진술

최민호 : 저는 수지와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저 자(김용팔)가 다가와서는 그녀를 성가시게 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녀에게 저 자를 아느냐고 물었고, 수지는 “몰라”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당장 꺼지라고 말했죠. 그는 너무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계속 제 여자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지배인을 부르기 전에 빨리 사라지라고 했죠. 그 때 그는 저에게 싸움 자세를 취하더니 제가 비켜나니까 저를 쳤어요.

박수지 : 저는 최민호씨와 앉아 있었는데, 옛날 친구인 김용팔씨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용팔씨는 이미 술이 취했고, 제 팔을 잡더니 춤을 추자고 했어요. 민호씨는 제게 그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민호씨는 아주 질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민호씨는 용팔씨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죠. 그래도 그는 계속 서 있었고 민호씨와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싸우게 된 거죠.

웨이터 : 저 사람(최민호)이 자기 여자 친구와 앉아 있는데, 김

용팔씨가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김용팔씨를 좀 알아요. 왜냐하면 그는 가끔씩 여기서 밴드 연주를 하니까요. 김용팔씨는 그날 칵테일을 딱 두잔만 했었어요. 제가 그의 테이블에 시중을 들었으니까 알아요. 김용팔씨는 그 여자한테 춤추자고 말했고, 그녀를 일으키려고 팔을 잡았죠. 그녀와 같이 있던 사람(최민호)이 화가 났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김용팔씨는 웃으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번쩍 뛰어오르더니 김용팔씨를 잡았어요. 김용팔씨가 그 남자의 등을 쳤고, 진짜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그 뒤에 경찰이 왔어요.

김용팔 : 저는 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수지가 온 것을 알았어요. 저는 2년 동안 그녀와 알고 지냈는데, 요즘 두달간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전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냐며 물었죠. 저는 두잔을 마셨지만, 전혀 취하진 않았어요. 전 그녀에게 춤추자고 했는데, 저 자(최민호)가 저를 우습게 쳐다 보더군요. 저는 수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저랑 춤추고 싶어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자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저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저도 모르는 새에 저를 잡더니 저를 쳤어요”

VI. 법대생 모의재판을 위한 전문지식

형사재판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목적

모든 형사 범죄는 “형법”에서 자세하게 정의되어 있다. 재판은 피고인이 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양쪽의 증거들을 다 들은 다음, 중립적 입장이 피고인의 무죄, 유죄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죄를 부과하게 되는데, 검사는 유죄라고 의심이 가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검사와 맞서는 사람은 피고인측 변호인이다. 죄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막아주기 위해 또는 정상참작을 통한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또한 변호인은 법적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고 애쓰며, 법과 그 절차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재판은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판사는 혼자 법을 적절하게 해석한다. 법적 논쟁이 되는 것은 증거 허용, 법의 의미 등의 문제이다. 사실에 관한 논쟁보다 법적 논쟁이 보통 상소의 원인이 된다.

사건의 판결이 나면, 양측은 법의 견해와 판결에 대해 불만스럽다 할 지라도 대개 받아 들인다. 유죄 판결은 피고인이 무죄를 계속 주장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록에 남게 되고, 무죄 판결은 영원히 피고인의 죄를 없애주게 된다. 동일한 범죄로 한 사람이 두번 재판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 범죄의 요소

형법은 보통 모든 범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즉, 물리적 부분과 정신적 부분이다. 대부분의 범죄에는 군중들에게 충을 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행위와, 범죄할 의도가 있는 정신적 행위가 포함된다. 범의가 있는 정신적 행위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졌거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를 개의치 않는 상태이다. 하지만,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는 생각과 행동이 둘 다 요구된다. 때로는 정신질환 진단서는 정신이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범죄의 의도를 형성할 수 없고, 처벌 보다는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 방위 또한 나쁜 동기가 없다고 처리된다. 불 타는 집으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무죄의 추정

우리나라의 범죄 정의 체계는 ‘죄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보다 죄 있는 사람을 풀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이 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판사가 확실히(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믿도록 설득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정의하기는 힘들다. 이 개념은 “유죄의 가능성”과 “유죄에 대해 불확실한 가능성”의 중간 쪼 될 것이다. 만약 심판관(판사)이 범죄의 진실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합리적 의심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판사의 마음에 가능한 의심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확실히(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판사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여전히 믿으면서도 증거불충분 때

문에 무죄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

판결은 종종 모순적 증거에 의존할 때가 있다. 두 증인은 같은 사건에 대해 반대되는 설명을 할 것이다. 때때로 한 증인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간에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때때로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기 보다 인간적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증 거

판사는 재판에서 제시되어진 증거만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 물리적 사물, 논증과 그림 등이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증거 규칙은 어떤 종류의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해준다. 소문, 풍문, 혹은 관련이 없는 진술 등은 허용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 또한 법정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인 증거 규칙

재판에서는 증거 허용을 규제하기 위해 신중한 규칙이 사용된다. 이 규칙은 검사측과 피고인측 모두가 공정한 청문의 기회를 가지며, 관련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고, 부당한 선입견을 가진 것이라고 여겨지는 증거들은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증거 규칙이 어겨지는 것 처럼 보이면, 변호인은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판사는 그 규칙이 위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재판 기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적절한 이의가 없으면, 판사는 그 증거를 아마 허용할 것이다. 그러한 규칙을 잘 알고, 자신의 사건의퇴인을 보호하고, 상대방 변호인과 증인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이 규칙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부담이다.

증거의 형식적인 규칙은 매우 복잡하나, 모의재판 수행을 위하여 본 절에서는 증거 규칙을 아래와 같이 단순화시킨 것이다.

관련성

증거의 관련성 : 대체로, 관련이 있는 증언과 증거만을 제시해야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물리적인 증거와 증언만이 허용된 사건 진술이 증거 없는 사건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 관련 증거가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논점을 흐리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논점을 명확히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증언이나 증거, 시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 : 이혼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반대 심문을 한다. “사고난 차 안에 있어본 적 있으?” (이 행위가 이 사건 및 주신문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신 문

증인의 직접 신문 : 증인은 그를 부른 변호인에 의해 유도 신문은 받지 않아도 된다. 유도 신문은 신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증인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비유도 신문의 예 : “이창호 병장, 체포된 날 아침 피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진술해 주시오”

유도 신문의 예 : “이창호 병장, 피고인이 몹시 취했다는 것이 사실이요?”

성 격 : 모의 재판에서, 사람의 성격이 이 사건의 논점이 아니라면, 한쪽의 성격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이혼을 다루는 민사(가사)사건에서, 한 배우자가 상대에 대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연관성이 있는 논쟁이다. 그러나, 절도죄를 다루는 형사 사건에서 이것은 논점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포악한 성격이 폭행을 다루는 형사 사건에서는 논점이 될 수 있지만, 계약 위반의 민사 사건에서는 논점이 될 수 없다.

기억력 되살리기 : 만약 증인이 진술서에서 했던 진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변호인은 증인이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을 보여준다.

예 : 지갑 소매치기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그의 대리인에게 사건에 대해 말하고 증언을 한다. 그런데, 재판에서 증인은 자신이 봤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인은 그에게 진술서를 보여줌으로써 기억을 되살리도록 도와준다.

증인 반대 신문 : (상대편 증인에게 질문) 반대 신문에서는 변호인이 유도 신문을 해도 된다.

유도 신문의 예 : “이창호 병장 , 당신이 피고를 들어올렸을 때, 그가 괜찮다는 걸 정말로 보지 못했소, 그렇지요?”

반대 신문의 범위 : 대리인은 본 재판과 관련이 있는 어떤 질문 (직접 질문에서 했던 것도 가능하다)이나, 혹은 증인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어떤 질문도 가능하다.

예 : 책임 부담과 손해가 둘 다 논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사고 재판에서, 반대 신문동안 피고인은 병원비 (비록 직접 신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해도)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대리인은 이 증인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을 ‘증인에게 이의를 신청한다’고 한다. 이것은 증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질문 할 수도 있다. 증인의 진술서를 보여주고, 증인에게 이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이의 신청을 진행시켜도 된다 .

예 : “지난 학기에 역사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가요?”

재직집 신문과 재반대 신문 :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직접신문과 반대 신문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재반대 신문은 재직집 신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제한되어야 한다.

제 시

물리적 증거의 제시 : 재판에서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다. 물리적 증거는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변호인은 이 증거를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물리적 사물이나 기록을 증거로써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 변호인이 증거로 제시하려는 사항을 판사에게 알리고, 표시를 요청한다. 원고의 증거는 “원고 증거제시 1번”과 같이 표시한다. 같은 방식으로, 피고의 제시품에는 “피고 증거제시 1번”으로 표시한다.
- 반대편의 변호인에게도 보여주는데, 그는 이 증거물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 증인에게 보여준다. “이창호 병장, 원고 증거제시 1번(이창호의 편지) 이라고 표시된 것을 알아보겠습니까?” (증인은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건과 그 증거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 증거에 대해 구술 증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판사님, 저는 이 편지를 “원고 증거제시1번”으로 증거를 제출합니다”
- 법정으로부터 증거로 인정을 받은 후 이 편지를 사용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증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편지의 이 문장을 크게 세번 읽어주시요.”

전문 진술

전문진술 : 법정 외에서 누군가에 의해 제기되어진 진술 증거가 법정에서 문제시되는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될 때, 그것을 전문이라고 하며 전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다.

법정 밖에서 “사건의 진실을 위해 제공된 “소문일 경우, 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더 첨가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소문을 배제하는 첫째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소문에는 법정외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시험해주는 반대 신문이나, 대면, 선서 따위의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갑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저의 친구 을이 저한테 말하기를 병이 시속 80km로 차를 운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진술은 ‘병이 시속 80km로 운전했다는’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된 법정외 진술이다. 우리는 이 말을 한 을의 신뢰성과, 이 진술의 정확성, 그리고, 그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었는지, 진실과 거짓말을 하는 경향성 등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선서, 대면, 반대 신문을 하지 않고, 을의 진술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부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진술의 가치가 을보다 갑의 신뢰성 (그는 선서와 대면, 반대 신문을 거쳤다)에 달려 있을 때에는 이 진술은 전문이 아니다.

또다른 예로서, 증인이 말하기를, “중고 자동차 세일즈맨이 저한테 말하기를 이 차는 사고가 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만약 세일즈맨이 증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제시된 거라면 전문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 차가 전혀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진술이었다면 이것은 전문이 되고, 따라서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이의 제기: “이의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소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이 기록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의에 대한 반응: “판사님. 이 진술은 사실의 진실을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

예외적인 전문진술 — 손해가 되는 인정 : 전문진술이 재판의 한쪽 입장에 의해 제시되어졌는데, 오히려 증거를 제시한 쪽에 불리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판사가 전문진술을 인정할 수도 있다.

예 :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전문진술 — 마음 상태 : 만약 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고, 전문가가 그 사람의 특별한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누군가의 말을 담고 있다면, 판사는 그 전문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예 : 증인 김영진이 말하기를, “이진수가 말하기를 ‘난 장도환이 싫어’라고 했어”. 이 증언은 이진수의 마음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의 제기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인이 증거 규칙을 어길 때에는 언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변호인은 규칙을 위반하는 당시에 일어서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하고나면, 판사는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다. 그런 다음, 판사는 질문했던 변호인 쪽을 향하고, 그 변호인은 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가진다. 그 다음, 그것이 증거 규칙을 위반해서 (“이의 인정”) 판사는 그 질문이나 대답을 취소할 것인지, 혹은 그 질문이나 대답이 재판 기록에 남는 것을 허락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의취소).

그 외 증거 규칙

근거 부족 : 증인은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본 사건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못하거나, 증거의 배경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제시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있습니다. 본 증인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또는 “이의있습니다. 이 변호인은 언제, 왜, 누구에 의해 이 증거를 준비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 복 : 만약 단지 똑같거나, 비슷한 자료로부터 이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증언이나 증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있습니다. 대리인은 지금 똑같은 증언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전문인의 의견 증언 : 비전문가인 증인은 그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신의 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것(차 속도나 운전자의 서투름)이외에, 증인은 궁극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만을 말해야 하며, 자기의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모호한 질문 : 변호인은 두가지나 그 이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 변호인이 말하기를, “이의있습니다 . 본 질문은 모호합니다”

증거 없이 사실을 추정함 : 변호인은 증거 없는 사실을 추정하게 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언제부터 아내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하면, 상대방 변호인이 반응하기를, “이의있습니다. 본 질문은 증거없는 사실을 추정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유도 질문 : 변호인은 증인이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언없이, 질문자에 의해 도출된 결론에 동의하도록 질문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본 법정이 허락한다면, 반대 신문에서 이러한 결론유도 질문을 제한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상대방 변호사는 반응하기를, “이의있습니다. 변호인은 결론유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식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 질문은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식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예로서, “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시오” 이에 대한 상대방 변호인의 반응은, “이의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이야기식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4 장 생활버려쓰기 상다사려

I. 신체적 · 정신적 자유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경찰이 시민의 가방을 뒤질 수 있나요?

문 : 장호영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호영이를 붙들고 가방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방속에 있던 몇권의 책을 압수해 갈려고 하기에 호영이는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더니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를 하자고 하며 호영이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므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다가 경찰관의 옷소매가 뜯어지고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경찰관은 장호영을 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하는데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하며 그 공무원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의 집행은 적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호영의 경우에서 경찰관이 압수, 수색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는 영장의 제시는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결여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누구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영의 경우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사례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216~21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 참고

적부심, 보석, 가석방

「구속적부심」 또는 「적부심」이라는 것은, 체포되어 몸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그것을 심사하여 기소전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한다든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하여 구금(이것이 미결구금) 당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 때 일정한 보증금을 걸고 석방되는 것을 「보석」이라고 한다. 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1987년 10월부터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보증금은, 법원의 소환을 받은 피고인이 석방된 후 까닭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는지, 보석허가 당시 법원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는 몰수된다.

「가석방」이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가 죄를 회개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무기형이면 10년, 유기형이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후이면, 시험 삼아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다. 수형자가 가석방된 후 무사하게 남은 기간을 넘기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범행자가 쓴 자인서가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문 : 절도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에게 붙들려가서 자신이 범행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썼습니다. 자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용의자에게 약간의 위협을 주고 자인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와서 자신이 쓴 자인서는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자인서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답 :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절도용의자 사이에 이루어진 자백서 같은데는 적용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절도용의자에게 어떤 상황하에서 어느정도의 위협을 가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사정이 본인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만한 정도의 강압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자인서도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는 원래 피고인의 자백이 그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고 달리 유죄의 보강증거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백서만으로 유죄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헌법」 11조 6항, 「형사소송법」 310조) 수사기관에서 용의자의 자인서를 근거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하는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37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용의자의 자인서 내용을 진실로 인정할 만한 장물, 기타, 증인 등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불온서적을 갖고 다녀도
국가보안법에 걸리나요?**

문 : 태민이는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태민이는 특히 역사학에 취미가 있어 공산주의에 관계된 서적 또는 중공과 월남 관계서적을 도서관에서 빌려오거나 서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민이가 지난 학기에 학생회 간부 일을 보면서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일이 있었는데, 가택 수색 끝에 위 책들이 소위 불온서적이라고 하여 압수되었습니다.

답 :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등을 제작, 소지, 반포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법으로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대학생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일반서점과 대학도서관에서 구입 또는 대출받아 소지한 연구자료가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사상과 가치체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불법목적의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태민이 경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240~241)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우에도 학문연구의 목적임이 분명한 이상 국가보안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고문에 의한 자백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판결요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1항

1.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적성의 피의자고문조서(3회)는 당시 고문에 참여할 검찰주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원심판사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공공피고인(당시는 피의자)과 합동하여 소매치기 하였다는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31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피의자고문조서의 기재를 증

* 이 내용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대법원 판례해설」(1986년, 5호 pp. 285-293;김명길 집필)에서 전문 발췌한 것입니다.

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자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석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2. 해 석

위 判決은 自白의 任意性에 關한 것이다. 이하 自白의 概念과 任意性에 關하여 본다.

① 自白의 概念

刑事訴訟法上の 自白의 概念에 關하여 보통 “自白이란 被告人, 被疑者가 犯罪事實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自己의 刑事責任을 認定하는 陳述을 말한다”라고 說明하나 自白의 概念을 위와같이 把握하는 立場에서도 自己의 刑事責任을 認定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自己에게 不利한 事實을 陳述하는 소위 승인 또는 自認도 넓은 意味의 自白에 包含시키고 있으므로 굳이 自白의 概念을 自己의 刑事責任을 認定하는 陳述로서만 把握하는 것보다는 犯罪事實의 全部 또는 그 一部를 肯定하는 陳述, 환원하면 自己에게 不利한 事實을 認定하는 陳述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自白은 司法節次에서 行하여진 것에 限하지 않으며 證人, 參考人 등의 形式으로 陳述한 것도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한 것이라면 實質적으로 自白이며 또한 自白은 口述에 의한 것에 限하지 않고 또 刑事節次의 어떠한 段階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건 상관없다.

그러나 自白은 위와같이 犯罪事實의 全部 또는 一部를 肯定하는 陳述이어야 하므로 形式的으로 自白으로 보여지더라도 實質적으로 把握하여 自己의 犯罪事實을 否認하는 것으로 보이면 이는 自白이 아니다.

大法院判例에서 自白이 아니라고 본 例로는 第一審 公判調書의 記載에 의하면 檢事는 被告人들에게 公訴狀記載를 낭독하다시피 公訴事實 그대로의 事實有無를 한꺼번에 물은 바, 被告人들은 同時에 “예, 그런 史實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얼핏보면

被告人들이 본건 犯罪事實을 自白한 것 같이 보이거나 被告人들의 搜查機關 및 原審法院에서의 陳述과 대비하여 보면 犯罪事實을 否認하는 趣旨을 보이니 이는 自白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1982. 6. 8. 宣告 81도 790判決), 또 檢査가 被告人에게 公訴狀記載를 낭독하 다시피 公訴事實 그대로의 事實有無를 묻자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檢査나 辯護人의 물음에서나 그 以後의 公判廷에서는 被告人이 相被告人의 不動產轉賣業을 도와주는 募集責이 아니고 단순한 顧客일 뿐이라고 陳述하고 있다면 欺罔 또는 편취의 정까지 自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1984. 4. 10 宣告 84도 141判決), 檢査의 被告人에 대한 第1回 被疑者訊問時 檢査가 司法警察官作成의 意見書記載 誣告被疑事實을 읽어주자 被告人이 “예,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有利한 證據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本人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陳情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前에 搜查官이 作成한 被疑者訊問調書와 檢査作成의 第2回 被疑者 訊問調書에서는 모두 그 犯行을 否認하고 있다면 檢査의 第2回 被疑者訊問調書에서는 모두 그 犯行을 否認하고 있다면 檢査의 第1回 被疑者設問調書의 內容은 自白한 것이 아니다(1984. 7. 24 宣言 83도 2692判決)라고 한다.

② 自白의 證據能力

가. 自白의 證據能力에 關하여 刑事訴訟法 第309條는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라고 規定하고 있고 이것은 任意性이 없는 自白은 證據能力이 없다는 것 즉 任意性이 있는 自白만이 證據로 될 수 있다는 趣旨을 明示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自白의 證據能力에 關하여는 任意性이 그 重要한 의미를 갖는다. 自白의 任意性은 그 陳述이 不當한 強制, 強要, 壓迫없이 任意로 한 것인가에 관한 問題이므로 證明力에 관한 問題인 自白의 眞實性和 區別된다.

從來 任意性없는 自白을 排除하는 根據로는 虛偽排除說과 人權擁護說이 對立되어 왔으나 近來에는 自白採取의 方法내지 過程에 있어서 적정절차 내지 合法節次를 擔保하기 위한 것으로 解釋하는 違法排除說이 대두하였고 이는 전통적인 信賴性 내지 虛偽排除의 理論을 벗어나 自白採取節次의 違法性을 문책하여 自白排除法則의 再構成을 시도한 것으로 주목된다.

大法院 1983. 3. 8 宣告 82도 3248判決에서도 “陳述의 任意性이라는 것은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 陳述의 任意性을 잃게하는 事情이 없다는 것, 즉 證據의 蒐集課程에 違法性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判示하여 위 違法排除說과 같은 說明을 하고 있다.

나. 刑事訴訟法 第309條에서 말하고 있는 拷問, 暴行, 脅迫, 欺罔 등은 任意性이 없는 例示에 不過하다.

判例(大法院 1985. 2. 26 判決 82도 2413)도 “위 法條에서 規定된 被告人의 陳述의 自由를 侵害하는 違法事由의 例示에 不過함은 法條의 文理의 解釋의 當然한 歸結이라 할 것이며 文面上 “기타의 方法”은 또한 多種多樣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고” “被告人의 陳述의 自由를 侵害하는 違法事由는 個別獨立的이던 2개이상 競合的이던간에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할 것임은 分明하다”라고 判示하고 있다.

다. 自白의 任意性은 보통 公判節次에서 被告人이나 辯護人이 이에 관한 主張을 함으로써 審理, 判斷된다.

被告人이나 辯護人이 明示의으로 自由의 任意性에 관해 主張하는 경우는 별 問題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主張이 있는지, 즉 自由의 任意性을 否認하는 趣旨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問題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大法院 1981. 10. 13 宣告 81도 2160判決은 “被告人들이 檢事以前의 搜查機關의 調查過程에서 拷問 등으로 任意性없는 陳述을 하고 그후 檢事의 調查段階에 이르러서도 任意性없는 心理狀態가 계속되어 同一한 內容의 陳述을 하였다면 비록 檢事앞에

서 調査만을 當時는 拷問 등 自白을 強要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檢事앞에서의 自白은 결국 任意性이 없는 陳述이 될 수 밖에 없으니, 被告人들이 檢事以前의 搜查機關에서의 拷問으로 任意性이 없는 自白을 하였음을 主張하면서 檢事앞에서 同一한 內容의 自白을 否認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檢事作成의 被疑者拷問調書の 任意性を 否認하는 趣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判示하고 나아가 “그러므로 原審으로서의 위 被告人들의 檢察에서의 自白이 과연 任意로 된것인지를 調査確定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大法院 1982. 2. 23 宣告 81도 3324判決도 같은 趣旨로 判示하고 있다.

그러나 “被告人이 公判庭에서 公訴事實을 否認한다고 하여 檢察이나 警察에서의 自白은 그 陳述의 任意性이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大法院 1984. 8. 14宣告 84도 1139判決)

라. 그러면 自白의 任意性에 관한 立證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점에 관한 學說上的 論議는 접어두고 判例를 보기로 한다.

大法院 1984. 8. 14宣告 84도 1139判決은 “法官이 自白의 任意性の 存否에 관하여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疑心할 만한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長期化, 欺罔 기타의 方法등 具體的인 事實을 들어 그에 의하여 自白의 任意性에 合理的이고 相當한 程度の 疑心이 있을 때 비로소 訴追官에게 그에 대한 立證責任이 돌아간다”고 하다가 하면 1983. 3. 8 宣告 82도 3248判決에서는 “被告人이 그 陳述의 任意性を 다투는 경우에 檢事에게 任意性에 관한 立證責任이 있다는 것은 檢事が 當該調書を 證據로 提出하였다는 점에서 當事者主義를 一貫할 때 當然한 理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陳述의 任意性이라는 것은 憲法 第11條나 刑事訴訟法 第309條의 明文과 같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 陳述의 任意性を 잃게하는 事情이 있다는 것 즉 證據의 蒐集過程에 違法性이 없다는 것이므로 陳述의 任意性を 잃게하는 위와같은 事情이 없다는 것은 憲法이나 刑事訴訟法등의 規定에 비추어 특히 異例에 속하는 것이므로 陳述의 任意性は 推定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陳述의 任意性에 관하여는 當該 調書の 形式, 內容(陳述拒否權을 告知하고 陳述을 錄取하고 作成完了後 그 內容을 읽

어 주어 陳述者가 誤記나 增減變更할 것이 없다는 確認을 한 다음 署名捺印하는 등), 陳述者의 身分, 社會的地位, 學歷, 知能程度, 陳述者가 被告人이 아닌 경우에는 그 관계 그밖의 事情을 參酌하여 法院이 自由롭게 判定하면 되고 特히 被告人 또는 檢事에게 陳述의 任意性에 관한 主張·立證責任이 分配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며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 때 卽 소위 特信狀態에 관하여도 같은 理由에서 또한 같다”라고 한다.

그러나 學說上으로는 任意性없는 自白은 그대로 被告人에 대하여 重大한 不利益한 證據가 된다는 점과 任意性없는 自白에 대하여 證據能力을 剝奪한 것은 주로 人權擁護의 立場에서이고 任意性을 左右하는 證據調書에 있어서도 當事者에게 反對訊問 機會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嚴格한 證明을 要한다는 見解가 있다.

마. 自由의 排除法則은 自白과 그것에 先行된 自白採取節次의 違法性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通用되지 아니한다.

判例(大法院 1984. 4. 24. 宣告 84도 135判決)도 “刑事訴訟法 第309條의 趣旨은 被告人의 自白이 고문,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考慮하여 自白이 公租所定의 事由로 任意性이 없다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것만으로써 自白의 證據能力을 排除하기 위한 것이므로 被告人의 自白이 同條所定의 事由로 任意性이 없다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한 그 自白과 위 事由와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自白은 證據能力을 가지지 못한 것이고 그 自白이 任意性이 없는 것이라는 事實까지 認定될 때 비로소 그 證據能力이 否定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前提한 후 이어 “被告人의 自白이 同條所定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前提한 후 이어 “被告人의 自白이 同條所定의 事由로 任意性이 없다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경우라도 그 自白과 任意性이 없다고 疑心하게 된 事由와 사이에 因果關係가 存在하지 않는 것이 明白하여 그 自白이 任意性이 있는 것임이 認定되는 때에는 그 自白은 證據能力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이와같이 任意性이

없다고疑心할만한理由가 있는自白은 그因果關係가推定되는 것이므로 이를有罪의證據로 하려면積極적으로 그因果關係가存在하지 아니하는 것이認定되어야 할 것이라”라고判示하였고大法院 1984. 11. 27宣告 84도2252 판결도檢事の被疑者訊問調書가任意性이 없다고疑心할만한理由가 있는 때에該當함에도不拘하고任意性이 없다고疑心하게 된事由들과被告人들과의自白과의 사이에는因果關係가存在하지 않는 것이明白하여 그自白의任意性이 있다고認定한原審判決을肯認하였다.

바. 刑事訴訟法 第309條가任意로陳述한 것이 아니라고疑心할만한理由가 있는自白은證據로 하지 못한다 하여任意性없는自白의證據能力을制限한 것은絶對的인 것으로서當事者の同意에 의하여도證據能力을取得할 수 없다. 이에關聯되어絶對적으로證據能力이 없는自白에 의하여蒐集된 다른證據의證據能力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問題가提起되는 바, 이는 결국違法하게蒐集된證據의證據能力問題에歸着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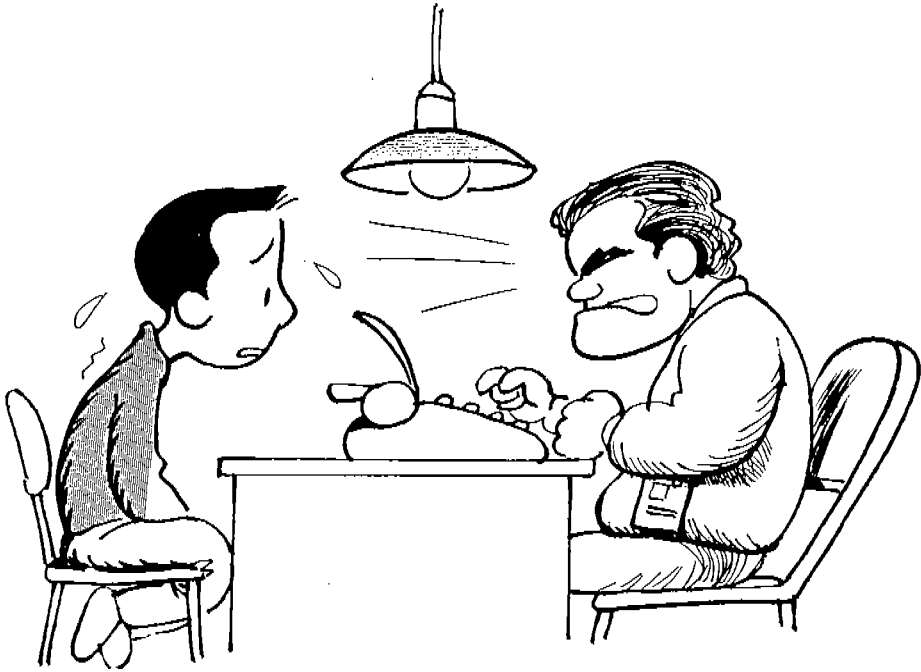
이 점에 관하여大法院 1977. 4. 26宣告 77도210判決은 “압수된 증8내지 10호는 위에서 설시한 바 대로被告人의證據能力없는自白에 의하여獲得한 것이므로證據能力이 없다 할 것이고……”라고判示하였다.

3. 結 論

이제 위評釋對象인判決을 보건대 이는任意性없는自白중欺罔에 의한自白의證據能力의排除를明示한 것으로서注目된다 할 것이다.

實際의刑事裁判에서는自白이아직도證據의王인地位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否認할 수 없는現實이라 할 것이므로自白의證據能力을制限한 위 刑事訴訟法 第309條는證據法規定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고 따라서 위規定을嚴格히解釋함으로써 위規定이 내포한 깊은法精神을具現하여야 할 것이다.

II. 형사사건



조카가 삼촌 소유의 전축을 훔쳤는데 전과자가 되나요?

문 : 현우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삼촌의 소유 휴대용 전축을 훔친 죄로 삼촌에게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전과자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하는 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즉결 심판대상자, 사법경찰관리가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우는 삼촌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344조에 의해 형이 면제되므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범죄피의자이고 수사자료표를 작성치 않으므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519)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 물건을 훔쳤을 때
둘이 똑같이 처벌받나요?**

문: 진우는 친구 민호의 제안으로 민호와 함께 민호의 할아버지
택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노래방과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민호 할아버지는 민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진우에게만 도둑맞은 물건의 변상을 요구하면
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호 할아버지가 형사상 고소하면 민호는 처벌받지 않고 진우
만 처벌받게 될까요?

답: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
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
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344조에서 이를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규정은 친족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민호는 피해자(할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되나 그
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진우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
는 공범으로서 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344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
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
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518)에서 인용한 것입
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보관 밑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주인에게 들켜 그냥 도망쳐 나와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문 : 영민이는 어느날 친구들과 빈둥거리다가 남의 집에 대문이 열려 있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때가 대낮이었고 훔친 물건도 없어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영민이를 연행해 갔습니다. 영민이는 그 집에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영민이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답 : 영민이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바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 2433판결). 단지 절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동법 제342조). 그러나 주간에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미수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행위가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영민이는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521)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같이 짜고 들어갔지만 직접 훔치지 않은데도
죄가 되나요?**

문: 옆집 치수가 동네의 나쁜 친구들과 몰려 다니더니 얼마전에 세 사람이 모여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오자고 서로 짜고 들어가 카세트 라디오 1대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집에 들어가고 치수는 따라만 갔다가 밖에 있었고, 물건을 손도 대보지 않았으며 그 물건을 팔아서도 한푼도 나누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수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형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한 후 그에 따라 공모자의 일부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때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도 실행행위를 한 자와 같이 모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여 똑같은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과 같이 일단 범죄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이상 현장에 가서 실제로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범죄를 공모한 자 중의 한 사람이 그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다른 공모자에게 공모관계를 이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에 다른 공모자들만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탈자에게는 다른 공모자가 실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도 범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증보판)」(1986년 ; pp.443 ~444)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별하고 있고 다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만은 이를 중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하여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네가게의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타고 갔다 놓은 것도 처벌받나요?

문: 승호는 같은 동네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상에서 가끔 오토바이를 빌려타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승호가 급한 사정이 생겨 주인의 허락이 없이 열쇠가 꽂혀 있던 오토바이를 2시간쯤 타고 돌아와 처음 주차된 본래 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그때 마침 주인이 오토바이를 쓸 일이 있어 오토바이를 찾던 중 승호가 오토바이를 타고간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며 승호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 경우 승호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 먼저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는 바,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라 함)를 가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호의 경우는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평소 알고 지내던 오토바이 수리가게의 오토바이를 급한 용무로 인하여 ‘일시 사용할 의사’로 이용하고 난후 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 대법원 관례를 살펴보면 “차량의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모르되,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한 의사라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 118판결)”고 판시하고 있습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52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니다.

따라서 승호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수리상과의 도의적인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일단 형사책임은 없다할 것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 :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경운기를 몰다가 실수를 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쳐 중상을 입게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위에서 말하기를 전과도 없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석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인에게 형을 선고하여 그것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만 하고 그 밖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기자유형의 경우 형사정책상 불미스러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형을 기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범인의 심정을 타락시키고 또한 교도소 내의 불량한 분위기에 물들게 한다면 그것은 교화 교정이 아니라 악성을 심화시켜 보다 무서운 범죄인을 만들어 내는 효과밖에는 가져 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성향이 약한 초범자 등의 경우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시 유예해서 범죄자 자신의 자각에 의하여 개선을 기대하면서 만약 그것이 적당치 않을 때는 그 형을 집행하고, 무사하게 유예기간을 지나 개선된 때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에 관하여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2조).

* 이 사례는 서울지방법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증보판)」(1986년; pp.444~445)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한편 집행유예와는 달리 형의 선고를 해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하는 선고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유죄판결인 점은 분명하고 다만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유죄판결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되어 전과자의 누명은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서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문 : 지훈이는 재작년 9월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을 다 넘기지 못하고 그만 올해4월에 다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올해 9월까지인데 지훈이 부모님은 지훈이를 구제할 방도는 없을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답 :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합니다. 아들을 개과천선시키려고 애태우는 부모의 정에 대하여 경의와 동정을 포함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항소 중에 있는 절도미수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항소 중에 있는 절도미수건이 징역형으로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므로 유예중에 있던 징역 8월의 실행을 집행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항소사건의 판결이 늦추어져서 1988. 9. 25 이후에 확정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집행유예되었던 형의 선고는 소멸하므로 이번에 확정되는 형벌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항소심 판결이 8월중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p.39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에 선고되더라도 귀하는 부득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못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쫓기는 후배를 숨겨줬는데 같이
처벌되나요?**

문 : 어느날 승수의 대학 후배가 찾아 와서 최근에 데모주동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데 자신은 데모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데모 당시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생회 간부라고 하여 체포하려고 한다며 지금 잡히면 공연히 고생할 것 같아 잠시만 피하여 있다가 사실이 밝혀져 혐의가 벗겨지면 그때 자수하고자 하니, 몇일만 승수의 집에 있게 해 달라고 하여 함께 있다가 수색 나온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승수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 관하여는 실제로 그러한 죄를 범한 자에 한할 것인가 또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또는 소추 중에 있는 피의자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나 범죄의 혐의로 수사중인 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소권의 소멸, 공소시효의 완성, 사면 등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된 자는 “죄를 범한 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은닉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죄를 범한 자인 이상 그가 후에 무죄 또는 불기소로 되었다 하더라도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217~21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족,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족간의 정의를 고려하는 취지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강 추측으로 증언하면 위증죄에 걸리나요?

문 : 병철씨는 대학교 앞에서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느날 데모학생들과 전투경찰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투석전이 벌어지고 최루탄이 터지는 가운데 어느학생이 던진 화염병이 식당 안까지 날라와 마침 가스에 불이 붙어 내부 일부가 불탔습니다. 그후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열려 검찰에서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서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물기를 법정에 서 있는 열 몇 가량의 학생 피고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하더니 “저 학생이 당시 화염병을 던졌다고 자백하였는데 그 학생이 화염병을 던진 것을 보았느냐”고 하기에 “그 학생이 맞습니다”하고 엉겁결에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철씨는 그 학생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직접 던지는 것을 목격한 바도 없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던졌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틀림없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말한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증이 되는지요?

답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법률에 의한 선서”는 민사, 형사, 가사 및 행정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많으나 비송사건, 징계사건, 기타 특별법상의 사건에서도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증인이라 할지라도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그 선서하지 않는 이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든 착오에 의하든 위증죄의 주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 이 사례는 서울지방법원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218~219)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있으므로 그 진실은 증인의 성실한 주관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일 부러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면 그 증언이 비록 실제와 부합한다거나 그 증언대로 범인이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병철씨의 경우, 기억에 없는 내용을 기억에 있는 사실인 양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직접 소송의 쟁점에 관한 것이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위증죄의 범이 모해의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형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교육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랑의 매」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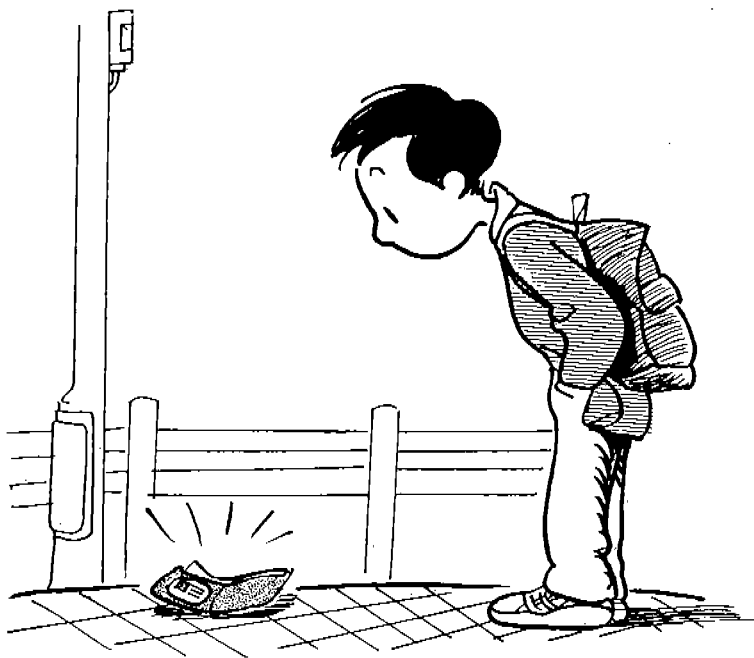
문 : 김성수씨는 중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붙잡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차례 때렸더니 불행하게도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김성수씨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교육법」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76조), 한편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동법 제75조 제1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른바 정당한 행위로서 법률상 허용되며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징계권 행사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징계행위로 인하여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자(교사)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 115판결), 김성수씨 경우처럼 학생이 고막파열까지 났다면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보여지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되어 김성수씨는 그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p.49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III. 경제적 자유



길에서 주은 돈을 쓰면 처벌되나요?

문 : 중학생인 영민이는 길에서 돈 5,000원을 주어 가지고 친구들과 빵을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원래 주은 돈은 경찰서에 가져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민이 처럼 그냥 써버리면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답 : 남이 분실한 물건도 엄연히 남의 재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이 죄가 되듯이 남의 분실한 재산을 습득한 자가 멋대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형법」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민이가 길에서 주은 돈을 마치 내것인 양 소비한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연령은 만 14세이므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될 뿐입니다.

그리고 습득한 물건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습득물의 주인이 나타나 때에는 주인에게서 그 값의 5%내지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만약 주인이 1년간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p.37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돈 지갑을 주어서 신고했는데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 : 정호는 어제 밤늦게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등 총 1,600만원의 돈과 수첩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주운 지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청구해야 할까요?

답 : 정호는 습득한 지갑을 수첩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알 수 있으면 그 소유자에게, 또 알수 없으면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의 보상은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유실물 가액의 기준은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일 경우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판례는 “횡선수표”에 관하여 “이 수표를 유실한 후 이것이 선의·무과실인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가 입게될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에 따라 보상기준을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 1488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한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물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p.75)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면 정호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니 6개월 이내에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실물 습득의 경우 법의 규정을 떠나 도의적으로 처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바뀐 구두를 그대로 신고 다니는 것도 죄가 되나요 ?

문 : 성열씨는 어느 식당에 갔다가 구두를 벗고 방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의 구두와 바뀌어졌는데 집에 돌아온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는 제품과 크기가 비슷하여 얼른 보아서는 구별하기 힘든 것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답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매장물을 횡령한 자는「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법에서 예시하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은 물론이고 타인이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라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물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 도망간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습득하면 그때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횡령의 고의없이 우연한 사정 또는 실수로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에 들어온 물건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 비로소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열씨 경우에도 엄격히 말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유실물의 재물로서의 가치가 적다든지 처벌가치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 사례는 서울지방법원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 pp.221~22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목욕탕 옷장에서 잃어버린 돈을 주인이 물어주나요?

문 : 시라는 목욕탕에서 옷과 현금을 도난당하였는데 주인이 「도난경고」 스티커를 왜 보지 못하였느냐고 하면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시라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을까요?

답 : 목욕탕 여관 등과 같은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시설내에 휴대하고 들어온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하였거나 훼손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품에 대하여 업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 표지」를 써 붙였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에서 현금이나 수표 또는 값비싼 물품에 대해서는 손님이 미리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 물건이나 돈을 분실하였을 때, 공중접객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옷장에 벗어 놓은 옷가지는 주인에게 물릴 수 있지만, 분실한 현금은 물릴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반지나 현금 기타 귀중품은 여관방이나 옷장에 넣어 두지 말고 반드시 따로 주인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상법」 152조~153조).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2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허위선전한 책을 월부로 샀는데 반환할 수 있나요?

문 : 승연이는 서적판매회사의 외판원으로부터 학교 앞에서 세 계명작전집을 월부로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외판원은 이 도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대한 교육 연합회, 청소년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우량도서라고 하였으며, 책 첫장에 위와 같은 추천서까지 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승연이가 그런 단체에서 이 도서를 우량도서로서 추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럴 때 승연이는 이 도서를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외판원들로부터 서적 등을 할부로 구입할 때, 특히 방문판매시에는 목돈없이 구입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에 빠지기 쉽고, 또한 외판원들의 끈덕진 판매술에 빠져 승연이 처럼 허위 내지 과장 선전에 속아서 물품을 사기 쉽습니다.

승연이 경우에는 외판원의 선전내용이 중요한 점에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서적을 구입함에 있어서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민법」 제109조)에 해당되어 판매원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례에는 할부 판매나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매수인)에게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cooling-off period, 대체로 5~7일)동안 아무런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 (증보판)」(1986년;pp.427~42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 전세금이 안전할까요?

문 : 영이네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 서울 신설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잔금을 치르고 미리 이사갈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전입신고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대전집의 전세금이 빠지지 않아 아직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울집이 매도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의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주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이네 경우를 보면 아직 주택의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전체가 이사를 할 처지가 못되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 일부라도 이사를 하여 주택을 인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13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저의 재산을 오빠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어떻게 하지요?

문 : 16살인 희연이에게는 이복형제인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희연이와 오빠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희연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자고 졸라댑니다. 희연이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오빠가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어쩌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연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나요?

답 : 미성년자의 권리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다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것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50조 참조).

- ① 미성년자의 영업을 대행하는 일
- ② 미성년자의 명의로 재산을 빌리거나 남의 보증을 서는 일
- ③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변동을 가져옴을 목적으로 하는 일
- ④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일 등입니다.

위 일을 후견인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면, 미성년자 자신이 직접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너무 연소하여 취소의 의사표시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950조 2항).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p.303~304)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로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복오빠가 후견인의 권한으로 임의 처분하는 일이 생기면, 피해자인 미성년자 자신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언제든지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내면 후견인이 한 매매행위는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처지에는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는데, 친족회는 어떻게 조직되는지 간단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현재 친족회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자신이 가정법원에 친족회의 회원을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친족회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아버지 쪽)이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어머니 쪽)이 법원에 미성년자의 친족회원 선임을 청구하면 됩니다(민법 962조, 777조 참조)

미성년자도 고등학생 이상(18세)이면 사리분별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권리 보호에 스스로 유의하고 일이 있으면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상속의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문 : 종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장남인 종오 이외에도 남자 동생이 있고 출가한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자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몫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 : 많은 유산이 있을 때에는 법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모두 공동상속이 되어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집 한 채에 불과한 경우, 특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협의하여 그 재산을 분할 상속하지 않고 포기하여 장남이나 어머니의 단독상속으로 하도록 하는 예가 많습니다.

민법1009조에는 동순위인 상속인이 여러명 있을 때 그 상속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구민법에서는 아들딸이 수인일 때 장남과 차남에 차등을 두었고, 출가한 딸과 미혼인 딸 사이에도 차등을 두었지만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자녀간의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와 공동상속을 하는 때에는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자녀의 몫에 비하여 5할(2분의 1)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질문한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어머니의 몫이 9분의 3이 되고 장남·차남·출가한 딸은 균일하게 각각 9분의 2씩 몫을 나누게 됩니다.

이상 상속비율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pp.287~28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IV.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아직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너무 나이 어린 어린이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운전을 한다든지 군대에 입대한다든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따위의 일을 하려면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서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이 몇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직업별로 정년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봅시다.

의사, 변호사, 목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자유직업인은 정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임기는 5년이고 3년 범위 안에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집달관의 임기는 3년이고, 참모총장,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계급정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검사장은 4년, 지방검사장은 8년까지 일할 수 있고, 군인, 경찰 등도 일정한 계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연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p.45~5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군인의 정년(군인사법 제8조)				경찰의 정년(경찰공무원법 제24조)			
(1) 연령 정년		(2) 근속정년		(1) 연령 정년		(2) 계급 정년	
원수	종신	대령	35	경정 이상	61	치안감	4
대장	63세	중령	32	경감 이하	58	경무관	6
중장	61	소령	24			총경	9
소장	59	대위이하	15			경정	11
준장	58	준사관	32			경감	15
대령	56					경위	18
중령	53	(3) 계급 정년					
소령	45	중장	4				
대위이하	43	소장	6				
준사관	55	준장	6				
원사	55						
상사	53						
중사	45						
하사	40						

군인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연령 (군인사법 15조)			군무원의 정년 (군무원 인사법 31조)	
구 분 계 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급 수	정 년
소 령		36	3급이상	61
대 위		32	4급 - 7급	58
중 위		29	8급 - 9급	55
소 위	20	27	기능 군무원	40 - 61
준 위	20	50		
하사관	18	27		

나이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근 거 법 령
3세미만	• 새마을 유아원(영아반)	유아교육진흥법 13조 1항
3세	• 유치원	교육법 148조
4세	• 유아원	유아교육진흥법 13조 1항
6세	• 무임운송대상(6세미만의 아 이 1명만)	자동차 운수사업법 20조, 삭도 궤도 사업법 21조
6~12세	• 국민학교 입학교육	교육법 96조
7세	• 철도전시관 무료관람	철도전시관 진열품 관람 규칙 5조
9~24세	• 청소년육성법 적용	청소년육성법 2조
13~15세	• 중학교 입학교육,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에는 연령제한 이 없다	교육법 102조의 2
12~14세	• 비행을 저지르면 보호처분 받음	소년법 4조
	• 근로자로 취업가능, 근로시 간은 제한된다	근로기준법 50조, 55조
	•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 면 강간죄	형법 305조
14세	• 형사책임능력자(처벌 받을 수 있음)	형법 9조
	• 출입국관리상 여권을 소지 하고 제시하여야 함	출입국 관리법 23조
	• 한외(限外)마약 등 구입가능	마약법 46조의 3, 약사법 48조
	•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가능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20조
	• 유독물을 14세미만자에게 판매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2조
	• 흥행을 위한 곡예가능, 주점 기타接客영업에 종사가능	아동복지법 18조의 3, 4호
15세	• 타인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 고, 피양도가능(법정대리인 의 동의 필요) 선원이 될 수 있다.	민법 869조, 899조 임양특례법 4조 2항 선원법 81조 1항

나이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근거 법령
16세	•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 혼인 (여자) 가능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얻을 수 있음 • 16세미만자를 폭사하면 범 죄 • 법정에서 선서가능(선서능력자) • 소년원에서 16세미만자와 분리수용 • 헌혈가능	민법 801조, 807조 도로교통법 70조 형법 274조 민소법 293조, 형소법 159조, 군사법원법 199조, 국회에서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3조 소년원법 8조
17세	• 주민등록증 발급·소지 제시 • 유언도 할 수 있음 • 육·해·공군에 지원입대 가능 • 사관학교 입학(17세~22세 미만의 미혼여자)	주민등록법 17조 민법 1061조 병역법 19조 1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3조
18세	•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신고 • 자동차 운전면허 • 중기조종사 면허 • 부모의 동의 없이 약혼, 혼인(남자) •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이 된다(18세미만자, 18세이상의 자 중 폐질상태에 있는 자) 공무원의 소자녀로 18세이상 달하면 유족연금받을 권리를 상실됨 • 원자로 조종사 면허 등 받을 수 있음 • 방사성물질 취급가능 •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자”가 될 수 있음	병역법 8, 9조 도로교통법 70조 중기관리법 20조 민법 801조, 807조 공무원연금법 3조 2항, 59조 1항 3호 원자력법 92조, 101조 경범죄 처벌법 5조 2항

나이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근거 법령
18세	• 18세 미만의 자는 일정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다. • 형사상 특별취급 (18세미만자) • 병역의무부담 (제1국민역이 된다) • 하사관이 될 수 있다. • 단기하사관학교 입학가능 (18세~23세미만의 남자) • 성인전용 유기장 사용가능 • 아동보호시설에 퇴소 • 생활보호대상 아동에서 제외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 가입, 지역가입)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 모자복지법의 아동에서 제외 • 최저임금법에서 특별취급 (18세미만자)	전부경찰대 설치법 3조 2항, 용역경비법 7조 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9조1호, 근로기준법 51조(유해, 위험한 사업), 55조(근로시간제한), 56조(야간작업), 58조(갱내근로), 62조(귀향여비), 63조(교육시설) 소년법 59조(사형, 무기형선고 불가 62조(벌금 못내도 유치선고 불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4조(사형, 무기형선고 불가) 병역법 5조 1항 4호, 8조 군인사법 15조 1항 단기하사관학교설치법 3조 공중위생법 4조 3항, 12조2항 3, 라호 아동복지법 2조 1호, 13조 생활보호법 3조 1항 2호 국민연금법 6조, 8조, 10조 국민연금법 48조, 63조, 65조, 66조 모자복지법 4조 3항 최저임금법 5조 2항
19세	• 징병검사를 받는다 • 약혼, 혼인, 입양(부모 동의 없이)가능 선거권이 있다.	병역법 11조 민법 800조, 807조, 808조, 866조 헌법 24조, 대통령선거법 8조 국회의원선거법 8조,

나이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근거 법령
19세	• 투표권이 있다. •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 가능 • 공무원,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다. • 민방위대원이 된다(만 20세 되는 해의 1.1부터 만50세 되는 해의 12. 31까지) • 군대에 입영가능 • 교도소에 수용대상 • 모자복지법상의 아동에서 제외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인력자원에 해당 • 미성년자가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헛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부양가족공제를 할 때 직계비속은 20세이하인 사람 2명에 한정 • 20세 미만자만 소년으로 취급된다 • 보호처분변경의 경우는 20세 이상이라도 소년법 적용 • 최저연령이 20세인 사람이 준위로 임용가능	지방자치법 22조,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9조 국민투표법 7조 국적법 5조 2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3조, 변호사법 3조, 공인노무사법 3조 민방위 기본법 17조 병역법 16조 1항 행형법 2조 2항 모자복지법 4조 3항 모자복지법 2조 1항 1호 상속세법 11조 1항 3호 소득세법 65조 4항 소년법 2조, 7조 보호관찰법 52조 군인사법 15조
21세	• 1종 대형 면허, 특정증기면허 취득 가능 • 소년원에서의 형집행 한계 연령	도로교통법 70조 6호, 증기관리법 부칙 2조 소년법 63조, 소년원법 43조

나이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근 거 법 령
25세	• 피선거권이 있다(입후보 가능).	국회의원선거법 9조, 지방자치법 23조,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10조 1항, 상공회의소법 14조, 체신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4조 2항
30세	• 각종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지방자치법 23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10조 1항, 한국은행법 14조, 중소기업은행법 16조
31세	•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 면제(보충역에 편입)	병역법 11조, 16조
33~34세	• 향토예비군이 된다(만 33세 되는 해의 12.31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1항 2호
35세	• 각종의 피선거권	지방자치법 23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10조
40세	• 특수병과 장교 편입 가능 •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 공무원중 일부의 정년	병역법 50조 3항 헌법 67조 4항, 대통령선거법 9조, 법원조직법 42조, 헌법재판소 5조 1항 국가공무원법 74조 1항,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 군무원인사법 31조 1항
45세	• 전시 등에는 병역의무가 45세까지 연장	병역법 72조 1항 2호
55세	• 각종의 정년	국가공무원법 74조 1항 외무공무원법 22조 1항
56~59세	• 노령임금	국민연금법 56, 57조
58세	• 각종의 정년	국가공무원법 74조 1항, 외무공무원법 22조 1항
60세	• 판사, 검사, 군인, 집달관 등의 정년	법원조직법 45조, 검찰청법 4조, 군인사법 8조 2항, 3항, 외무공무원법 22조 1항, 집달관법 3조의 2

나이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근거 법령
60~64세 61세	• 노령연금액에 차등이 있다. • 공무원 등의 정년	국민연금법 57조 3항 국가공무원법 74조 1항, 외무 공무원법 22조,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 해난심판법 13조 4 항, 군인사법 8조 경찰공무원 법 24조
63세	• 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검찰총장, 대장(군인) 정년	법원조직법 45조, 검찰청법 41조, 군인사법 8조, 외무공무 원법 22조, 법원조직법 45조, 헌법재판소법 7조 감사원법 6 조, 외무공무원법 22조, 지방 공무원법 66조, 교육공무원법 47조
	• 생활보호대상자 • 노인복지의 대상자	생활보호법 3조 노인복지법 8, 9, 10, 13, 15, 16조
70세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년 • 70세이상의 형사피고인에게 는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 임,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 33조, 471조 1항, 군사법원법 514조 1항
75세	• 상속세의 인적공제한도(장 애자)	상속세법 11조 1항

청소년이 한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문 : 석재는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방과후 학교 앞에서 봉고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여학테이프를 파는 월부 장사에게 현혹되어 일본어 학습테이프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불입하기로 하고 월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샀다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학교 앞으로 가 보았지만 그 봉고차는 온데 간데 없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일간 고심끝에 테이프 회사의 주소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편지를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석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및 제146조).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곧 계약은 취소되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991. 12. 31 제정, 1995. 12. 15 개정)에 의하면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의 청약받은 때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종류, 상품 등의 판매가격,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청약의 철회와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 1통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동법 제5조, 제6조) 상품을 구매한 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조). 청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p.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석재와 그의 부모는 대금지급의 의무가 없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방문판매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도 고소취소할 법적 능력이 있나요?

문 : 희수는 17살의 여고생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미팅에서 알게된 남학생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희수는 그 강간범을 경찰서에 고소하여 강간범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희수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중 겁도 나고 수치심에 못이겨 고소를 취소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에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여 석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희수 부모님은 그 남학생을 응서할 수 없어 희수의 고소 취하 결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될까요?

답 : 고소라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제225조 제1항), 또한 고소권자는 자기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경우 17세의 미성년자인 딸이 한 고소 및 고소취소의 효력유무가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희수가 강간죄의 피해자이며 고소능력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적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pp.553~554)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법하게 고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회수의 고소 취소에 따른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회수가 스스로 이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권이 소멸되어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제232조 제2항),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정대리인(부모)에게 독립하여 고소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유의 고소권자인 딸이 고소를 취소하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독립대리권설)하므로 회수의 부모가 지금에 와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독립하여 고소하거나 딸을 시켜 다시 고소를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가요?

문 : 동욱이는 만으로 18살 입니다. 동욱이는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절도죄로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욱이 아버지는 형량이 너무 지나치다며 곧 바로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동욱이 생각엔 재판을 더 해 봤자 득도 안될 것 같고, 주변에서 자꾸 항소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줘서 그만 그 항소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욱이는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일까요?

답 :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동욱)가 항소의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동욱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욱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낼 수 없어 무효이므로, 동욱의 부모가 항소제기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 1774 판결).

참고로, 항소를 취하한 자 또는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54조).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 p.591)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옆집 아이가 우리집 채소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지요?

문 : 미란이 어머니는 빈터를 이용하여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어린이가 채소밭에 들어가 놀다가 채소밭을 엉망으로 망쳐버렸습니다. 미란이 어머니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이야기하여 보았지만, “아이가 한 짓이니까” 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까?

답 : 채소 밭을 망친 어린이의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라도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는 때는, 미성년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그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지능이 없을 때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식을 잘 감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 대신 유치원 선생님이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부모 대신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의 원장이나 선생님도 그 감독책임을 충분히 다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몇 살 정도되면, 자기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판단능력이 있는가?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을 할 능력(재산)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편이 유익합니다.

실제의 판례를 보면, 배상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37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위하여 아이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14세 2개월된 중학생의 책임능력을 부정한 예 : 대법원 78. 11. 28. 판결, 78다 1805 참조; 13세 6개월된 아이의 책임을 인정한 예 : 대법원 71. 4. 6 판결 71다 187 참조).

그런데 최근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부모는 부모대로 교육·감독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어린아이가 몇 살 정도인지가 문제입니다. 보통의 빈터와 달리, 깔끔하게 단장하고 채소를 심어 놓은 밭에 들어가 채소를 망쳐버리는 짓은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나이 어린 아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아이가 한 짓이니까”라고 말한다면, 감독자(부모) 책임을 추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를 계산하고 증명하는 것이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일인데 부모가 책임져야 하나요?

문 : 국민학교 4학년(10살)인 민호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이웃집 어린이와 부딪쳐 그 아이에게 발목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찾아와서 입원비와 위자료로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데 과연 민호의 부모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할까요?

답 : 법률이론으로 요약하면, 가해 어린이가 그 사고의 책임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책임이 없고, 반대로 그 어린이가 스스로의 책임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문에서 회답의 열쇠는 민호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9세까지 책임능력의 연령을 내린 예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이웃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혔다면 평소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의를 주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며, 또한 피해 어린이와 그 부모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하더라도 민호 부모님께서 치료비와 적당한 위로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연령이 10세라도 조숙한 사람은 12세 이상의 체력과 판단력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세 정도라면 아직 법적인 사리를 분별할 정도는 못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31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책임 능력의 기준을 12세, 13세 등 사건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판단을 하고 법의 정신은 형식적인 논리보다 항상 어느 한 쪽에 억울함이 없는 「공평의 원리」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의 부모는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가요?

문 : 고등학교 2학년인 수연이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를 상급생 여러명에게 평상시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연이의 치료비 등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답 : 「민법」 제755조는 법률행위 무능력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무능력자가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므로 사실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 등에 대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 474판결 : 1989. 1. 24. 선고, 87다카 2118판결 : 1992. 5. 22 선고, 91다 37690 판결)에서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발생손해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17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연이 경우에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
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문 :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됩니까?

답 : 가정법원의 소년담당 판사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세 미만의 사람, 즉 소년이 죄를 범한 때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치됩니다. 특히, 중한 죄를 지은 소년은 보통의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그 경우에도, 죄를 범한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무기형 이상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15년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 게다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단기 3년, 장기 5년”처럼 부정기의 형을 선고합니다.

단기형을 3분의 1만 마치고도 갇생의 기미가 명백히 보일 때는, 장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형사법원에서 소년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던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소년은 조사관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소년 조사관은 소년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여 소년의 자질·성품을 분석·연구하고, 가정법원 판사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듭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은 소년심판부(단독판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재판과 달라,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문제소년의 교육·반성·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화한 분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 1993년; p.414)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잘 조사한 다음, 일정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의 종류는 5가지인데, 어느 것이나 소년의 보호, 교육에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자(부모 등)에게 돌려 보내서 감호를 부탁하는 것에서부터,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보호관찰소에서 소년을 지도합니다), 감화원이나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혹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다(소년법 제32조).

보통의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이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든, 소년의 경우는 그것이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67조).

고등학생이 싸움을 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는데 나을 방법이 없나요?

문

문 : 15세인 인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무슨 일로 인해,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를 받고 곧 석방될 줄 알았더니 구속되어 나오지 못하고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년 분류심사원인가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잘못될까봐 인호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호는 어떻게 될까요?

답 : 위탁변경신청(구속된 소년의 처리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을 선도·교양하는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소년(소년 포함, 이하 같다)의 구속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구속된 소년을 조사한 경찰, 검찰에서 피의소년을 구속한 채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예도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은, 소년부판사의 가위탁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됩니다(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판사의 「가위탁 결정」에 의하여 소년을 수용하여, 수용된 소년의 심리검사, 환경조사 등을 하여 소년에 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기간은 아무리 길어야 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을 석방하는 길은 「위탁변경 결정」입니다. 당초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가위탁 결정(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결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p.415~41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정(같은 항 제1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위탁변경신청)을 합니다. 가정법원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이러한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나 그 보호자는 이러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위탁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변경을 할 것인지의 기준은,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의 기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탁변경 결정을 한 경우는, 형사재판의 보석보증금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수용장소 변경은 소년의 선도, 교화에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를 소년부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석과는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송치되어 분류심사원에 들어있는 소년에 대한 재판(심판이나 결정, 처분)은 송치일자를 기준으로 대략, 30일 전후하여 기일이 정하여 지고, 대개의 경우 첫 기일에 결정까지 고지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14세미만 12세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이러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한다)는,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경찰소장이 위와 같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과 함께 법원에 인계됩니다. 법원의 판사는 소년을 인수하여 분류심사원에 가위탁할 것인지 또는 그냥 보호자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년부 당직 판사가 판사실에서 소년을 직접 신문하여 결정합니다. 촉법소년을 경찰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 전국 소년 분류심사원 현황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	우 : 431-083	전화 : 51-2683-7
부산 소년분류심사원 : 부산시 강서구 대저 1동 1287-3	우 : 618-141	전화 : 971-8502-3
대구 소년분류심사원 : 대구시 동구 신암5동 1503	우 : 701-015	전화 : 952-9996-8
대전 소년분류심사원 : 대전시 동구 대성동 295	우 : 300-210	전화 : 283-9319
광주 소년분류심사원 : 광주시 서구 화정동 366-1	우 : 502-240	전화 : 375-2281-5

소년원에 갔다 오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문 : 나이 17세 된 범수는 얼마 전 옆반 애들이 시비거는 것을 참지 못해 자기반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패싸움을 했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되었었는데,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6호 처분이라는 것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일까요?

답 : 「형법」은 만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나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0조 제1항은 그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여 그 소년을 선도하게 하는 처분이고, 제5호는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며, 제6호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하는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 또는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 보다는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소년에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수가 받은 「1.6호 처분」은 부모에게 위탁함과 아울러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소년부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면서 매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등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안 지켰을 때라든가 기타의 사정변경이 있었을 때 법원은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 등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

* 이 사례는 서울지방법보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증보판)」(1986년; pp.480~481)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므로 법원이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지시하는 일에 잘 따르도록 선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
치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관찰이란 무엇이지요?

문 : 영호는 가정법원에서 무슨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처분에 의해 보호관찰소라는 곳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소는 어떤 곳일까요? 이제 영호는 감옥에 가는 것인가요?

답 : 보호관찰소는 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곳이므로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법」은 1987. 7.1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은 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람을 지도·원호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법 제1조).

보호관찰자의 대상자와 관찰기간

대 상 자 (법3조)	기 간
○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 -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	6 개월 2 년
○ 형사법원에서 -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소년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소년	1 년 유예 기간
○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 가퇴원된 소년 - 가석방된 소년	6개월 ~ 2년 남은 형기 동안

사회보호법에 따라 가출소된 사람은 3년간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p.417~42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보호관찰의 개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나 가석방(퇴원)된 때부터 관찰은 시작됩니다.

신 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등이 허가된 때부터 10일 안에 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도 계획 수립

소년이 관찰소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약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호관찰관은 소년과 그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각종의 심리검사도 합니다. 소년은 회고록을 작성합니다. 관찰관은 선도계획을 수립하고 소년을 위한 관찰카드를 작성합니다.

보호관찰의 실시

관찰관은 지도(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하고 원호와 응급구호를 합니다. 보호위원을 지정하여 소년의 선도를 그 위원에게 위탁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의 종료

종료 1개월 전에 소년은 “나의 결심”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후의 생활태도, 행동규범 등을 지도하고 종료식을 거행합니다(이 때는 소년 등과 그 보호자, 보호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호관찰은 문제소년을 보호, 지도, 교육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소년은 관찰소의 지도에 잘 따르도록 협력하기만 하면 되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 보호관찰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및 주소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보호관찰소	(02)216-485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2동 43-1 (130-092)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	(02)653-306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158-076)
인천보호관찰소	(032)764-1043-4	인천시 중구 사동 2-5(400-060)
수원보호관찰소	(0331)212-7766-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64 (400-190)
춘천보호관찰소	(0361)56-1052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26 (200-092)
춘천 강릉지소	(0931)41-5540	강릉시 옥천동 139-1
대전보호관찰소	(042)252-9180-3	대전직할시 중구 목동 11-2 (301-170)
청주보호관찰소	(0431)66-9001-2	충북 청주시 내덕동 651-1 (360-170)
대구보호관찰소	(053) 963-5801-4	대구직할시 동구 신서동 495 (701-300)
대구 경주지소	(0561)42-0070	경주시 노동동 181-1 (780-020)
대구 안동지소	(0571)3-2113	안동시 용상동 1594-10(760-010)
부산보호관찰소	(051)741-1440-2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1129-25 (612-050)
마산보호관찰소	(0551)41-1217	마산시 산호2동 316-4 (630-480)
마산 진주지소	(0591)53-6430	진주시 봉곡동 445-1 (660-040)
광주보호관찰소	(062)367-2031-3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834-1 (502-340)
광주 목포지소	(0631)77-2083	목포시 용해동 353-54 (530-380)
광주 순천지소	(0661)51-0566	순천시 동외동 166-44 (540-200)
전주보호관찰소	(0652)251-0516-7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3가 747-68 (560-220)
제주보호관찰소	(064) 99-3801	제주도 제주시 이동 2동 1782-8 (690-022)

〈대법원 판례〉

소년법에서 ‘소년’의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1. 사안의 개요

제1심은 피고인의 공소외인들과 합동하여, 1987. 1. 25. 22:40 경 서울 용산구 용산 2가 한신공영아파트 뒷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요치 14일의 복부좌상을 가하였다는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해당당시에는 미성년자이었으나 제1심판결시에는 성년이 되었다.

2. 원심판결 요지

원심판결은,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59조는 모두 행위당시의 표준으로 하여 형사책임 능력의 유무를 정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보는 것이라고 하겠고, 또한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있으므로 범인의 연령

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51조와 별도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러한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특성은 책임의 문제로서 행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므로,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에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당시에 소년이었던면 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하고 이어 다시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였다.

3. 검사의 상고이유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판결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그 해석상 당연하고, 판결선고시에는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행위시에 소년이었던 하여 소년으로서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의 법리오해이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 뿐만 아니라 심판종료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은 원심이 거시한 바와 같이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원심과 같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데서 나왔거나 위

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事實審 判決宣告時를 基準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5. 해 석

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위 규정은 종전의 소년법에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소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1989.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그 시행당시 심판중에 있는 이사건에도 적용되게 되었다(동법 부칙 제2조)

위 소년법은 제60조 제2항의 입법경위를 보면, 당초 법무부의 개정요강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長期와 短期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한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不定期刑이 형의 下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成人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長期刑만 法定刑의 범위를 준수하고 短期刑은 法定刑의 제한과 무관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은 不定期刑중 短期刑에 관하여 法定刑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罪刑法定主義 원칙에 배치되고 刑法 各則 條文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무부의 개정요강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므로, 미성년자라는 사유를 法律上 減輕事由로 규정하여 단기형의 1/4까지 處斷刑을 낮출 수 있는 少年減輕規定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의견에 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여진다.(대한변호사협회지, 1988. 3월호, 121면)

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59조의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등과 같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란 만 20세 미만자로서, 2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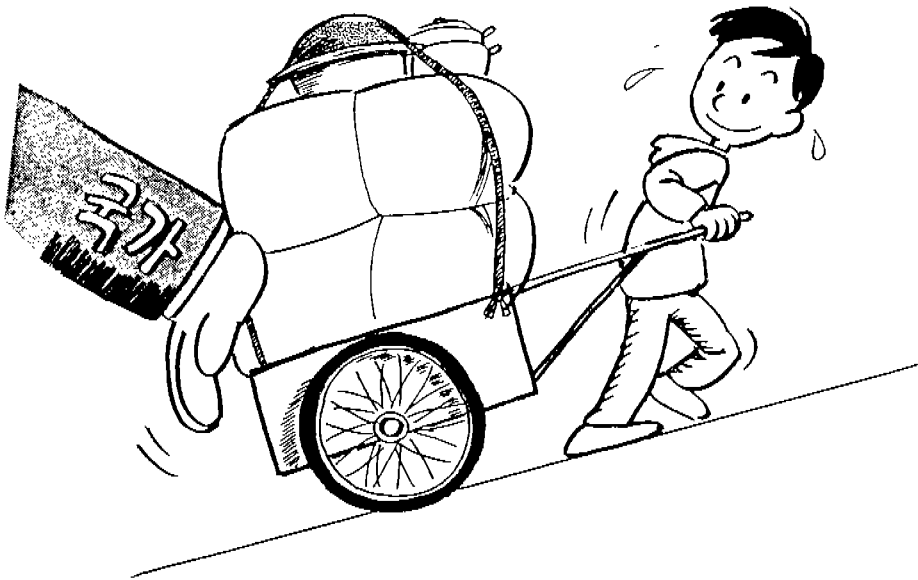
미만이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그 상태를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종료시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심판종료시란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및 일본의 통설이고 판례이며, (法院行政處發行, 法院實務提要, 243면, 438면:대법원 1966. 3. 3. 선고, 65도1229 전원합의제 판결:1963. 10. 10. 선고, 63도219판결: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日本最高裁判所事務總局發行), 개정 少年執務資料集 1, 72면, 75면),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保護處分の取消), 제7조 제2항(送檢), 제51조(移送)의 규정등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 판단은 審判時 즉 事實審 判決宣告時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것이다.

다. 그리고 소년법은 소년은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으로서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원심과 같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형법 제9조와 동일하게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데서 나왔거나 위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선고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판결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破棄한 대법원판결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V. 사회복지



생활 보호를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문 : 지호의 친척중에 몸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가족은 일찍 사망하였고, 그는 몸이 약하여 돈벌이를 할 수도 없어 혼자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호네나 다른 친척들도 여유가 없는 경제사정이라 친척의 힘으로는 돌보아 줄 수 없으므로 그 친척분이 생활보호를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자격과 지원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답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은 국가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친척 중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의 친족간 부양의무에 따라, 친족이 부양하는 것이 우선하고, 국가의 보호는 이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생활보호법 제4조).

본인의 노력, 부양의무자(친족)의 원조를 받아도, 여전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의 보호가 부여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생계보호 :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의복·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생활보호법 제8조).
- (2) 의료보호 : 진찰·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에 입원시켜 수용·간호하는 등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이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보호법).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속의 법률지식」(박동섭 저;1993년;pp.438~440)과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최옥현 편저,1992년;pp.296~31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 (3) 자활보호 : 자활에 필요한 자금·기구·자료의 지급·대여,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의 알선 등이다.
- (4) 교육보호 :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한다.
- (5) 해산보호 : 조산·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한다.
- (6) 장제보호 : 장제비용을 지급한다.

참고 : 생활보호 신청방법

관련근거 : 생활보호법 제18조 -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 • 신청서(별지)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법 제3조 제1항 제4호 해당자로서 거택 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봉급명세서(해당자)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신청인 :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

대상자요건 :

(1) 거택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그 주거에서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법정요건).

- ① 연령 65세 이상의 노약자
- ②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단, 중고등 학생일 경우 20세까지 인정)
- ③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무능력이 없는 자(다만, 폐질은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는 자, 심신장애는 1,2,3,4급의 장애자를 원칙으로 함)
- ④ 또는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2) 자활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

(3) 의료부조대상자(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특례기준

다음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각각 특례로 거택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할 수 있다.

호수	특 례 대 상 자	비 고
1-1	시·도지사는 탈 영세민화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별로 특별히추진하는 시범사업 결과 자립 자활의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생활이 향상되어 그 소득액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초과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연도말까지 계속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한다.	생보 1464 3172 (84.3.7) 참조

호수	특 례 대 상 자	비 고
2-1	가. 거택보호대상 국적취득 월남난민으로서 생계곤란자중 시장·군수가 거택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생보 1464-17171 (84.12.26) 참조
2-2	자활보호대상이나 가구주가 50세미만의 부녀자로서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자세대이거나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거택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2-3	군사상의 특별한 공로가 있으나 보훈대상이 안된자중 65세이상 또는 폐질·심신장애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시장·군수가 거택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2-4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중 부양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이 18세이상인 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될 경우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는 당해 아동의 연령이 20세가 될 때까지 그 가족을 계속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 실시	
2-5	대도시 영세민중 지방이주자로서 이주후 6개월간 거택보호(단, 85.1.1. 이후 이주자부터 시행하되 의료보호는 변경없이 2종으로 한다)	
2-6	자활보호 대상가구로서 남편이 질병 등 특수사정으로 부녀자가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임신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출산후 60일이내에서 거택보호	
2-7	기타 위 각 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해당하는 가루로서 시장·군수가 특히 거택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2-8	나. 자활보호대상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나. 구비서류 징구 : 다음 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징구하여 조사표에 첨부함

구비 서류명	거택보호	자활 의료부조	비 고
호적 등본	○	○	기책정자는 계속 사용 전세(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 확인서(별첨 3참조)
주민등록등본	○	○	
재산관계 서류	○	○	

다만, 필요시 장애자증명서, 건강진단서, 봉급확인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조사

(1) 소득조사

- ① 가구주 및 가구원중 수입이 있는 자의 월평균 소득액은 연간 소득액(조사기준일로부터 1년간)을 기초로 하고 연간 소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산정하여 월평균 소득액을 산출함.
 - ② 상시고용 또는 임시고용인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협조로 임금 또는 봉급대장이나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 기재하고, 봉급대장이나 명세서 사본 첨부
 - ③ 임대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시중은행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액을 산정함.
- ※ 자동차 등 고가품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운영경비 또는 소비실태를 역산하여 소득을 파악하여야 함.

(2) 재산조사

- ① 가옥 및 토지(전, 답, 임야, 기타) 자동차 등의 재산조사는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과 농지세부와 대장 및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각종 관계서류와 대조 확인하여 과세표준등급과 정부고시 가격에 의하여 재산액을 산정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현 시가를 고려할 수 있음

- ②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산정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함.
- ③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차용한 금액을 감액 조치토록 함.
- ④ 전호적지(본적지) 및 전거주지에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조회를 실시 하여야 함(별지서식).

부양의무자 확인

- (1)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의함.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예 : 조부모, 부모, 자손 및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친족간
 - － 4촌이내의 혈족
 - － 남편의 4촌이내의 혈족
 - － 처의 부모
- (2) 부양의무자 확인은 호적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원적지 제적등본을 요구할 수 있음.
- (3)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사망후 호적부 미정리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자 복명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동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적용함.

구비서류 징구

- 다음 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징구하여 조사표에 첨부함.

구비 서류명	거택보호	자활, 의료부조	비 고
호적등본	○	○	기책정자는 계속 사용 전세(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별지 서식)
주민등록등본	○	○	
재산관계 서류	○	○	

다만, 필요시 장애자 증명서, 건강진단서, 봉급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조사표 작성 및 서명날인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원, 지도원 및 동장은 조사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사표의 점검자란에 조사일자를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동장은 동 생활보호위원회(기존 동개발위원회 및 동새마을 추진위원회 등)를 소집하여 조사원에 의해 조사·보고된 조사결과와 의 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함.
- 동 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동 실정에 밝고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함.

조사자의 조사 및 면담내용

조사결과 결정적인 빈곤원인(생활보호대상자로의 원인)과 자활방향 또는 탈생활보호 대상으로 된 주요 사유를 기록하고, 기타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기재한다.

빈곤의 원인 및 자활방향

동 조사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불능자를 분류, 전국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자활가능자의 자활지원 소요 및 효과적인 자활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초조사표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의 저소득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방향이 무엇이고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조사되어야 함.

(1) 먼저 보호대상자의 세대를 단위로 하여 현재의 저소득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조사되어야 하는데, 현 생활보호대상가구내에서 추가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 수입이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가구의 자활여부를 판단

- (2) 현재 주수입원인 자나 또는 세대원이 법적으로건상 연령인 65세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령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자,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자, 기술 등을 보유하지 않은 부녀자 등인 때에는 그 가구가 정상적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 (3) 세대원이 많고 저소득이며, 앞으로 가구원이 보다 나은 여건의 취업이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3번으로 처리
- (4) 자활소요기간은 최대한 5년까지로 판단하여 그 이상 소요될 때에는 현재 자활 불능자로 처리
- (5) 자활가능성의 판단은 현 생활보호사업에 의한 자활지원 등 현재 지원하고 있거나 가능한 자활지원을 연계하여 판단
- (6) 7호나 11호의 기타난에는 자활조성을 위하여 요청되는 또는 희망하는 자활지원 내용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기재하며, 그 세대내에서 자생적으로(군제대, 수감자 퇴소 등)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 자활 가능할 때 그 내용도 기재

생업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가구에 대하여 융자일, 사업내용, 사후관리 점검 상태 등을 기록유지하며 직업훈련 입소자는 직업훈련과목, 자격증 취득여부, 취업상태 등을 기록함.

생계보호 및 자활지원사항

지원사항 난에는 생계보호(생계비 지원, 양곡 및 성금 등 지원), 자활보호(취로구호, 노임소득사업, 학비지원, 직업훈련비지원, 취업알선 등) 및 기타 지원사항을 지원일자를 명기하고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함.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인데 어떻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문 : 올해로 만 14살이 되는 민호네 부모님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민호는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안 형편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학교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직쟁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민호가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훈련소에 들어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줄까요?

답 : 생활보호법에 근거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직업훈련 기회가 있으니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은 후,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하십시오.

관련근거

-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처리기간 : 5일

지원대상자

- 생활보호 대상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하고 직업훈련 기관이 정한 입소 요건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6개월이상) 훈련이 가능하고, 책임감과 자립의지가 투철한 자
 - 재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 학부모와 면담을 거친 후 추천하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 이 사례는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최옥현 편지, 1992년; pp.329-34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유의하여야 한다.

- 추천서 학부모 동의서(별지 7호 서식) 첨부
- 미진학·미취업 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 이외)

구비서류

- 직업훈련지원신청(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각서(소정양식)
- 동의서(학생일 경우)

지원대상자 추천(동장)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신청
- 동장은 직업훈련지원 신청자를 공단훈련원, 공공훈련원, 구청장이 지정한 훈련기관에 추천하되,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 필요성 및 타당성, 수료후의 취업가능성 등을 직업훈련 추천조사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추천 여부 결정
- 동장은 직업훈련 추천시 생보자 직업훈련 추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한 후 추천서 발부하고 훈련생의 추천직후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직업훈련지원추천서 사본 송부)
 - 직업훈련 추천 직후 직업훈련 지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사본 구청에 송부
 - 생보자 훈련비 지급대장(별지 6호 서식)은 훈련원별 구분 작성
 - 재학생(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추천서 학부모 동의서(별지 7호 서식) 반드시 첨부

훈련생 관리

- 동장은 훈련생의 입소직후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훈련생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훈련생 인적사항, 훈련생에 대한 지원내역, 훈련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 훈련생을 관할하는 동장은 훈련생이 속한 세대가 타지역으로 전

출한 경우 반드시 훈련생 관리 카드를 제출지 읍·면·동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훈련생에게 훈련지원금 지급(금융기관 계좌입금)
- 동장은 지방노동청 등 취업알선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알선 및 자활지도를 한다.
- 동장은 훈련생이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와 면담후 퇴소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도 무단탈락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홍보강화
 - － 게시판 및 입간판 활용 홍보
 - － 반상회 통, 반장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

훈련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요령

(1) 지급기준

- 훈련준비금 : 20,000원(1인당)
- 훈련수당 : 20,000원(인/월)
- 훈련식비 : 30,000원(인/월)
- 가족생계비 : 30,000원(부양가족 1인당/월)
- 취업준비금 : 50,000원(1인당)

(2) 지급요령

생활보호대상자 훈련지원금은 훈련생이 속하는 기구를 관할하는 동장이 생보자 훈련비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고 훈련생이 거대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가) 훈련준비금 : 훈련생의 입소후 5일이내에 훈련기관의 장은 입소(등록) 사실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입소사실 확인후 동장을 통해 지급한다.

나) 훈련수당 및 훈련식비 : 매월말 기준으로 출석율(실출석일수 ÷ 소정의 출석일수) 8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되, 훈련개시월과 최종훈련월의 실출석일수가 해당월의 공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의 1

/2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분을, 1/2미만인 경우에는 반개월분을 지급한다.

- 생활보호대상 훈련생 수강료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훈련생 모집 요강에 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 훈련생은 지급받은 훈련수당과 훈련식비에서 수강료를 납부한다.
 - － 훈련수강료가 면제 또는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생활안정 차원에서 훈련지원금 지급기준에 의거 전액 지급한다.
 - －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훈련수당과 훈련식비를 지급한다.
-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명단, 월별 출석상황을 매월 구청장에게 익월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퇴소자 발생즉시(사전통보 없이 10일간 계속 무단 결석시 무단 중도퇴소자로 보고함)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기 보고자료를 훈련생의 관할 동장에게 송부하며 동장은 가정방문 및 상담에 의한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훈련생은 수강료 납부영수증(공단훈련원, 공공훈련원의 경우는 훈련 확인증 등)을 수강료 납부후 5일 이내에 동장에게 제출한다.
 - － 동장은 훈련생의 수강료 납부영수증 또는 훈련확인증과 훈련생의 월별 출석 현황을 확인한 후 훈련생에게 훈련수당과 훈련식비를 지급한다.

다) 가족생계비

- 지급배상
 1. 가구주가 훈련기관에 입소한 경우 훈련생의 가족수에 따라 생계비 지급
 2. 가구의 수입원이었던 자가 입소하여 잔여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자가 없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
 3. 1,2호 이외의 가구원인자가 장기훈련(12월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잔여가족 1인의 생계비 지급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시기
 - － 훈련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동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되, 그 지급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 － 훈련중 퇴소한 경우에도 퇴소일이 포함된 달의 가족생계비는 지급한다.

라) 취업준비금 :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훈련생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한다.

- － 훈련생은 수료후 5일 이내에 수료증 사본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훈련지원금 특별지원

-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훈련중인 훈련생에 대하여는 수료시까지 계속 훈련지원금을 지원한다(가족생계비는 제외).

바) 일반직업훈련생으로 입소한 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 동장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입소확인을 한 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 － 훈련준비금을 제외한 훈련수당, 훈련식비, 가족생계비, 취업준비금 등을 상기 지급요령에 준하여 지급한다.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학생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학비를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문 : 범수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범수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려 범수가 생활비를 벌어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범수는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다니고 싶습니다. 범수가 듣기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국가에서 학비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범수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 부모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중·고교의 수업료를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잘 읽은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십시오.

관련근거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지침(보건사회부, 1990. 8)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학비지원신청서(별지)
- 수업료 납입고지서
- 금융기관 계좌번호

* 이 사례는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최옥현 편저, 1992년; pp.347~35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1) 중학생

-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자
 - － 기술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중학교, 기술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단, 도서·벽지 지역 거주하는 의무교육 혜택자 제외

(2) 실업계 고등학교

- 지원대상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실업계)에 입학 또는 재학자
 - － 고등기술학교
 - －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실업계)

실업계 고등학교의 범위와 종류

실업계 고등학교라 함은 농림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실업, 종합의 고등학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농림업고등학교 : 농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2) 공업고등학교 : 공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3) 상업고등학교 : 상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4) 수산고등학교 : 수산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5) 해양고등학교 : 해양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6) 실업고등학교 : 농림계,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정계중 2개이상 학계의 학과가 혼합 설치된 학교와 가정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7) 종합고등학교 : 실업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와 보통과(인문과정)가 혼합된 학교(이중 실업계만 해당)

지원기준

(1) 중학생

구 분	지 원 액	대 상 학 년
생활보호대상자	전 액	전 학 년
의료부조대상자	전 액	전 학 년

(2) 실업계고등학교

구 분	지 원 액	대 상 학 년
생활보호대상자	수업료 전액	전 학 년
의료부조대상자	수업료 전액	전 학 년

학비지원 신청 및 처리

(1) 지원대상자(학부모 또는 시설장)

- 지원대상자(학부모 또는 시설장)는 학비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 수업료 납입고지서(영수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와 함께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납입고지서 제출

1분기에는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제출하고 2분기부터 4분기는 전분기의 납입영수증을 매분기 시작 30일전까지(2분기 5월 1일, 3분기 8월 1일, 4분기 11월 1일) 동에 제출한다. 단, 90년 4기분은 납입고지서를 4분기 수업료 납입기간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한다.

－ 금융기관 계좌번호 제출

학부모(또는 시설장)는 관할 거주지 동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우체국 등)의 계좌번호를 설정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수업료 납입고지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학교장

- 학교장은 동장으로부터 발급되는 접수증(학교제출용)에 의하여 해당 학생의 학비지원대상 여부를 각 학교에서 이미 사용 중인 수납대장에 표시하여 관리한다.
- 학교장은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학비 미납자 발생의 경우에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비지원 대상자에게 본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시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교육위원회 교육감

- 교육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력인정 여부와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하여 시·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 각 학교에서의 학비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지원대상자관리, 학적변동자 처리, 홍보 등)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학비지원을 위한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동 장

- 동장은 지원대상자(학부모 또는 시설장)로부터 제출받은 학비지원신청서(납입 금액 및 학생의 학적사항을 1분기의 경우 수업료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전분기 납입영수증에 의해 반드시 확인할 것)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접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 대상자 포함) 및 의료부조대상자 대장과 대조·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접수증(학교제출용)을 발급하여 해당학교에 제출토록 하며,
- 학비지원대상자명부(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계좌입금토록 한다.
- 동장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학비지원대상을 파악하여 학비를 지원한다.
- 동장은 학교장으로부터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학비지원 대상자 명부에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다.

- 동장은 학비지원대상자에게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시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

학비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학비지원대상자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학비지급을 중지한다.
- 학비지원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학비를 이미 지급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서 제외될 때에는 해당 분기까지만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새로 책정될 때에는 책정된 월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학비를 지원한 후 타용도에서 사용하는 등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학비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장이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자를 위한 국가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문 : 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장애자라서, 부모님은 철수가 어른이 되어서 직장을 가지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철수와 같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있는가요?

답 : 국가에서 의료급여나 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약제나 보장구(보장구, 장님용 흰지팡이, 보청기, 의지, 휠체어, 접필, 점판 등)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고, 보장구의 구입(또는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데,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그 외에 장애인 재활시설(지체부자유, 시각,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을 위한 것),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과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지도원이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치료·시설이용, 보장구 교부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상담과 지도를 담당합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0. 1. 13 공포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440)과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최옥현 편저;1992년, pp.359~36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되어 그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다는 직업 재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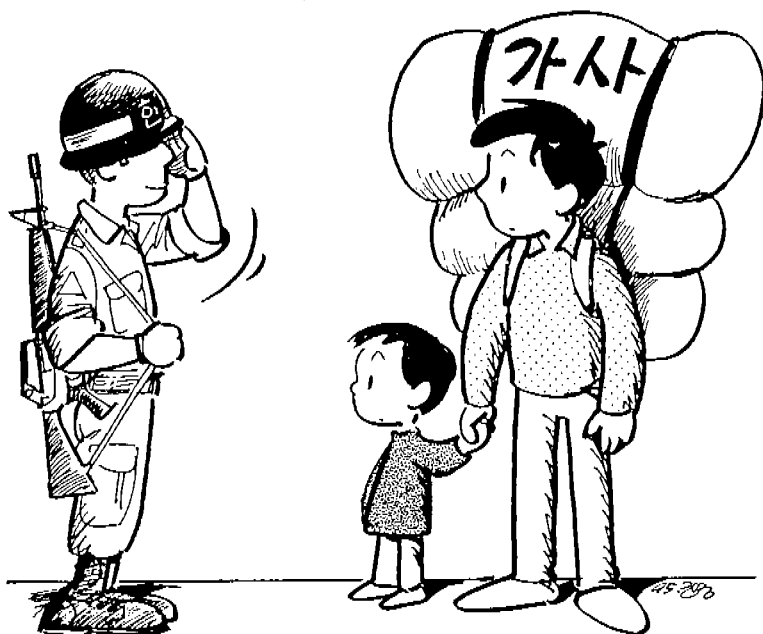
참고 : 심신 장애자 등록 방법

- o 관련 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 o 구비 서류 : 등록 및 수첩교부신청서(별지) (3×4cm사진 2매)
- o 등록대상자 :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 및 음성언어 기능장애, 정신박약
- o 등록 절차 : ① 장애자 및 보호자가 동사무소에서 심신장애자 등록 및 교부신청서를 기재하여 접수
- ② 동장은 심신장애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진단기관(지정법원)에 심신장애자 진단의뢰서(별지)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③ 장애자는 장애자 진단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귀가
- ④ 장애자 진단기관에서 3일이내에 심신장애 진단서를 해당 동에 송부
- ⑤ 심신장애진단서에 의해 심신장애자 등록수첩 발급하여 교부

등록 및 수첩교부 신청서 기재요령

- 사 진 : 1년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사진
이어야 하고, 심신장애자 수첩의 사진과 동일해야 함.
- 보 호 자 : 보호자는 부모,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장애자를 사
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됨.
 - － 교육수준 : 최종학력은 졸업이나 재학, 수료중인 경우 그
기간을 명시함.
 - － 생활정도 : 본인란은 법적 보호자가 없는 시설입소자는 기
입하지 않고, 장애자 본인이 독립 세대를 구성하거나 부
모내지 보호자 없는 18세 이상인 자만 기입함. 직업란 중
근로자란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용자를 말하며, 월소
득은 1년동안의 총 수입을 12개월로 나눈액임.
 - － 사회보장 :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직종
의료보험인지 여부를 기입하고 의료보호는 1종, 2종, 의
료부조 여부를 기입 산재보험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는
몇급인지를 기입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여부와 생활보호대
상자 여부를 기입함.
 - － 등록자 우대조치 : • 현재 시행되는 장애자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부여함.
(보장구 교부, 직업훈련 실시, 취업알선, 각종대회 참가)
• 향후 실시되는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함.
 - － 유의사항 : 만성적인 나환자, 정신질환자, 중풍 및 고혈압
으로 인한 장애는 제외

VI. 병역혜택



가정형편이 극빈한데 꼭 군대를 가야 하나요?

문 : 진호는 혼자서 병들어 누운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호에게도 징병검사통지서가 왔습니다. 진호가 없으면 진호의 동생이 돈을 벌어야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는데 아직 동생들은 14살,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진호도 군대에 들어가야 할까요?

답 : 병역법에 근거해 보충역 편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구체적인 문제를 상담하십시오.

관련근거 : 병역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98조, 99조

처리기간 : 징병검사 대상자 13일
입영대상자 4일

처리기관 : 접수 → 동, 구청 처리 → 지방병무청

대 상 자 : 징병검사 또는 현역법 입영대상자로서,

-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2)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 볼 가족이 없는 자
- (3)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된 독자, 2대 이상의 독자
- (4) 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의 1인

* 이 사례는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최육현 편저, 1992년; pp.228~23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 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출원절차

- (1) 전항 (1), (2)호의 사유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보충역 편입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은 입영일 5일전까지(징병검사 대상자는 징병검사일 14일전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을 거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2) 전항 (3), (4)호의 사유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을 거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출원서류 일람표

- (1)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출원서류 일람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o 구비서류

사 유 구비서류	생계유지 곤란	가사를 돌 볼가족이 없는 자	독자(2대, 부 사망, 60세 이상)	부 또는 형제중 전 사, 순직자나 전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	비 고
보충역 편 입 원 (현 역복무기 간)	○	○	○	○	
호적등본	○	○	○	○	호적이동이 없는 자는 독자사유 호 적확인표첨부
제적·등본			○	○	호적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	○			
진단서	○	○			질병, 심신장애로 노동력 상실자
전·공사장 확인서	○	○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발행
복무확인서	○	○	○	○	군복무증인자가 있 을 경우

- (2) 호적부의 멸실로 인하여 독자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읍○면○동에 본적이 있는 자 또는 성장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인근 부락에 거주하는자로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와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의호적 멸실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므로써 이에 갈음
- (3) 미수복 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원(독자사유)을 출원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호적부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미수복지구 관할 도지사의 사실 확인으로 이에 갈음
- (4)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구·시·읍·면의 장은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보충역 편입원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대장 등 관계서류와 시지조사에 의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전달
- (5) 군복무확인서는 본인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중대급이상의 부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6) 호적이동(입양, 파악, 분가, 이혼, 취적, 친생자부인, 일가창립 등)이 없는 독자는 독자사유 호적확인표 첨부 출원

처 리

- (1) 가사 사정에 의한 보충역 편입원을 출원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보충역에 편입
 - － 생계유지 곤란자 : 보충역 편입(소집 면제)
 - －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 : 보충역 편입(6개월 방위소집)

사고를 당했는데 군대 입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나요?

문 : 병철이는 지난주에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만 병철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상태로는 훈련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병철이가 입영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현역병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구체적인 문제를 상담하십시오.

관련근거

o 병역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처리기관 : 접수 → 동 경유 → 구 처리 → 지방병무청

입영기일연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다음 항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 입영기일 연기를 원하는 자는 입영일 5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 입영기일 연기원 출원

* 이 사례는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최옥현 편저, 1992년; pp.250~25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입영기일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연 기 사 유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	구 비 서 류
(병역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자	90일의 한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그 기간내에 입영계획이 없을 때에는 다음 입영계획 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다. - 그러나, 질병사유가 계속되어 그 병역을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변경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
(제2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또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자	30일의 한도 내에서 가사정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기간내 입영계획이 없을 때에는 다음 입영계획 일정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 다만, 계속하여 간호가 절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내(통산 60일)에서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구·시·읍·면 장의 사실확 인서

부모 병환이 심각한데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문 : 민철이는 지난주에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만 민철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철이는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서 얼마간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아버지 곁에서 간호하고 싶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민철이가 징병검사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병역법에 근거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본 후,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하십시오.

관련근거

- 병역법 제53조, 법시행령 제97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관 : 접수 → 동 처리 → 구

연기대상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서에 출석할 수 없는 자
- (2)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자
- (3) 천재, 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자

* 이 사례는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최옥현 편저, 1992년; pp.241-24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 (4) 각군 및 전투경찰모집에 응하여 수험기간 중에 있거나 합격하여 입영대기중에 있는자, 다만 귀향자 및 미입영자는 즉시 수검조치
- (5)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10일 이내에 출국할 자
- (6)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기말 시험 교내 주요행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처리절차

- (1) 징병검사 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일 5일전까지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
 - (2) 구·시·읍·면의 장은 징병검사 기일 연기원서를 접수처리하고 다시 검사기일을 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교부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검사일시 및 장소, 연기사유를 기재한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 (3)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 비 고 : 연기사유,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은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와 동일

고향을 떠나 있는데 거주지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문 : 성일이의 본적은 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일이는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을 한 성일이의 걱정은 징병검사통지서가 나오면 포항에 다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직장이고 요즘 직장일이 중요한 시기라서 중간에 지방에 다녀오기가 힘들니다. 성일이가 들기에 거주지 징병검사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지금 사는 곳인 서울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자기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은 후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하십시오.

관련근거

● 병역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처리기간 : 30일

처리기관 : 접수 → 동 처리 → 구

구비서류 : 거주지 징병검사 원서

출원대상 : 본적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

* 이 사례는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최옥현 편저, 1992년; pp.224~229)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제 한 자

- (1) 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지난 자
- (2) 학적변동자 등 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2월이내에 거주지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
- (3) 본적지와 거주지 징병검사 장소가 동일한 자 등 거주지 수검 실익이 없는 자

처리절차

- (1) 거주지 징병검사 원서는 거주지 구·시·군의 징병검사 개시 일 30일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 다만, 지방병무청별 상설 징병검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구·시·군에 거주하는 자 징병검사 개시전일까지 제출
 - (2) 본적지 징병검사 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즉시 제출하되 본적지 징병검사 통지서 첨부 제출
 - (3) 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거주지 징병검사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거주지 징병검사원 처리부에 등재하되 거주지 징병검사 제한사유가 있는 자는 본적지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 거주지 징병검사 제한사유 유무
 - 본적 및 주소가 주민등록과 일치 여부
 - 적령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검사 사유를 거주지 징병검사원서 15란에 기재
- ※ 졸업예정, 학적변동, 행불자, 수검 등
- (4) 동장은 거주지 징병검사원서를 즉시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보고
 - (5)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자로서 거주지 수검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생 입영원서를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토록 안내
 - (6)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은 본적지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거주지 징병검사 대상자 명부 4부를 작성하고 그중 3부를 구·시·군 징병검사 개시 25일전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 (7) 거주지 질병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당해 읍·면·동
질병검사 일자에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인원이 많을 때에는
당해 구·시·군 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일
을 정하여 그 기일 20일전까지 거주지 질병검사 통지서 교
부

VII. 근로의 권리



잔업을 강제로 시키면 거부할 수 있나요?

문 : 찬우는 종업원 5명뿐인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주인은 매일같이 잔업을 강제로 시킵니다. 찬우가 가끔 볼 일이 있어서, 잔업을 하기 싫다고 하면, 주인은 몹시 언짢은 표정을 보입니다. 잔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답 : 노·사간에 협정이 있어야 잔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잔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소 단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문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주인(사용자)사이에 협정을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이를 규정). 종업원의 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이러한 협정과 인가없이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찬우의 경우, 이와 같은 협정이 없으면, 찬우는 당연히 잔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무시간 연장 협정이 있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무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협정을 반드시 체결할 의무는 없고, 체결하든지 말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노동조합도, 이 권리를 이용하여,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 요구관철의 수단으로 협정체결을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잔업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로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 협정체결 거부이유

* 이 사례는 정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 1993년;p.30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가 당면요구 관철의 수단일 때, ‘쟁의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의 근로시간 원칙(1일 8시간)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고, 시간외 근무를 할까 말까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게다가 노동조합과 협정을 한 바 없이 잔업 등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연장협정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러한 협정체결을 거부한 것을, “쟁의행위”라고 보는 것은無理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없이 도급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 : 성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작은 부품공장에서 9년간 일했는데, 얼마전에 공장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공장주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장은 일을 도급으로 맡겨 성과금을 지급했고, 단지 직공들의 편의를 위해 옛날부터 해 오던 방법대로 작업장과 일부 장비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 직공들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호는 출퇴근도 거의 일정한 시간에 했으며, 출근후 공장장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그의 지시하에 일했습니다. 또한 사장은 3년 전부터 산재보험에도 가입하고, 갑종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다만 작업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업도중 공장장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작업시간도 내 스스로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성호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는지요.

답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무이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시권을 행사하느냐 않느냐,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받느냐, 성과금을 받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의 조절 등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할지라도 출퇴근시간이 대체로 일정했고, 공장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가며 일했으며, 갑종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증보판)」(1986년 ; pp.317~31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었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부는 사용자의 지시권행사, 노무 관리규정, 취업규칙, 산재보험가입, 갑근세의 원천징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이와 같은 실질적 근로관계가 부인되거나 배척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종업원이 16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일했으므로 퇴직금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정식채용전 시용기간 중에 해고 당했는데 어찌지요?

문 : 영아는 여상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한지 2개월 27일만에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할 때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했으므로, 시용기간 중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아는 입사할 때 시용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는바, 영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 : 시용기간은 입사한 근로자를 당장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후 정식 채용할 것을 전제로 직업능력과 기업에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마련된 수습(견습)기간과 구별됩니다.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일정한 수준의 직업적 적성만 있으면 시용기간 후 정식 채용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임시고용근로자와도 다릅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채용되지 않고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수습기간과 별도로 시용기간을 설정한 취지로 보아 시용기간

* 이 사례는 서울지방법원민사1부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증보판)」(1986년;pp.309~31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엄격히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당시 아예 시용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로서 당연무효가 될 것입니다.

설사 시용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치 않은 것이라면, 그 해고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역시 무효라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2달도 안되 해고당했는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문 :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 사무직원으로 고용되어 월급으로 55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1991년 3월 24일부터 일했는데, 1991년 5월 11일자로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고를 당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상시근로자가 11명인데, 준호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긴 했어도, 해고 수당만은 지급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답 : 해고를 하려면 미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준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소송을 하든지, 30일분 이상의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자의 뜻에 반하여 들연 해고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 사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고를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는.

-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
-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사람
-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안된 사람
- ④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사람
- ⑤ 수습 중의 근로자 등 입니다.

그러나 ①의 일용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하고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p.27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있든지, ②·④의 근로자라도 2월이나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
되기에 이른 사람, ⑤의 수습기간이 끝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
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호의 경우에는 월급근로자로서 근무한 지 6월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
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여자에게도 남자처럼 심야작업을 시킬 수 있는가요?

문 : 연희는 만20세의 여자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연희에게 다른 남자직원들 처럼 3교대 근무를 하여 줄 수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3교대로 하면, 심야작업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럴때 연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 : 여자에게 심야작업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연희는 심야작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은, 여자와 18세 미만의 사람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야간근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동의하든 거부하든 그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여자의 심야근무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병원종업원, 여관이나 음식점종업원(만 18세이상만 가능), 전화교환원, 비행기승무원(스튜어디스), 여자기숙사의 관리인, 여자영화배우, 영화촬영시의 기록원(스크립터), 동원된 엑스트라, 방송국의 프로듀서나 아나운서 등입니다.

그러면 휴일근무는 어떠한가요?

여자는 야간근무 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에도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여자근로자에게 휴일근무를 시키려면, 야간근무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일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30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넘는 시간의 근무를 시키지 못합니다.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1주일에 60시간의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1주일 최장 54시간이 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사람(남녀불문)은 휴일근무에 종사시킬 수 없고, 그들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1주일 최장 48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보일러의 분화작업·용접·제(개)조·수선작업, 기중기운전업무, 권양능력(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힘) 2톤 이상의 가이데릭크나 높이 15m 이상의 콘크리트용 승강기의 조성·이동 등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또 여자근로자에게는 고압전선로 등 취급업무, 지름 25cm이상의 환거반(돌아가는 판) 등으로 목재송급을 하는 일,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이나, 깊이 5m이상의 땅굴 안에서 하는 일, 통나무발판을 조성·해체하는 일, 착암기·빈타기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현저히 진동을 주는 일, 단속작업에서는 30kg이상, 계속작업에서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 따위, 요컨대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직장을 더 다닐 수 없을까요?**

문 : 정아는 컴퓨터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입사 당시 “결혼하는 때는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정아에게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여도 맞벌이를 하고 싶은데, 퇴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답 : 결혼퇴직제도는 법률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당신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여자에 대한 차별대우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퇴직제나 조기정년제와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법적인 차별대우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87. 12. 4.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1989년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이나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6-8조).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결혼퇴직제를 승인하고, 다수의 여자근로자가 찬성하여 퇴직한 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퇴직제도는 현행법에 위반됩니다. 해고당한 여자직원 자신이,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각서를 써서 입사 당시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각서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정아는, 질문에서, 결혼시는 퇴직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지;1993년;pp.311-31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하는데, 그와 같은 서약서는 헌법·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맞벌이를 하며 근무하고 싶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서약서는 무효임을 주장하여 버티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 : 결혼하면 노동 능률이 저하된다는 사회적 편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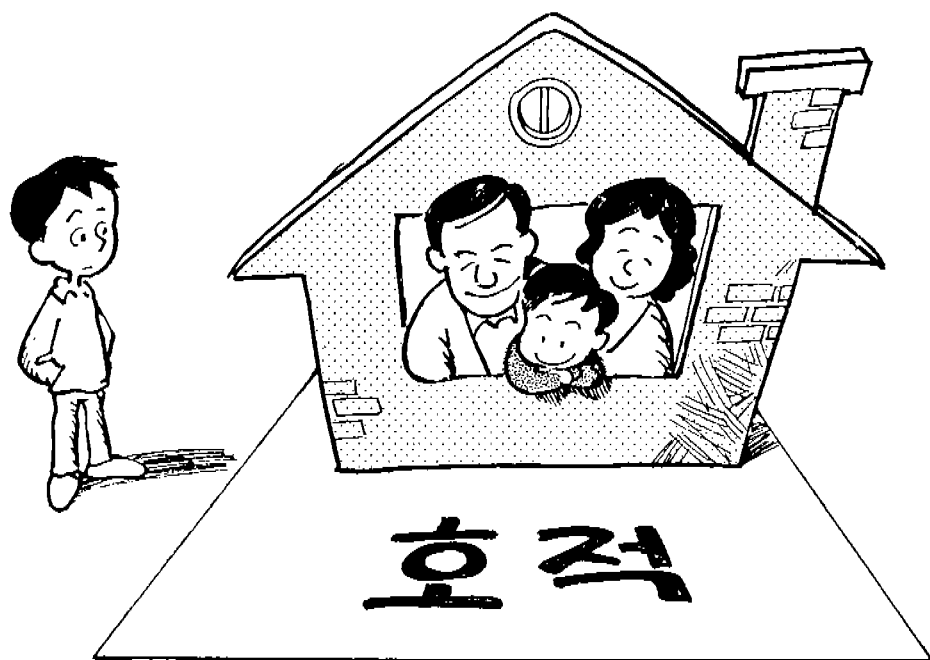
여자가 결혼하면 근로능률이 저하된다는 생각은 ‘여자근로자는 일반적·평균적으로 능률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편견에 기인합니다. 여자근로자들은 그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스스로 비난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면한 여자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기 위하여 1일 2회, 각 30분이상)의 휴업청구권(근로기준법 제61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쪽에서도, 기혼여자 근로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어느 정도의 비능률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자근로자가 결혼하였기 때문에 노동능률이 저하되었다면, 사용자 측에서 그 능력저하의 원인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 오로지 여자근로자 측만의 이유(예컨대, 현저한 태만 등)로 생긴 것이라면, 취업 규칙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조치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여자가 결혼하면, 능률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편견은 앞으로 배제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일의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여자 특유의 생리현상시에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여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VIII. 가족 생활과 호적



이름이 마음에 안드는데 고칠 수 있나요?

문 : 저는 군복무를 마친 24세의 미혼남자로서 제 이름은 「최무식」입니다. 호적상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명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이름을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 : 출생후 24년동안 사용하여 오던 이름을 고치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호적법상 이름을 고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은 판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 허가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법으로 허가의 요건을 따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대체적인 개명사유를 예시해 보면,

- ① 같은 호적내에 성명이 같은 자가 있을 때
- ② 괴상한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③ 귀화한 외국인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고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무식」이란 이름은 어감이 좋지 않아 누구든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무식」이란 이름을 고치려고 개명허가 신청을 관할법원에 냈을 때, 반드시 담당판사가 개명허가를 하여 주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이름을 지금 고칠 경우에 각급 학적부, 병적부 등 기존의 여러가지 공문서를 고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따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p.277~27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를 것입니다.

비용은 개명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 200원에 송달료 900원이 소요되니 개명의 필요성을 잘 적어서 일단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도록 하십시오.

만약 개명허가를 얻지 못하면, 호적상 이름을 그대로 두시고 사회생활상 통용하는 이름만 고쳐서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호적에 나이가 잘못 되어 있는데 고칠 수 있나요 ?

문 : 연경이는 1973년에 출생하였는데 호적부엔 1974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길은 없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답 :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호적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무관심하여 잘못 등재하게 하거나 호적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실제의 출생날짜와 다르게 기재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과 맞게 호적의 기재틀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본적지의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령정정 허가신청을 한 것을 보면 정년이 다 되어 몇년 더 근무하려고 한다든지, 아이를 빨리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아이의 연령을 1살 많게 신고하거나 호적정정까지 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이 틀린다고 또다시 고쳐 달라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몇살이나 하는 것은 법률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연령정정이 더 어렵습니다. 요컨대, 사실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호적기재라면 옳게 정정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신청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 1993년; p.11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이중호적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요?

문 : 본인의 현재 이름은 「홍병철」로서 3살때 미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 77년도 일가창립 하였으며, 결혼하여 혼인신고와 아들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부모를 찾아 상봉하였습니다. 부모님의 호적을 확인하여 보니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며, 제 호적에는 본인이 60년 3월 23일생 홍병철로 등재되어 군복무까지 필하였으나 부모님의 호적에는 「홍성대」, 군 미필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부친의 호적에 입적하고 이전의 가호적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정정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병철씨는 생부모의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가진 유적자인데 세살때에 미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자라 1977년도에 일가창립에 의한 호적편제가 된 후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이 낳아 출생신고를 하였는 바,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정정하고 싶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일가창립에 의한 호적이 편제된 경우로서는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첫째, 기아발견 조서에 의하여 호적이 편제된 경우와, 둘째, 취적을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이 편제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으로서는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부모님의 기재에 대하여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만일 기아조서에 의하여 호적이 편제된 경우라면 부 또는 모가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pp.279~28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기아를 찾아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 발견조서에 의하여 일가창립된 호적등본을 첨부하고 출생신고서 “7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호적법 제 5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의 기재를 하여 신고를 하고 기아의 본적지 시·군·읍·면의 장에게 호적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호적정정(말소) 신청을 하면 기아의 호적이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은 기아를 찾은 때와도 다르고 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하였다 하므로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이중호적말소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적 말소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신청취지」라는 것을 명백히 기재해야 하는데 신청취지에는 ① 병철씨를 호주로 하여 편제된 호적 중 이름 “병철”을 “성대”로 (부모난으로 기재가 상이할 때에는 친생부모의 호적대로 정정을 하여야 함) 각 정정한 후 그 일가창립 편제된 호적 전부를 말소하고, ② 동 말소된 호적에 기하여 혼인사유를 전호적 (부친의 호적중 홍성대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이기하고, ③ 위 말소된 호적에 기하여 병철씨 처를 부친이 호주와의 관계를 “자”로 하고, 아들은 호주와의 관계를 “손”으로 하여 병철씨 부친이 호주로 된 호적에 각 이기이직하고, ④ 처가 호적중 처의 제적된 호적기재중 입적 또는 신호적난의 “...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번지(신호적 가정) 호주 홍○○의 자부”로 신분사항란의 혼인제적 사유중 “홍병철”을 “홍성대”로 각 정정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고, 다음에 신청원인은 사실대로 기재하여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관할법원(부친의 호적이 있는 곳이나 나중의 일가창립 편제된 곳의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출하여 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전후의 호적이 있는 각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나중의 호적은 모두 말소가 되고 그 말소된 호적에 있던 병철씨 처자는 부친의 호적으로 입적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서류로서는 전후의 호적등본 각 1통, 처가호적 등본 1통, 병철씨와 그의 부친의 주민

등록표등본 각 1통이 필요하고 병철씨의 전후 호적상의 기재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으로는 부친과 그의 가족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또는 진술서)와 두명의 이웃사람에게 인우인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호적초본 첨부) 1통을 받고, 기타 소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인지는 600원입니다.

고아라서 호적도 주민등록도 없는데 호적을 어떻게 만들지요?

문 : 기호는 19세가 된 지금까지 고아로 교아원을 전전하면서 구두땀이, 품팔이 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호는 남들처럼 내년에 군에도 가고 싶은데 호적이 없어서 그것도 뜻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아의 설움을 더 느꼈습니다. 기호는 군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자기호적을 만들어 자기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기호가 호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가정법원에 취적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호는 본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주소지로 하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양식은 “본인의 본적을 ○○시 ○○구 ○○동 ○○번지로 정하고 또 신청인을 호주로 하여 별지 신분표기제와 같이 취적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바람”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기호가 그동안 살아온 경로와 호적을 갖지 못한 사유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신분표 양식은 호적부 중에 원적, 본적란은 공란인데 본적란을 원하는 곳으로 기입하고 기호의 부모란도 자세하지 않으면 부 성명미상, 모 성명 미상이라고 하고 기호의 성과 본은 알고 있는 대로 기입합니다.

또 더 필요한 서류는 기호가 살고 있는 구청에 가서 「무적증명서」 1통(수수료 350원), 그리고 동장에게 가서 「주민등록 신고확인서」 1통(수수료 350원)을 발급받고 또 기호가 무적자인 사실을 보증인 2인에게서 확인받은 인우보증서 1통(그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첨부)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런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기호가 살고 있는 곳의 경찰서장과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248~25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기호의 인적사항(호적이 있는지 기타 신원확인)에 관한 사실탐지를 촉탁한다. 그러면 촉탁의 회보를 받은 후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취적을 허가합니다.

**친아버지를 찾아서 그 호적에 입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 현오는 20세된 학생입니다. 현오 어머니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머니는 모 대학 독문과를 다녔고 아버지 역시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현오 부모님은 사귀다가 결혼을 전제로 깊은 관계까지 맺었으나 아버지 가문에 불행한 일이 닥쳐 임신 2개월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득이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후 어머니는 임신중의 몸으로 다른 남자를 알게되어 그 남자의 이해와 설득으로 그 남자와 결혼하여 나를 낳았으며, 아버지는 그 후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등 나의 부모님의 인생은 파란만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오는 자연히 어머니와 결혼한 남자의 호적에 입적하여 아버지 아닌 아버지의 자식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오의 호적상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사망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친정집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현오는 자연히 사실상의 아버지 아닌 아버지 호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답 : 현오를 길러 주고 교육시켜준 고인이 된 호적상의 아버지에게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나 사람이 자기의 핏줄을 찾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오가 지금의 호적으로부터 빠져 친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려면 우선 생모 상대로 현오의 생모와 고인이 된 아버지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라는 「친생관계부존 재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심판정본으로 지금의 호적에서 제척한 후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증보판)」(1986년; pp.247~24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친아버지의 호적에 20년 전으로 소급하여 나이대로 입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적이 없는 사생아인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문 :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아로 출생을 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 현재 호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적 효력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혼도 이혼의 합의나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 제적이 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들이 결혼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사생아가 되는 것이며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혼인을 함으로써 귀하는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무적자도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할 수가 있고, 신고로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은 즉시 발생 하지만 호적이 없기 때문에 「특종 신고서류편철장」에 이를 기재해 두었다가 나중에 무적자가 출생신고에 의한 일가창립이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심판청구를 하여 재판으로 인지를 받는 등 호적을 취득한 후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p.27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참고 : 일가창립

자가 부모의 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일가를 창립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일가창립한 뒤에 부를 알게 되면 부가에, 부를 모른 채 알게 된 때에는 모가에 입적한다(민 781 ③).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 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782 ②)입양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양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본가에 본적하여야 할 때의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경우(786 ②),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존속의 혼인의 취소·이혼 또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때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복적할 수 없는 경우(787②)등에서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일가창립을 한 자는 신고함으로써(호 15·16)호주가 된다(민 778.)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한국까지 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문 : 기수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온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정비사로 일해 온 기수씨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주인에게 인정 받아 현재는 약 50명의 직공이 있는 공장의 부공장장으로 있습니다. 기수가 처음 이 공장에 왔을 때에는 약 30명의 직공이 있었는데 미국사람 특유의 습성인지는 몰라도 8시간 노동이 철저하여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만 되면 일하다가도 모두 퇴근하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고 공장은 불결하고 여러가지가 조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기수씨는 남보다 두 시간 이른 아침 7시에 출근하여 화장실을 비롯한 공장전체를 깨끗히 청소해서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면 바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저녁에는 다른사람들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퇴근하면서 어지러진 공장 내부를 잘 정돈하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비롯한 공장 사람들이 기수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니 지금은 모두들 기수씨를 좋아하며 기수씨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기수씨는 주인이나 공장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취업한 지 7년 만에 더욱이나 한국사람의 신분으로 부공장장으로까지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수씨는 이제 미국에 와서 자리도 잡히고 해서 이제는 결혼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 몇달 전 우연한 기회에 친척집에 놀러온 한국 여성을 알게되어 이곳 한인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수씨의 본적은 전북 김제로 부모형제가 지금도 김제에서 살고 있으며, 기수씨의 호적도 김제에 있습니다. 기수씨가 혼인신고를 하려면 기수씨는 이곳 직장을 떠날 수 없을 뿐더러 한국까지의 왕복여비만도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씨가 한국까지 나가지 않고 혼인신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 기수씨와 같은 부지런한 한국사람이 있어 단시일 내에 부공장장까지 진급한데 대하여 같은 국민으로서 찬사를 보내며 더욱이 국위를 선양한 기수씨의 노력은 우리 다 같이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수씨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사람은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공사관, 영사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대·공·영사가 본국의 본적지에 신고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위하여 한국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수씨의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장차 자식을 낳아 출생신고할 시에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사, 공사, 영사에게 신고하면 한국의 본적지로 보내주게 되어 있으므로, 그점 염려마시고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시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혼인신고 안내

처리기관 : 신랑의 주소지 구청 또는 본적지 시, 구, 읍, 면

구비서류 : 장남 - 혼인신고서 3매, 신부 호적초본 1통

장남이 아닌 경우 : 혼인신고서 4매, 신부 호적등본 1통

유의사항

- ① 동성동본은 혼인할 수 없다(단, 김해김씨와 강릉최씨는 종친회에서 동일직계 혈족이 아니라는 증명을 첨부하면 가능)
※ 1987년 12월 19일부터 특례법에 의함
- ② 혼인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남·여 20세 미만일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장남이 아닌 자는 신고서 “신본적”란에 분가할 장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pp.117~119)과 한림원에서 발간한 「동사무소 민원 이렇게 처리됩니다」(최육현 편저, 1992년;p.77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 ④ 여자가 6월 내에 재혼할 경우에는 임신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⑤ 여자가 혼가로부터 재혼할 경우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친가의 본적, 호주성명 및 관계를 기재하고 친가 제적초본 1통을 첨부한다.
- ⑥ 외국에서 혼인했을 경우에는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 신고하거나 본적지 구청에 신고하면 이때에는 결혼증명서의 원본 및 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문 간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 왔는데 어떻게 양자로 삼지요 ?

문 : 몇일 전에 명신이네는 집 앞에서 낳은지 얼마 안되는 갓난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들어 왔는데 몇일 지나고 보니 정도 들고 하여 명신이네 가족은 이왕이면 이 아기를 양자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질문의 경우 명신이 가족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로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아의 호적을 만들어 놓은 다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호적법」 제57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를 발견한 자나 그 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년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년월일시 등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출생신고로 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일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기아의 호적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으므로 시·읍·면의 장은 이 사실을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단체에 통고하게 되면 아동복지단체에서 적당한 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수용토록 하며 그 시설의 장이 친권을 대행하게 됩니다.

만일 기아를 발견한 때 호적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자라나게 되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p.327~32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면 커서 무적자가 되므로 따로 호적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적신고를 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15세 미만의 기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친권대행자로서 입양의 승낙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기아를 발견한 귀하는 우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여 이상의 절차를 밟아서 취적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양자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동성동본은 정말 결혼할 수 없나요?

문 : 기철씨는 21세된 남자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경남 함천에서 3년전 서울에 올라와 친구의 소개로 남대문시장내 잡화상에 점원으로 취직하여 한달 10만원씩 시골에 보내고 밤에는 야간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하여 저녁 7시에 가게가 끝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 야간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에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또 아침에 가게에 나가는 단순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작년 봄부터 역시 시골에서 올라와 미장원 조수로 일하는 은영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어느사이에 사랑을 하게 되었고 작년 가을부터는 아예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철씨는 은영씨와 결혼할 생각으로 시골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져 은영씨의 호적을 떼어본 바 자신과 같은 김해김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민대학 강좌에서 둘은 바에 의하면,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는지요.

답 : 법률에는 「동성동본」이 결혼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성동본 혈족」사이에는 결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혈족이 아닌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기철씨의 경우 김해김씨라고 하였는데, 김해김씨에는 경순왕계의 김해김씨와 수로왕계의 김해김씨가 있는 바, 경순왕계의 김해김씨와 수로왕계 김해김씨는 혈족이 아니므로 두 김씨간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 처녀의 김해김씨가 기철씨의 김해김씨가 같은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115~11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조상의 김해김씨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족보를 조사하여 보든가 양가의 친족회 같은데 찾아가서 조사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조상이 다른 김해김씨라면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 할 수 없는 것이나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라도 아이는 귀하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키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음으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법적 결혼을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헤어지는 경우에도 자식은 남자의 자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기철씨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서자)」로 입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여자측에서 자식을 원하고 남자가 이를 이해한다면 여자의 혼인외의 자로 여자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철씨의 경우 비극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와 같은 비극을 극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임을 명심하시고 희망을 걸고 살기를 바랍니다.

딸만 셋인 집에서 딸도 호주로 대를 이을 수 있나요?

문 : 정아의 아버지는 2대 독자이십니다. 문제는 정아네는 딸만 셋이라는 겁니다. 아들로 대를 잇는 남계 혈통사상이 뿌리깊이 내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호주제도가 존속하는 한 정아네 집안과 같이 딸만 셋을 낳고 그만 둘수 있습니까? 딸만 낳은 죄인인 정아 어머니는 난처한 태도만 취하시고 정아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도 되니 그만 낳자고 하시는데 정아네 할아버지께서 외아들 손에 대를 끊자는 것이냐면서 노발대발 하십니다. 따라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부모님은 우울한 나날을 보내시고 정아네는 초상집 같습니다.

아들은 꼭 낳아야 하고 대는 반드시 이어야 되는 것인지요. 무슨 해결책은 없습니까?

답 : 남계혈통주의 사상은 우리 역사 5,000년의 전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 함은 남자를 가리키는 명칭이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시집와서 아무리 훌륭한 딸을 낳았다 할지라도 딸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낳았다고 하지 않았으며, 아들 못낳은 여자는 자식을 못낳는 것으로 규정지어 「칠거지악」이라고 하여 죄인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이것을 남계혈통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관념이 남아선호사상의 근간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아들을 낳기 위하여 많은 비극을 겪어 왔으며 자기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남의 아들을 입양하여 대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1960. 1. 1 지금의 민법을 제정할 당시 이러한 비극을 없애기 위하여 아들이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119~121)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없는 집안에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 입부혼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과거에는 보통 아들이 대를 잇는 경우에는 장남, 차남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아무리 차남이 잘 생기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호주상속권은 장남의 절대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므로 대를 차남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철칙이었으나 현재는 아들없이 딸이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장녀, 차녀의 순서없이 장녀를 시집보내고 차녀에게 호주상속을 시킬 수도 있고, 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아버지와 마음이 맞는 딸로 하여금 종가상속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영국왕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도 남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를 계승할 당시에는 영국 왕실에는 왕위를 계승할 남자가 없었으므로 부득이 여자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된 것입니다.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는 결혼하였으나 그 왕가를 떠날 수 없으므로 필립이라는 해군장교를 부군으로 맞아들였으며 그 사이에는 두 황태자가 생겼고 찰스황태자는 다이아나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음으로서 이제 영국 왕실은 여왕인 엘리자베스가 서거하더라도 남자 왕위계승권자가 줄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입부혼인제도」입니다.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호적에 입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바, 입부혼인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여호와 결혼한 남자는 여자 호적에 입적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호주인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는 차원이 아니고 호주의 성을 따르는 것이니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그 출생자가 박씨인 아버지성을 따른다면 어머니가 김씨인 김씨 집안의 손이 박씨가 된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김씨 문중이 그후부터는 박씨문중으로 변한다는 이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아네 집안의 경우 딸 셋 중 아버지와 마음이 맞는 딸이 호주상속인이 되어 종가를 상속하여 입부혼인을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눈 자식인데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라

고 하여 혈통을 잇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았을 경우 여호주인 어머니 성을 따르는 점을 남자(아버지)가 이해하여야 된다는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 시대 이므로 어찌피 결혼하면 강제분가되는 차남 이하라면 아들없는 여호주 집에 입부혼인하여 그 집 대를 이어주는 것도 영예스러운 일 이라고 생각되며 자식이 반드시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된다는 이유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호주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남계혈통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그 때가 올 때까지 입부혼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나라에서 추진하는 가족계획에도 기여하고 아들없는 설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몇살에 자기 몸대로 결혼할 수 있나요?

문 : 19살인 영애는 금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촌이 경영하는 토건회사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석달 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를 사귀다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영애 보고 결혼을 하자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라고 합니다. 영애는 몸까지 허락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만약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집에서 쫓겨나고 말 것 입니다. 영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결혼도 안한 남자 그것도 사귀지 3개월 밖에 안된 남자에게 몸까지 허락한 영애의 처사는 경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였다가는 장차 그 남자에게는 물론 어느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여자는 특히 자신을 소중히 간직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률은 여자가 만 16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으나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세인 영애가 결혼하자면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약 영애의 부모님이 영애가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말대로 집에서 쫓겨나든가 아니면 더 큰 가정불화가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기회를 보다가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만 20세가 된 후에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되 결혼은 일생의 중대사이니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여자의 몸으로 그 남자에게 몸까지 허락하였으니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실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결혼은 하지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p.106~10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마시고 장래성이 있고 자신의 장래를 맡겨도 손색이 없는 믿을 수 있는 남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 결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그 때 가서 부모님의 생각과 영애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년(만20세)이 된 이후에 영애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들을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요?

문 : 종대는 하기싫은 공부를 부모가 억지로 시켜 대학까지 졸업하고 취직도 했지만, 직장생활이 마음에 안들어 근무하던 회사도 그만두고 동네건달들과 한 패가 되어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종대의 생각입니다. 부모는 어른이 된 아들이라도 돌보아 줄 의무가 있을까요?

답 : 부모가 여유가 있을 때만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부모에게 생활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지워지는 의무입니다. 예컨대, 한 조각의 빵을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서 먹더라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질을 가진 의무입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의무라는 형태를 띠니다. 이것을 제1차적 부양의무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된 후에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대등하게 부양의무를 집니다. 결국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후의 부양문제는 이 범주의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제2차적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제2차적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정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는 다릅니다. 즉, 부모는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부양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빈둥빈둥 놀면서 생활에 쪼들리더라도 다른 친족은 그 사람을 부양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첨가한다면,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제2차적 부양의무(자녀에게 여유가 있을 때 일방을 부양하는 의무)는 아니고 자기가 아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 pp.106~10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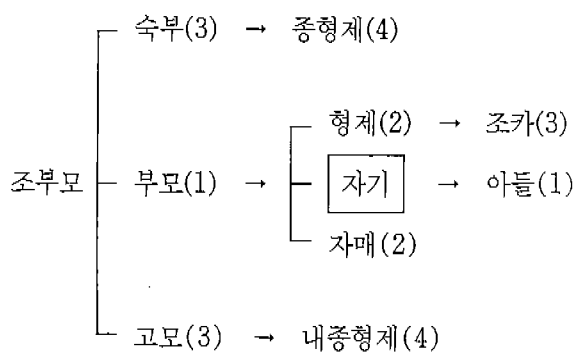
무리 어렵더라도 자기의 배우자는 자기와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하도록 할 의무를 서로 부담하는 것이라서(이것도 제1차적 부양의무임), 친족간의 일반적 부양의무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참고 : 친족의 범위와 촌수의 계산방법

우리들에게는 혈연관계가 있다는 의미의 친척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혈족은 혈연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양자(養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법률상 아들로 간주됩니다(법정혈족). 배우자는 처나 남편이고, 인척은 배우자의 친족을 말합니다.

“촌수”는 친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를 말합니다. 직계혈족에서는 단순히 그 사이를 연결하는 친자의 세수를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 등입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방계혈족간의 촌수는 자기와 그 사람의 공동시조에 이르는 세수를 거슬러 올라가 계산합니다. 부모는 자기로부터 1촌(남편의 부모는 처에게 인척 1촌), 형제는 자기에게서 부모에게로 올라가서 다시 형제에게 내려가므로 2촌, 조부모를 공동시조로 하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조카, 질녀는 3촌, 종형제자매는 4촌이 됩니다.

법률상 친족이 문제되는 것은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 재산의 재산이나 수입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친족의 범위, 금치산 선고라든지 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 근친자가 살해당한 때의 위자료 청구권의 범위 등입니다. 또 형사관계에서도 친족간의 범죄가 문제되는 것이 있고, 재판이 되면 친족간에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가요?

문 : 김옹팔씨 부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재산도 수입도 부족합니다. 김옹팔씨는 아들 하나 딸하나를 두었는데 자녀들은 이미 커서 결혼한 후 독립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팔씨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송금하여 달라고 자식들에게 부탁하면, 자식들은 “요즈음 효도할 의무는 법률상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답 : 법률상으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여도 좋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친족들 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경우 누가 부양의무를 지는가는 정하여져 있습니다. 제1의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즉,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들과 그 배우자이고, 제2의 부양의무자는 형제, 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이 사람들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양할 것인가(특히,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는 데는 부모들 본인의 희망도 존중)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 본인(피부양자)이 노령일 경우 그의 부모(즉, 조부모)는 생존하여 있지 않을 것이므로 협의에 가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를 보면 자녀의 쪽이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피부양자가 협의를 할 때 과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자녀가 그 부모 부양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이들 부양의무자들 사이에 부양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105)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977조).

위와 같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기타의 친족 등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는 국가부조(사회보장)의 문제가 됩니다.

낙태수술이 불법인가요?

문 : 회사원인 김영희씨는 평소 사귀던 남자친구와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강요에 못 이겨서 여관에서 함께 잤습니다. 하지만 영희씨는 피임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남자도 신경을 쓰지 않아 그만 원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신 2개월 이라는데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을까요?

답 : 낙태수술은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요사이 성의 개방이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낙태행위를 자신의 자유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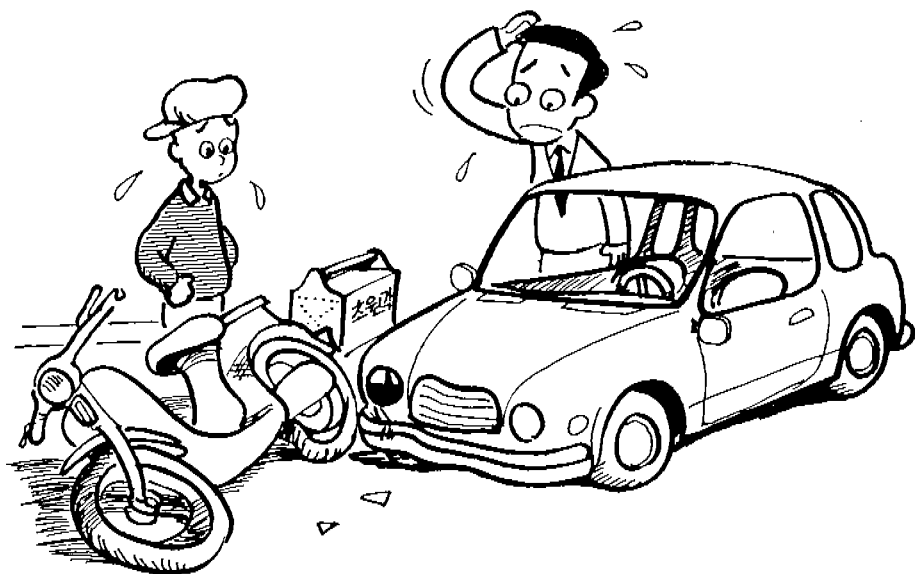
낙태는 장래 인간이 될 태아의 살해에 해당하므로 형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9조 이하).

낙태를 요구하는 부녀는 물론 그 행위에 협조한 의사와 가족까지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간단히 수술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법률을 떠나서도 사회도의적으로 죄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같은 생각이 사람 목숨을 경시하는 풍조로 발전할 때 그 죄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형법이 낙태죄를 두어 낙태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모자보건법」입니다.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p.37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IX.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를 낸 때는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문 : 저는 운전면허를 따지 얼마 안된 「완전 초보운전」입니다. 만약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죄를 가볍게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 우선은 부상자구호, 다음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든지,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건물이나 자동차를 부순 경우는, 운전을 바로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일이 첫째입니다. 인명구조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도로에 그냥 방치하면,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 우측에 붙여 세워두는 등 우선 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자의 구호를 적절하게 한 경우, 예컨대 구급차를 불러(서울의 경우 전화번호 : 119와 129)병원으로 부상자를 옮긴다든지, 스스로 부상자를 병원까지 운반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는 사고신고를 합니다. 마침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고, 없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지서,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할 때는 교통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 부상자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파손의 정도,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당신이 강구한 조치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도 부상자의 구호조치와 경찰에 신고를 하지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35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않고, 그 장소를 떠나면 이는 소위 “뺑소니”가 되어 무거운 형벌(1년 이상 25년까지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종신)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버린 후 도주한 경우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사망의 경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부상의 경우) 형을 받게 됩니다.

신고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은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까지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한정 해석하여 운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헌입니다(헌법 재판소 1990 8.27, 결정, 89 헌가 118). 범법자에게 자수를 강요함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정비공장 종업원이 공장차로 사고를 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문 : 진영이는 정비공장에서 심부름하는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그만 진영이가 면허도 없이 공장 소속 차량을 도로에서 회전시키다가 뒤에서 오던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 책임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고의 유무를 막론하고 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40조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인 종업원을 운전하도록 한 자동차 운전자(차주)는 무면허운전을 한 종업원이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116조). 이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형법의 특성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정비공장의 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어느 누구의 과실이 사고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려우며, 과실이 있는 쪽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비공장 소속 자동차가 회전진입을 하려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주행도로에 갑자기 막아 서거나 중앙선으로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오토바이가 이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p.329~331)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고 가정하면, 정비공장측에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정비공장의 자동차가 도로 쪽으로 약간 차체를 내밀고 정지상태에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음주 또는 과속 운전 등으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부상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운행자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근소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과의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무면허운전자의 형사책임만이 문제로 될 뿐이지만, 만약 무면허운전 이외에 정비공장 자동차에 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로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임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보면 대개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음주운전으로 낸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못을 박고 있으므로, 결국 자동차정비공장측(자동차 운전자)에서 일체의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고객의 자동차를 옮기다가 낸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트럭운전자가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교환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오일교환을 부탁하고, 작업대에서 15미터 떨어진 길 건너편에 트럭을 주차시켜 놓고 식사를 하러 떠난 사이에 오일교환소의 종업원이 운전면허도 없이 그 트럭을 작업대까지 후진 이동시키다가 어린이를 치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엔진오일교환업소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은 통념상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또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업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고 오일교환을 부탁 하였다면, 이 때부터 그 자동차의 지배권은 운전자에게서 오일교환업자에게 일시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고에서는 트럭운전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오일교환업자에

게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1987. 7. 7 87다카 449).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타이어 또는 오일교환업소에서 특히 명심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차주인이 승객의 부상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문 : 민수는 친구들이랑 교회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가다가 용달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용달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이 용달차의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판명되었으나 용달차의 차주(운전자)는 재력이 없고 또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민수는 치료비와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답 :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차와 충돌함으로써 사람을 부상하게 한 용달차 운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동시에 차주)에게 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달리 배상책임자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 본인의 과실유무를 막론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행자는 자기 차에 탄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교회차의 운행자에게 치료비는 물론, 부상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하여 학설에 판례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교회버스의 ‘차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p.316~317)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주'가 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차주의 승낙하에 또는 지시에 따라 교회 승객을 태우고 야유회를 가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버스의 운전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와 운행자는 대개 일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사 준 오토바이로 아들의 친구가 사고를 낸 때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문 : 최종진씨는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입니다. 종진씨는 고교생인 아들을 위해서 통학용 오토바이를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종진씨 아들은 오토바이를 그의 친구에게 빌려주고 아들은 오토바이의 뒤에 탄 채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보행중인 노파를 치어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사준 종진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답 : 최종진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가족차의 원칙). 종진씨가 아들에게 사 준 오토바이는, 아들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아직 아들은 고교생인 미성년자이므로 아들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집니다. 이처럼,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가장인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가족차(Family Car)의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아들 자신이 일으킨 사고는 아니고, 아들의 친구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그러나 아들 자신이 오토바이의 뒤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아들의 승낙을 얻어 그 친구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승낙하여 그 친구가 운전한 경우는, 역시 가족차의 원칙이 적용되어 아버지인 당신이 그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자식이 일으킨 사고라면 참을 수 있으나, 자식의 친구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기는 역을 하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운전을 승낙하고, 그 차에 동승도 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당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33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차를 사 준 이상, 아들의 사고는 물론, 아들친구의 사고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오토바이에 충분한 보험(종합보험)을 들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녀가 고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문 : 이진영씨는 21세의 미혼여성으로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때문에 밤이 깊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다른 택시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얼굴을 부딪혀, 오른쪽 눈 위에 크고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습니다. 미영씨는 아직, 결혼 하기도 전이라서 정신적 타격도 크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본래대로 고쳐질지 어떨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여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 남자보다 그 고통을 더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여성이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 결혼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고통도 크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성의 외모에 현저히 추한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보다 장애등급을 높게 정하여 그 보상비를 더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의 구별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한 미적 감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씨가 아직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고 그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는 알수 없으나, 그 수술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선정한 전문의사의 감정에 따라 밝혀집니다.

이미영씨의 흉터는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본래대로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하니, 문제입니다.

* 이 사례는 청림출판에서 발간한 「생활속의 법률지식」(박동섭저;1993년;p.335)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소송과정에서 나타나면 판사는 아무래도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자에게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청구액수나 판결 액수에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판사가 건전한 상식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나요?

문 : 성일이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택시의 뒷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 하는데 택시는 공제조합에 보험가입되어 있으나 자가용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택시운전사나 택시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일이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 이 사건은 성일이가 ‘갑’이 운전하는 ‘을’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병’이 운전하는 ‘정’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에 추돌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법 제3조).

여기서 운행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라고 설명되는 데, 위 사안에서는 ‘을’과 ‘정’이 운행자가 됩니다. 이때 동법은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운행지배자(운행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과실 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p.155~15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도 1606 판결).

따라서 성일이는 직접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정’과, 성일이가 탔던 택시의 운행자인 ‘을’회사 모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성일이는 영업용 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 ‘갑’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갑’이 운전하던 택시회사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택시운전자인 ‘갑’과 자가용 승용차의 운전자인 ‘병’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 ‘갑’은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고, 자가용 승용차의 운전자와 차주인 ‘병’과 ‘정’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나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난 후 3년만에 후유증이 심각한데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문 : 인호는 3년전에 학원이 늦게 끝나 영업용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 철길 건널목에서 택시 운전자가 우선멈춤 신호를 무시하여 택시가 열차에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인호는 골반골 골절, 우관절후방탈구 등의 상처를 입고 1년 반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 무혈종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는 데, 사고 택시의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답 :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호의 경우,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이외의 치료비가 소요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165)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호의 경우, 후유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 41880 판결).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문 : 수종이는 지난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의 백미러 부위에 부딪혀 넘어졌으나 당시에는 별로 아픈 것도 모르겠고 팔다리의 타박상 정도라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지 몇 달 후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우측다리 슬관절염으로 진단되어 병원치료를 받느라 학교에 결석이 잦아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재까지 장애가 남아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종이의 경우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 : 수종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는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법 개정으로 현재는 철도차량 및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때 제출서류로는 ① 소정양식의 청구서, ②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③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 불명 교통사고 사실확인 등), ⑤ 그외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등입니다.

지급내용으로는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되지만, 실손해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15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시에는 최하 14급일 때 20만원에서 최고 1급일 때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최하 14급일 때 60만원에서 최고 1급일 때 1,5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에 특례법이 적용되는가요?

문 : 김승우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차량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근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승우씨 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데 과연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호위반, 제한시속의 20킬로미터 초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그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등의 경우 등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횡단보도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승우씨의 경우처럼 차량정지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다음에는, 길 중간에서 있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

* 이 사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1986년; p.23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승우씨는 교통사고처리특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인가요?

문 : 박용현씨는 1991년 3월 1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던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멈췄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돌이 받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용현씨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래도 용현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동법 제3조 제2항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 뺑소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 인도상의 사고, 개문발차사고 등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사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 4조 제1항 단서). 박용현씨의 경우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포함됩니다(동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p.529)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1990. 10. 16. 선고, 90도 761 판결).

따라서 귀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7. 5.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이천생을 충격하여 비장파열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했다.

* 이 내용은 법원행정절차에서 발간한 「대법원 판례해설」(1993년, 20호 pp. 461~469: 심창섭 집필)에서 전문 발췌한 것입니다.

2. 제1심판결(유죄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의 실형에 처함.

3. 원심판결(제1심 파기, 공소기각)

피해자가 횡단중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며,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함.

〈검사의 상고이유〉

1. 체증법칙 위배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해자가 주취중에 횡단보도에 누워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체증법칙위배이다.

2.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는 횡단하려다 횡단보도에 누워있었던 것이므로 횡단보도상의 보호의무있는 보행자에 해당한다.

〈검 토〉

1. 체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횡단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상세한 내용은 생략함)

2. 법리오해의 점

가.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것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예외의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제4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문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었드려(누워)있었던 것이 도교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이다.

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규정을 둔 입법목적

도교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위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교통상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2가지 목적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도로 중의 차도는 원칙적으로 차의 통행을 위주로 하는 곳이므로 사람의 통행(횡단)을 제한하되(도교법 제10조 제2항), 차도 중의 특정부분을 횡단보도로 지정하여 그곳에는 사람이 차보다 더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도교법 제48조 제3호).

즉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위 규정은 차도 중에서 특정부분을 보행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횡단하게 할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보도를 제외한 차도의 통행을 제한함으로

써 교통의 원활도 함께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위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법 제48조 제3호의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보행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행자라 함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즉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자전거나 원동기장치자동차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손기식, 교통형법 제236장). 다만 사람이 손수레를 끌고 횡단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은 “손수레가 도교법 제2조 제13호의 차에 해당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가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지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손기식 부장판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찬동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에 해당된다고 한다(위 교통형법 제236, 237장).

(2) 횡단보도이어야 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도교법 제2조 제8호)이다. 도교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횡단보도설치시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되, 신호기가 있는 경우는 횡단보도표시만, 도로에 위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판결은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기가 하루쯤 점멸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도 위 규정상의 횡단보도라고 하고,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은 진행방향 반대차선의 횡단보도가 거의 지워졌다 해도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으면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본다.

그러나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판결은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

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을 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 1983. 12. 31. 선고 83도2676판결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정지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근에서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면서 멈춰 서있는 경우라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지신호에 의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위 교통형법 제235장).

다만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펴 보면서 서행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판결에 관하여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바뀔 무렵에는 운전자에게 위 규정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위 교통형법 제235, 236장). 그런데 위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횡단보도상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아니지만 운전자로써의 일반적인 과실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3) 통행하고 있는 때라야 한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위 규정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잠을 자기 위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다거나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있는 경우 등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위 규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 견해는 횡단보도는 사람의 통행을 위한 장소이고, 사람이 존재하는 한 걸어서 통행을 하든, 서 있든, 누워있든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나 간절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경우도 운전자에게 위 규정의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 도로교통법은 그 제정목적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과 2) 차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차도는 원칙적으로 차의 통행을 위주로 하는 곳이므로 사람의 통행(횡단)을 제한하되, 차도 중의 특정부분을 횡단보도로 하여 그곳에는 사람이 차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횡단보도는 그 기능상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한 장소이므로 그곳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횡단중인 보행자를 보호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제한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규정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내용으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시위를 한 경우 이를 방해하였다 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잠을 자거나 시위를 한 장소가 우연히 횡단보도였다 하여(교통의 원활이라는 목적과 아무 관계가 없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호의무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운전자에게 위 규정상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여지고, 위 규정이 형사처벌에 관한 실제적인 구성요건인 동시에 형사소추조건을 결정하는 조항인 점으로 보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편 주석 형법총칙 상 제 46,

47장).

물론 위와 같이 잠을 자거나 통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느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의의무를 부과받은 운전자의 주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생각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횡단보도 10미터 앞에서야 물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4미터 앞에서야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당시는 01(또는 02):00경으로 어두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가로등이 없었다고 주장함)사람이 거의 통행하지 아니하는 때이므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사고지점이 편도 2차선 도로로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한 거리에서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면 차선을 변경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대자루 등으로 오인하고 진행하다가 충격 직전야 사람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운전자에게 차도에 있는 물체가 사람인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사례에 관하여 일본의 관계문헌을 검토하였으나 선례가 될만한 사례가 없다. 일본에서는 우리 교통법 제3조와 같이 위반의 내용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누워 있었던 경우에는 굳이 횡단보도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4)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이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서행할 경우에는 긴급사태시에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야 한다(도교법 제2조 20호). 따라서 횡단보도상의 통행인에 대하여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참고로, 일본국의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차량은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때에 당해 횡단보도로부터 그 진로의 전방을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횡단보도 등의 직전(도로표지 등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정지선의 직전)에서 정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속하여 진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횡단보도 등에서부터 그 진로의 전방을 횡단하고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횡단보도 등이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고 동시에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우리 도교법보다 그 주의의무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의 법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도교법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3.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가 정당한가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무죄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죄사유와 공소기각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후자를 우선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한국사법행정학회편 주석 형사소송법 하 제91장,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판결도 같은 취지 임).

4. 결론과 위 판결의 의의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교통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적용이 없다 하여 공소기각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의 의미를 명백하게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X. 손해배상



공고 실습생이 회사 실습도 중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 : 태수는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태수네 학교에서는 졸업반 학생들을 각과별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파견, 현장실습을 시키기 때문에 태수도 어떤 회사에 위탁되어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태수의 기계조작 실수로 왼손 손가락중 엄지손가락 만을 제외하고 네개의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얼마간 돈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그야말로 치료비도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의 진료와 생활대책이 막연한 처지입니다. 태수는 실습할 때 회사로부터 월 7만 5천원씩의 실습수당을 지급받고 일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것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답 :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회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업체이어야 하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사용·피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원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경우, 회사로부터 실습수당 명목으로 월 7만 5천원씩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이 실습수당은 어느모로 보나 임금의 성격을

* 이 사례는 법정사에서 발간한 「위민실 법률상담 사례집」(1988년; pp.453~454)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지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태수와 위 회사 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을 것이며 회사는 단순히 태수의 기술능력배양에 있어서 장소와 재료를 제공하여 태수가 기술자로 완성되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처지였다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실습수당을 지급하는 실습이긴 하지만 그 노고로부터 창출되는 작업효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로 다소의 금전을 보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태수가 부상을 입은 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만 산재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돈 없는 시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문 : 민수 아버지는 택시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친 이후 운전직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 병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 데 현재 돈이 없어서 소송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수같은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민수아버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인 빈곤이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법률 분야의 비영리공익기관입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1.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p.665~670)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거 1987. 9. 1 발족되어 현재 공단본부(서울특별시)와 11개 지부(직할시, 도단위) 및 39개 출장소(시, 군, 구 단위)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구제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는 여러 계층의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소송전구조 -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여러가지 법적지원 활동을 통하여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은 법률상담과는 달리 법률구조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개 인간의 민사문제에 한정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 형사문제 등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단이 발족한 이후 1994. 12. 30 현재까지 7년 4개월 동안에 처리한 실적은 소송구조가 79,822건, 소송전구조가 106,183건 그리고 법률상담이 2,477,47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법률상담을 받으시려면?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됩니다. 법률상담은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대상자의 제한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본부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의뢰하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문의 하시더라도 친절히 답해 드립니다.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화해·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상담시간은 오전 10:00-12:00, 오후 1:00-5:00(6:00)이며, 공단 본부에서는 휴일 및 야간에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을 순회하는 이동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 상담시간은 오전 10:00-오후 3:00이며, 야간 상담시간은 오후 5:00-7:00(8:00)입니다.

4.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은?

법률구조는 법률상담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농·어민
-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

5. 법률구조의 신청절차는?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뢰자)은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청구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법률구조신청서(공단 소정양식)와 함께 해당지역 공단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소송을 하는 경우의 비용 문제는?

법률상담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구조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은 소송종료 후 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및 그 사건의 승소가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해 산출한 변호사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의뢰자는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회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분할 상환토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7.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및 법률상담 전화번호는?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u>공단 본부</u>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2 제일빌딩	571-7801(대표)
서울지검청사공단 상담실	서울시 서초구 서동동 185-2 서울지검내	(02)536-5577
동부직할 출장소	서울시 성동구 자양2동 680-22 서울지검 동부지청내	(02)453-5888
남부직할 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7-4 복화빌딩 2층	(02)677-9157
북부직할 출장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61-8 동신빌딩 503호	(02)972-1765
서부직할 출장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지검 서부지청내	(02)713-6009
의정부직할 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효정빌딩 3층	(0351)874-0100
<u>인천 지부</u>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6동 988-1 대일빌딩 4층	(032)433-3350
부천 출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검 부천 지청내	(032)320-4676
수원 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 수원지검내	(0331)213-1331
성남 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단대1동 3720 신생빌딩 3층 3호	(0342) 48-3509
여주 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수원지검 여주 지청내	(0337) 83-7630
<u>춘천 지부</u>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56 춘천지검내	(0361)55-5404
강릉 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교1동 산846-5춘천지검 강릉지청내	(0391)645-3163
원주 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학성 1동 1008 춘천지검 원주지청내	(0371)42-3003 44-3003
속초 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0 춘천지검 속초지청내	(0392)32-6611
영월 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7-1 춘천지검 영월지청내	(0373)73-1910 2-1211
<u>대전 지부</u>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3동 188 대전지검내	(042)255-2969
홍성 출장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판리 108 대전지검 홍성 지청내	(0451)34-4476
공주 출장소	충남 공주시 반죽동 332 대전지검 공주지청내	(0416)55-4814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강경 출장소	충남 논산군 강경읍 대흥동 46-1 대전지검 강경지청내	(0461)745-2501
서산 출장소	충남 서산시 동문동 804-8 대전지검 서산지청내	(0455)667-4054 665-5202
천안 출장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16 대전지검 천안지청내	(0417)63-6174
<u>청주 지부</u>	충북 청주시 수속동 93-1 청주지검내	(0431)274-7777
충주 출장소	충북 충주시 교현동 720-10청주지검 충주지청내	(0441)845-3004
제천 출장소	충북 제천시 의림동 3-3청주지검 제천지청내	(0443)43-5001
영동 출장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1-4 청주지검 영동지청내	(0414)43-1264
<u>대구 지부</u>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458-2 대구지검내	(052)752-0069
안동 출장소	경북 안동시 동부동 67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0571)56-2595
경주 출장소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0561)41-6111
김천 출장소	경북 김천시 평화동 298-3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0547)33-1780
상주 출장소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9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0582)34-2224
의성 출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0576)32-6614
영덕 출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8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0564)734-1745
<u>부산 지부</u>	부산직할시 서구 부용동 2가 1 부산지검내	(051)241-3177
동부 출장소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051)781-0710
울산 출장소	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 산285	(0522)71-0678
<u>창원 지부</u>	경남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검내	(0551)66-3381 66-3382
진주 출장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3-5 창원지검 진주지청내	(0591)55-6922
통영 출장소	경남 통영시 태평동 367-1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0557)44-3433
밀양 출장소	경남 밀양시 삼문동 246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0527)354-3131
거창 출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창원지검 거창지청내	(0598)2-3531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u>광주 지부</u>	광주직할시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검내	(062)225-2559
목포 출장소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광주지검 목포지청내	(0631)77-2002
장흥 출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광주지검 장흥지청내	(0665)2-2131
순천 출장소	전남 순천시 매곡동 419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0661)52-6539
해남 출장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광주지검 해남	(0634)536-5253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동 1가 1416-1 전주지검내	(0652)251-4033
군산 출장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2-1 전주지검 군산지청내	(0654)445-0696
정읍 출장소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7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0681) 33-9644
남원 출장소	전남 남원시 동충동 141 전주지검 남원지청내	(0671)626-5789
<u>제주 지부</u>	제주시 이도 2동 950-1 제주지검	(064)53-9955

아이가 옆집 연못에 빠져 익사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문 : 5살된 수동이가 1994년 5월 4일 09 : 30경 동네아이와 같이 동네에 있는 별장에 들어가 놀다 그집 정원의 연못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수동이 아버지는 별장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별장 주인은 불법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면서 전혀 배상을 않고 있습니다. 수동이네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75. 3. 25. 선고, 73다 1077판결)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점유자가 손해배상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이 이상자연력이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라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동이의 익사사고의 경우에 별장은 담장이 허술할 뿐 아니라 항상 대문이 열려있어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놀다 빠지는 등 충분히 위험이 예견되어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수동이의

*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법률상담사례집」(1995년; p.17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에 적합하게 본 연구팀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부모는 위 별장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가 된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학생 청소년의 사고에 대한 보상금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래을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장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1. 사건개요

육군과학심사연구소 소속 짚프의 운전병이 1982. 12. 1. 1 03:05경 부대비상소집으로 소속 근무자를 태우러 가던 중 원고를 치어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바,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1982. 2. 25 서울 장충중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9 서울기술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같은 해 10. 7 동교를 자퇴한 바 있으므로 사고당시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나 적어도 통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노동자의 전산업, 전연령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勞勤部에서 調査한 1983, 年度 中卒以下男子勞勤者의 全産業, 全年齡 平均賃金 226,354원을 基礎로 損害賠償請求를 하였고,

原審은 이를 받아들여 위 平均賃金을 原告의 逸失收入 算定이 資料로 삼고 賠償額을 定하였다.

이에 대해 被告는 原審이 위와같은 資料에 依하여 原告가 將次 收入할 收入額을 定한 것은 (1) 大法院 1976. 7. 27 宣告 76다 707判決 1981. 9. 22 宣告80다 3256判決, 1977. 11. 18宣告 76다 2418判決 等の 趣旨에 反하는 것이고, 原審이 採擇한 中學校卒業學歷을 가진 就業勤勞者의 平均賃金이라는 資料는 相當比率의 未就業者를 除外한 것인데다가 그 調査對象은 常用勤勞者 10人以上의 事業場중 約 3,700個의 事業場을 標準抽出 調査한 것으로서 勤勞部에서 調査하지도 아니하고 調査對象에서 除外된 事業場이 散在한 現實에서 그 統計가 우리나라 中學校卒業者 全體의 平均賃金이라고 信賴할 수 없으며 그 統計에 나타난 賃金은 勤勞者의 經歷을 무시한 全體의 平均賃金인 것으로 原告의 逸失收入算定の 合理的 根據가 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上告하였다.

2. 大法院 判決理由의 要旨

大法院은 위 上告에 對하여 「不法行爲로 因하여 死亡하거나 新體上의 障礙를 입은 사람이 將來 얻을 수 있는 收入의 喪失額은 그 收入이 將次 增加될것임이 相當한 程度로 確實視되는 客觀的인 資料가 없는 한 原則적으로 그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가 發生할 當時의 그 被害者가 從事하고 있었던 職業으로부터 收益하고 있는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算定하여야 하고 不法行爲當時一定한 收入이 없는 被害者의 將來의 收入喪失額은 普通 一般사람이면 누구나 從事하여 얻을 수 있는 一般勤勞賃을 基準으로 하여야 하며 被害者의 學歷이나 經歷等を 參酌하여 그 收入을 策定할 수는 없다고 함이 當院의 見解이다(當院 1971. 7. 27 宣告 71다1349判決, 1977. 11. 8 宣告 76다2418 判決, 1967. 7. 18 宣告 67다 844 判決等 參照)」라고 前提한 後, 原審이 勤勞部에서 調査한 職種別賃金 實態 調査報告書에 依하여 中卒以下 男子勤勞者의 全產業, 全年齡 平均賃金을 基礎로 原告의 逸失收入을 定한 것은 「이는 合理的根據없는

漠然한 것으로 逸失收入 算定の 法理를 誤解하여 判決에 그 理由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에서 說示한 當院의 見解에 反하는것。」

이라 하여 被告의 上告에 따라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환송하였다.

3. 위 判決에 關한 解釋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請求訴訟 있어서는 그 賠償額 특히 逸失收入喪失損害로 因한 賠償額の 算定은 原, 被告 및 法院의 重大한 關心事가 되어 있다.

被害者가 被害當時 一定한 職業을 가진 경우에는 不法行爲의 結果 從前收入의 全部를 喪失하였는가 또는 그 중 一部分을 喪失하였는가, 從前 職業에 從事할 수 없게 되었다면 將次 그 類似職種에 勤務할 수가 있으며 그런 可能性이 있으면 그 類似職種에서의 收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조차 不可能하다면 어떤 部類의 日傭勤務에 從事하여 얻는 收入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問題로 삼게되는 것인데, 被害者가 不法行爲當時 無職者인 경우에는 그가 언제부터 어떤 職種에서 일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收入이 重要な 爭點이 된다.

判例는 不法行爲로 因하여 勤勞能力이 喪失, 減退된 被害者의 逸失收益을 算定하는 경우에는 原則적으로 그 勤勞能力 喪失當時의 被害者의 收益을 基準으로 하여야 하고 將次 그 收益이 增加될 것이 相當한 程度로 確實하게 豫測할 수 있는 客觀的인 資料가 있는 경우에는 將次 增加될 利益도 逸失收益을 算定함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1971. 7. 27 宣告 다1349判決, 1977. 11. 8宣告 76다 1899判決)라고 하면서, 不法行爲 當時 一定한 收入이 없는 被害者의 將來收入喪失額은 普通사람이면 아무라도 從事하여 얻을 수 있는 一般勤勞賃金を 基準으로 算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被害者의 學歷이나 經綸等を 參酌하여 漠然히 그 收入을 算定할 수는 없다(1967. 7. 18宣告 67다844判決, 1981. 3. 24宣告 80다 3270判決 等)고 判示하였다.

그러나 被害當時 一定한 職業이 없는 被害者에 對하여 그 收入喪失額을 定함에 있어 普通사람이면 아무라도 從事하여 얻을 수 있는 一般勞動賃金を 基準으로 認定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大法院判決의 結論은 一般勞動賃金を 基準으로 認定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大法院判決의 結論은 一般勞動賃金은 그 賃金水準이 最小限度의 것이므로 적어도 그 程度의 收入은 누구라도 얻을 수 있다는 點에서 妥當性의 根據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一般勞動에 從事한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一般勞動은 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勞動이 아니며 一般勞動은 그에 適合한 身體的 機能을 別度로 要하고 있으며 日傭勞動에 從事하는 可能性 내지 確率보다는 그 以外の 數 많은 다른 職種에 從事할 可能性 내지 確率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現實이고 그와같은 경우에는 一般勞動의 勞賃보다 나은 收入을 얻을 수 있으므로 實務에서는 어떻게 하면 一般勞動勞賃以外的 方法으로 合理的인 收入喪失損害額을 定할 수 없을가 하는 觀點에서 勞力이 있어왔고, 마침내는 海陽대학교 3學年在學中인 學生이 被害者가 된 경우 3等航海士의 資格取得을 前提로 收入喪失損害를 算定하는 것은 正當하고(大法院 1976. 10. 26.宣告 76다 1849判決) 看護學校在學生인 被害者에 對하여 看護員의 收入을 基礎로 收入喪失損害를 算定하는 것은 正當하다(大法院 1980. 4. 8. 79다 76判決)는 判決이 宣告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判決은 一定한 資格取得이 豫想되는 例外的인 경우인 特定한 被害者의 損害額의 算定에 있어 一般勞賃原則에 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合理的인 事情이 있다면 역시 위와같은 原則에 依할 수 있다는 것을 示할 것이라고도 보인다.

이에 近來에 이르러 各種의 統計資料가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證據로 提出되고 法院은 그 統計資料를 어떤 觀點에서 證據로 取捨할 것인가가 問題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本事件은 勞動部에서 勞働者의 勤勞實態를 破握하여 政策을 樹立하기 爲한 資料로 作成된 職種別賃金實態調查報告書중 그 調査內容에서 나타난 學力別 就業者의 平均賃金を 不法行爲 被害者의 逸失

收入의 算定의 資料로 할 수 있는 가 하는데 대한 最初의 判決인데 判決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合理的 根據없는 漠然한 것」이라고만 判斷하고 있다.

위 判決이 위 調查報告書を 合理的 根據가 없고 漠然한 것이라고 본 根據를 明示하지 아니하여 그 書類가 勞動部의 行政 目的을 爲한 것이기 때문인지, 被解의 主張과 같이 數 많은 事業場中の 一部分을 標本調查하였기 때문인지, 原告가 調查對象인 事業場에 就業할 可能性에 對하여는 審理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때문인지, 從前 大法院에서 判示한 바와 같이 不法行爲 損害賠償額 算定에 있어서는 一般勞動者의 勞賃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고 被害者의 學歷이나 經歷은 參酌할 수 없기 때문인지가 明白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論述한 바와같이 大法院判決이 無職者인 不法行爲被害者의 逸失收入 喪失損害算定을 一般勞賃에 依하고 被害者의 學力, 經歷을 參酌하여 定할 수 있다는 趣旨가 無職者인 被害者도 적어도 그와같은 勞動에 從事하여 그 勞賃에 相當한 收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判決의 要諦이고 被害者의 學力이나 經歷을 參酌하여 漠然히 算定할 수 없다는 것이 그 事件에 있어서의 해석의 基準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被害者의 學歷이나 經歷이 損害額算定에서 排除되어야 하는 要素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사전에 있어 證據로된 勞動部의 調查報告書を 排斥하려면 大法院으로서도 合當한 根據를 明示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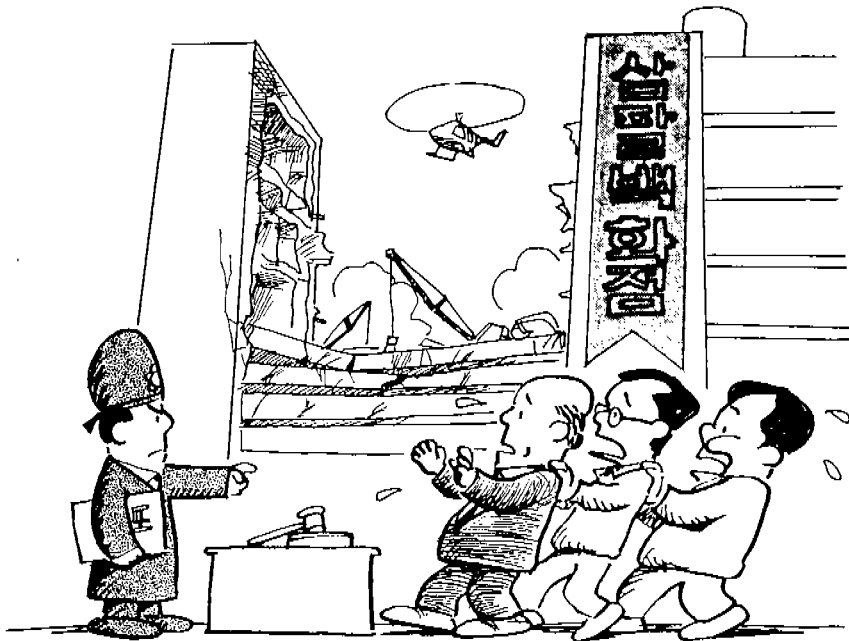
이사전에 있어서 被害者의 學歷이외에 다른 아무런 資料가 없어 被害者인 原告가 적어도 그 調查對象인 事業場에 就業할 可能性에 對한 合理的根據가 있다면 위 報告書에 依한 賠償額 算定도 不合理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 判決이 說示가 좀더 明確하였다면 下級審의 實務에 좋은 資料가 되리라고 본다.

부 록

형 사 모 의 재 판 대 본

주제 : 대형붕괴사고의 건축주

—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는가?



주최 : 명지대학교 법학과 학생회

일시 : 1995년 10월 2일 월요일 늦은 3시

제 15 회 형사 모의재판을 준비하며

준비위원장 김왕탁

(전략)…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 있는 역사의 주체로서, 올해의 여러 사건들은, 특히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인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삼풍백화점 붕괴는 그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여 원고를 작성하는데 있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의 건축주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가 등은 참으로 어려운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유래없는 사상자를 낸 사건들이기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어떤 결과를 의도하기 위한 원고의 작성은 되도록 지양하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사실심리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역시 재판부에서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후략)

격 려 사

법학과 교수 이기현

(전략)…그런데 법학에서는 종종 법의 체계를 잘 익혀 법률전문가가 된 사람이 그러한 틀에 맞추어 내놓은 ‘특정 사안에 대한 해답’이 일반인의 상식 또는 법감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매국노가 사들인 토지의 소유권을 후손에게 인정할 수 밖에 없다든지, 출생후 1년이 지나면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든지, 5.18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든지, 수백명이 사망한 대형사고에 대한 법정형이 절도나 문서위조보다 낮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법을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법이 세상의 변화를 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사태임에 틀림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니 결과가 마땅치 않아 사람들이 법이나 법관에 불신할 것이고, 여론을 따라다니자니 법이 변덕스러워지고 법학의 체계도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략)

출 연 팀

총연출 : 1명

재판장 : 1명

검 사 : 2명

변호인 : 2명

서 기 : 2명

피고인 : 삼팔백화점 회장 「이붕괴」

삼팔백화점 사장 「이참사」

증 인 : 5층 식당가 춘원식당 주인 「왕깸새」

전 뇌물구청장 「한꺼더」

삼팔건설 현장소장 「공구리」

우원건설 설계감리사 「전재포」

한 건축 연구소장 「안보여」

삼팔백화점 매장직원 「구사일생」

알아 둬 시 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을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미필적 고의란 무엇이고 이와 유사한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은 형법이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구별은 필요하다 하겠다.

미필적 고의란? :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인용인 확정적 고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적 고의 개념중의 하나다. 이것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를 말하며, 확정적 고의에 비해 그 지역, 의지적 요소가 약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인식있는 과실 : 인식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그 결과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없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말한다.

양지구별에 대한 학설과 대법원 입장 : 우리나라 다수설과 대법원은 용인설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예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한 때를 말하며, 결과 발생을 내심으로 거부하거나 그 불발생을 희망한 때에는 인식있는 과실이라고 말한다.

검사의 기 소 요 지

피고인 이붕괴, 이참사는 1995년 6월 30일에 붕괴된 삼팔백화점의 책임자인 회장, 사장인바,

1. 이들은 삼팔백화점 건축초기, 즉 1989년 11월 매장 확장을 위한 설계변경, 3차례에 걸친 부분적 가사용 승인, 1990년 7월 27일 준공점사사용승인을 위해 한꺼번에, 이층우에게 각각 12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매장확장과 증축을 위해서 주택과 직원 정경수, 89년과 90년 사이 당시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에게 각각 500만원을 주고, 그 밖에 주택과 공무원들에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을 수수하여 위법한 설계변경 및 증축을 함으로써 부실 건물을 건축하여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2. 1995년 6월 27일 삼팔백화점의 안전진단결과 부분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수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가 6월 30일 오전, 5층 식당 일부가 붕괴 하였다.

3. 사고 당일 오전 11시쯤 우원 감리의 안전진단결과 냉각탑 가동과 600명 정도의 고객이 이동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와 현저한 붕괴조짐에도 불구하고 5층의 값비싼 보석, 미술품등의 상품만을 철수시킨 채 영업을 강행하고 붕괴당시 약 15분전 당시 시설부장 이영철씨로부터 현재 건물붕괴가 진행중이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고객과 종업원을 대피시키지 않고 매장물건의 전원 철수만 명령하여 총 500여명이 사망하고 93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백여명이 실종되었다.

재판장 : 지금부터 홍남 지방법원 도합 1995.10.2일 홍남 지청 검찰청 검사 정운석, 윤순철 등이 같은 검찰청 95 형 11124호로 공소제기한 피고인 이붕괴, 이참사에 대한 살인죄와 예비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피고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 : 피고인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피고인들 앞으로 나와 일렬로 선다)

재판장 : 지금부터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름이 이붕괴 맞습니까?

피고인 : 예

재판장 : 피고인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피고인 : ---

재판장 : 피고인의 현재주소는 어디입니까?

피고인 : ---

재판장 :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피고인 : 1922년 5월 18일 입니다.

재판장 : 지금까지 직책이 무엇이였습니까?

피고인 : 삼팔건설 회장이였습니다.

재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 피고인의 이름이 이참사 맞습니까?

피고인 : 예

재판장 : 피고인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피고인 : ---

재판장 : 피고인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피고인 : ---

재판장 :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피고인 : 1946년 3월 17일 입니다.

재판장 : 지금까지 직책이 무엇이였습니까?

피고인 : 삼팔백화점 사장이였습니다.

재판장 :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 : 지금부터 피고인 이붕괴, 이참사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살인죄와 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사실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 : 피고인들은 공소장 부분을 받아보셨지요?

피고인 : 예

재판장 : 검사는 각 피고인에 대해 기소요지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검사 공소장 낭독)

재판장 : 피고인들은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피고인이 진술한 임의의 진술은 비록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라 할지라도, 모두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 잘 알겠지요?

피고인 : 예

재판장 : 피고인 이붕괴만 남고 이참사씨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피고인 이붕괴씨 피고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 : 검사는 이붕괴씨에게 직접 신문하십시오.

이붕괴회장에 대한 검사의 신문

검 사 : 피고인의 성명이 이붕괴 맞습니까? 가족, 재산, 경력 등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가요?

피고인 : 예

검 사 : 피고인은 87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을때 총면적 7만 3천㎡중 스포츠 시설, 주차장 등 근린시설을 뺀 1만9천5백㎡를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매장면적을 총2만㎡이하를 신고함으로써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피고인 : 예

검 사 : 또한 89년 11월 매장확장을 위한 2차례 설계 변경과 3차례에 걸친 부분적 가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죠?

피고인 : 예

검 사 : 90년 7월27일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받았죠?

피고인 : 예

검 사 : 92년 10월에서 93년 6월까지, 지하1층 운동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5층 탈의실 상부를 증축한 혐의로 3천만원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 예

검 사 : 원상 복구를 했습니까?

피고인 : ...

검 사 : 빈번한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재고한 적은 있었습니까?

피고인 : 지금까지 제가 지은 건물만 해도 여럿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다른 백화점도 용도변경, 설계변경을 다해도 별 문제없이 튼튼했습니다.

검 사 : 피고인,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안정성을 재고 한 적 없지요?

피고인 : ...

검 사 : 아무튼 매장확장이나 용도변경을 한 후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 났겠습니까.

증 인 : 아무래도 그렇지요, 뭐.

검 사 : 어-, 그래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축초기부터 애초에 안정성보다는 장사속만 쟁건거군요. 89년 11월 매장확장을 위한 설계변경, 3차례 부분적 가사용 승인, 90년 7월 27일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위해 잘봐달라며 왕철관에게 1200백만원, 이충성에게 1000만원을 준 적이 있지요?

피고인 : 생각이 잘 안납니다.

검 사 : 잘 생각이 안나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당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 사 : 사고 당일 백화점에 몇시쯤 도착했습니까?

피고인 : 오후 2시쯤 됐습니다.

검 사 : 연락을 받을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피고인 : (머뭇 거린다) 나이도 있고해서 빵가리 안마시술소에 있었습니다.

검 사 : 연락을 받고 도착당시, 어떤조치가 취해져 있었습니까?

피고인 : 점심시간이후, 5층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대리석 바닥을 뜯어보고 철골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 사 : 대책회의 당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죠?

피고인 : 백화점 5층 일련의 사고부터 감리결과에 대한 것들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검 사 : 대책회의 후 긴급보수 공사를 결정 했다는데 긴급보수 공사를 지시하고 곧바로 무슨 조치를 지시했죠?

피고인 : 5층 출입을 통제하고 4층에 직원을 내려보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검 사 : 그것이 답니까?

피고인 : 건물자체 수리는 영업마감 이후에 하기로 하고 상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검 사 : 그것이 긴급보수입니까?

검 사 : 우원측으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지요?

피고인 : 예

검 사 :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보고 받고도 취한조치가 고작 무전기를 든 직원 몇명을 보낸것이 전부였습니까?

피고인 : ...

검 사 : 왜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지요?

피고인 : 백화점 생리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보수공사 어찌구 저찌구 하면 백화점 이미지도 떨어지고 영업에도 지장이 많아요.

검 사 : 그러니까 영업이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피고인 : 보수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이후에 밤을 새서라도 보수하려 했지요.

검 사 : 그사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못했습니까 ?

피고인 : 그런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검 사 : 뭐라구요! 4층에 있는 물건은 왜 옮겼어요!

피고인 : ...

검 사 :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변호인 :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피고인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질문 태도를 바꿔 주십시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사는 질문태도를 바꿔주세요.

검 사 : 좋아요. 피고. 시설부장 이충실씨가 백화점문을 닫고 보수해야 한다고 했죠?

피고인 : 예

검 사 : 왜 목살했어요? 그때 그 사람 말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지는 않았을거 아니야! 피고인, 사고당일 오후 5시 40분쯤 이충실 시설부장으로부터 ‘현재 건물 붕괴가 진행중인것 같다’라는 전화가 온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목살했습니까?

피고인 : 아니 그건, 구조 전문가인 안보여에게 사실 여부를 검토케 하려고...

검 사 : 어쨌던 목살 했잖아요!

피고인, 그 당시 증언에 의하면 위급 상황이니 빨리 매장안의 물건을 철수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당신이 지시했어요?

피고인 : (흥분해서) 아니요.

검 사 : 거짓말 하지 마세요, 피고! 상품철수라는 것이 당신들 결재가 나지 않고 어떻게 직원들이 임의로 옮길 수 있습니까 위급하다는 보고 받고 지시했죠?

피고인 : 정말 억울합니다.

검 사 : 억울~, 이봐 피고. 위급상황인데 어떻게 고객과 종업원은 대피시킬 생각은 않고 상품만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위급상황입니까? 물건만 위급해요?

검 사 : 일련의 상황으로 보건데, 당신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만을 챙긴 것 아녜요?

피고인 : 무슨말입니까?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영업을 계속하겠습니까? 물론 전면 폐쇄를 하지 않은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어떻게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보고 받은후에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보수공사 계획도 확정해 놓았습니다. (피고 돌아선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다 내 피와 땀인데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 사 : 아. 그러니까 물건만 철수시킨거 아니야. 피고, 사고당시 시설부장 이충실씨가 죽었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이 숨겨질 줄 기대하는 모양인데, 이충실씨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도 물건대피만을 지시했다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당신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증인,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될 경우에 어떻게 될거라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거 아니예요?

검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

오. 피고는 당시 이층실씨로부터 상황이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건물 전체의 물건을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매장 물건을 옮기라는 것은 회장의 지시없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것 아닙니까?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 그 안의 사람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붕괴 회장에 대한 변론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신문하세요.

변호인 : 피고인, 진정으로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있지요?

피고인 : 예,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피해자 여러분께 헌납하려 합니다.

변호인 : 지금 중풍과 치매가 심하다던데 좀 어때요?

피고인 :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변호인 :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인 : 건축 초기부터 구조계산과 안전성 여부에 대한 감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까?

피고인 : 아니요. 설계 감리를 맡겼던 우원 감리회사측에서 건물 완공후 감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 그렇다면 공사초기에 안전성에 대한 감리는 직접 확인했다는 뜻입니까?

피고인 : 거의 모든 것은 이사장이 총지휘하고 나는 그에 따른 결재와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변호인 : 그것이 이전까지의 건설 과정에서도 관례가 아니었습니까?

피고인 : 예, 이전에 제가 지었던 건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 무전기를 든 직원을 사고당일 백화점 4층과 5층에 내려 보냈다는데 우원측의 감리결과에 대해 확신도 하고 당시 상황을 직접 파악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군요.

피고인 : 예, 맞습니다.

변호인 : 사고당일 오후 2시 30분 B동 회의실에서 정기적인 임원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 3일전 감리결과가 당일 우원 설계 감리회사측 주장과 상반되는 이유로 비전문가인 피고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겠군요.

피고인 : 예. 사실 어느 주장이 옳은지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변호인 : 사고당일 12시경 있었던 우원 감리측 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원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긴급조치의 내용이 건물 4, 5층의 보수 문제에 관한 것이었죠?

피고인 :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는 백화점 건물 4, 5층의 보수문제에 온 신경을 쓰고있었지 건물전체의 붕괴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호인 : 그래서 백화점 건물 4, 5층의 고객 출입통제와 매장물품의 이동이 있었군요. 그런데, 오전에 있었다는 귀중품과 미술품의 이동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언론에서는 직접 지시했다던데.

피고인 : 어림 반쯤어치도 없어요. 다만 제가 도착해서 들은 바로는 보수공사때문에 이동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인 : 그럼 피고가 직접 이동을 지시했다는 언론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군요.

피고인 : 예, 정말 억울합니다.

변호인 : 대책회의에서 영업중단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피고인 : 대책회의에 참석한 안보여 소장의 마지막 보고가 더이상의 침하는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계속해도 별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인 : 그 이후부터 대책회의는 영업시간 이후의 철저한 보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보여씨가 침하 진행에 대해 끝난 것으로 보고 보수계획 브리핑까지 했을때에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피고인 : 사실 전 대단히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 붕괴 순간 피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피고인 : 건물안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 건물안에 있었습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그 건물 안에 있었겠습니까?

변호인 : 언론에서는 도망갔다고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피고인 :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들 말대로 나쁜놈이라 해도 어떻게 붕괴되는걸 알면서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도망가겠습니까?

변호인 : 건물에 있었다면 오후 5시 57분 사고 발생 순간까지도 전혀 붕괴 예측을 못하진 않았을 텐데... 사고 직전 보고받은 내용이 있었지요?

피고인 : 있었습니다. 5시 40분경 A동서 시설부장 이충실씨가 대책회의실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변호인 : 전화내용을 기억 하십니까?

피고인 : 현재 건물에서 소리가 나며 침하가 갑자기 진행되는것 같다는 내용이었 습니다.

변호인 : 연락을 접한 대책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피고인 : 안보여씨의 보수 브리핑중 닥친 일이라... 그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변호인 : 당시 대책회의에서 사고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 보군요. 전문가로 동석한 안보여씨와 전재포씨도 같은 반응이었습니까?

피고인 : 모두에게 불가능한 사실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변호인 : 이충실씨의 전화후 약 15분뒤 붕괴가 발생했는데 이 시간 동안 일련의 행위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인 :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 나는건 B동 건물에서 비상싸이렌이 울렸고 대책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소리에 건물을 빠져 나갔다는 사실 뿐입니다.

변호인 : 검사측에서 피고가 물건대피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만약 건물이 무너진 다면 피고한테는 물건의 소실과 고객의 사상 중 어떤것이 더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나요?

피고인 : 당연히 고객이죠.

변호인 : 그렇다면 건물붕괴를 예상할 수만 있었다면 말이죠, 피고가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돈을 중시했다면 고객대피를 지시했겠군요. 누가 물건철수를 지시했다 생각하세요?

피고인 : 아 그야 매장 주인들이겠죠.

변호인 : 피고는 당시 B동에 있었는데 A동에 비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까?

피고인 : 건물이 무너지는 판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전이라니요.

변호인 : 아직도 피고인 자신이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피고인 : (흐느낀다)

변호인 : 당시 상황상 A동과 B동의 안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겠군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만일 피고가 A동 건물 붕괴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면 안전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B동 건물에 붕괴 직전 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참사 사장에 대한 검사의 신문

재판장 : 피고인 이붕괴씨는 제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이참사씨에 대해 검사는 직접 신문하세요.

검 사 : 피고, 성명이 이참사 맞습니까?

피고인 : 예.

검 사 : 89년 11월 매장확장을 위한 2차례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죠?

피고인 : 아 그래요 있죠.

검 사 : 89년과 92년 사이 설계변경 및 증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했지요?

피고인 : 아, 그거야 매겼으니까 가능했던거죠, 뭐. 대한민국 공무원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전더 전 구청에게 한 1천만원 주었고요, 왕철관 전 구청장에게도 한 천 2백만원 주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매장확장과 증축을 위해 주택과 직원 정말로 하고 89년과 90년사이 당시 도시정비국장 이승리에게도 각각 5백만원을 주었고요, 그밖에 주택과 공무원들에게도 사례비조로 한 1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돌렸습니다. 뭐, 대한민국 공무원처럼 ‘떡’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추석날이다 설날이다 할머니 환갑이다, 아이 백일이다 하며 지네가 찾아와요, 떡값 좀 달라고. 그러면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해서 얼마씩 성의를 표시했죠, 뭐 다 그렇고 그런거죠.

검 사 : 이붕괴 씨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피고인 : 저희 아버지 그만 말씀 안하시죠, 저야 뭐 이렇게 된 마당에 감출 필요

가 없다는 생각에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 사 : 아무튼 잘 봐달라며 돈을 준 결과 별탈없이 잘 처리 되었다는 것이군요.
92년 10월부터 93년 6월까지 지하 1층 운동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고
5층 탈의실 상부를 증축한 혐의로 고발되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백화
점 법인과 회사간부들이 각 3천만원씩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 아. 그게 아주 열받더라구요, 내가 개네들한테 돌린게 얼마데요. 뭐, 하
긴 요즘 공무원들 돈만으론 안되긴 하지만. 그 당시 갈비짜도 좀 돌렸어
야 하는 건데.

검 사 : 그 당시 명령대로 원상복구 했습니까?

피고인 : 하긴 뭘해요. 나중에 지네가 찾아와서 “하도 위에서 눌러데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까지 하고 가더라니까요. 뭐, 아버지랑 저랑은 그때가
참 좋았죠.

검 사 : 92년과 93년 사이 백화점 매상 수입이 좋았죠?

피고인 : 다른 백화점에 비해선 우리 백화점은 불황 같은걸 몰랐죠, 아 우리 백화
점이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최고급이었죠, 저희는 불황같은
거 모르고 장사 했습니다.

검 사 : 그렇다면, 매상 수입때문에 설계변경 및 매장확장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재고 역시 염두에 두지 않았겠군요.

피고인 : 그렇진 않았습니다.

검 사 : 예 좋습니다. 설계변경과 매장확장을 했던 당시 백화점이 제출한 설계도
와 600평이상 차이가 났지요?

피고인 : 600평이요. 제가 알기로는 600평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 사 : 매장확장 당시 정밀한 구조 계산을 했습니까?

피고인 : 아. 그거야 밑에 애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죠.

검 사 : 총 지휘권자인데 그런 중대한 사실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평소 고
객의 안전을 위해 신경 쓴적 있습니까?

피고인 :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소방시설 점검, 비상계단 점검. 뭐 적어도 일주
일에 두세번은 했습니다.

검 사 :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백화점 건물에 이상이 처음 있을때 보고를 받았겠
네요?

피고인 : 예. 맞습니다.

검 사 : 그때가 언제입니까?

피고인 : 6월 그러니까, 95년 6월초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 사 : 정밀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피고인 : 6월 27일쯤 안전진단을 요청 했습니다. 그 당시 별 위험은 없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 사 : 그 이후 보수를 했습니까?

피고인 : ...(고개 숙인다)

검 사 : 왜 미리 보수대책을 강구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은 보수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사고 당일 오전 5층 식당가 일부가 붕괴하자 이에 당황하여 오전, 오후 두차례 긴급대책 회의를 실시한것 아닙니까?

피고인 : 흠 (고개 숙인다)

검 사 :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피고인 : 그 당시 5층 바닥이 조금 솟아오르고 조금씩 금이 갔었나? 건물벽은 전날 조금씩 금이간 상태였고요, 뭐. 그정도 였습니다.

검 사 : 전날부터 금이 조금씩 간 상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날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겠네요? 그런데 왜 당일 아침에 영업통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피고인 : 그렇게 심각한 줄 대한민국 국민 누가 알았겠습니까?

검 사 : 사고당일 11시쯤 안전진단 결과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심각하지 않은 겁니까? 왜 그 안전진단 결과를 무시했습니까?

피고인 :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고객의 출입을 통제 했다니가요.

검 사 : 그런데 왜 5층 미술품과 보석은 옮겼습니까? 그리고 냉각기를 끄라고 했지요? 왜 끄라고 했습니까?

피고인 : (머뭇거린다) 그건..

검 사 : 분명히 냉각기를 켜지요? 그건 피고인이 건물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피고인, 건물바닥에 철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고인 : 그야 물론 ...(한숨 쉰다)

검 사 : 피고인, 건물 바닥에 철골이 없는 상태에서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솟아올랐다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객과 종업원을 대피

시키지 않은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건물은 절대 순간적으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이 건축전문가들 사이의 상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붕괴 조짐이 하나 둘씩 진행 된다는 말이죠. 앞에서 피고가 5층 바닥이 솟아오르고 금이 간 상태였고 건물벽은 전날부터 조금씩 금이 간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일련의 조짐들이 비전문가들의 눈에도 현저히 보였다는 것은 건물붕괴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을 인식 하면서도 붕괴순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을 대피시키지 않은채 물건과 영업이익에만 집착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참사 변론

재판장 : 변호인은 반대신문하세요.

변호인 : 삼팔 백화점 건설공사의 총지휘권자 맞습니까?

피고인 : 예. 맞습니다.

변호인 : 설계나 건설공사에 관해 전문지식을 습득한 적 있나요?

피고인 : 그런건 없습니다.

변호인 : 그럼 총지휘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피고인 : 완전히 서류상 지휘체계일 따름이죠.

변호인 : 하지만 완전하라는 말은 변호사로서도 이해되지 않는데요?

피고인 : 저는 서류상의 총지휘자일 뿐이니까, 실제상 문제는 저에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만거야 뭐 아랫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거니까요.

변호인 : 95년 6월에 있었던 건물균열 현상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다고 했는데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는 직접 관리하셨죠?

피고인 : 아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전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3일 전 점검이 이루어졌고 “별 위험이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저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변호인 : 사건당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원설계 감리측의 진단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피고인 : 사고 3일전 진단 결과와 상이하게 다른 4, 5층에 대한 긴급조치를 요구

하더군요.

변호인 : 그래서 냉각탑을 켜더군요. 피고는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요? 그렇지요?

피고인 : 예. 물론입니다.

변호인 : 당시 문제가 생긴 백화점 5층 식당 바닥을 직원들과 함께 뜯어보고 피고가 직접 부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피고인 : 뭐 철골이 없고, 모래가 많은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좀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변호인 :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5층의 미술품을 옮겼던 것이고 5층의 출입을 통제했군요. 맞습니까?

피고인 : 예

변호인 : 당시 피고가 인식한 부실 및 침하의 정도가 전체 건물의 붕괴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피고인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4층과 5층의 침하는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죠, 그저 이번 사고에 희생되신 분들에게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변호인 : 이붕피 회장이 도착한 이후, 긴급 대책에 대한 회의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피고인 : ...

변호인 : 피고 본인에게 있었나요?

피고인 :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변호인 : 사고당일 4시 이후 안보여씨가 건물 5층 부분을 진단하고 건물 붕괴 위험을 보고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피고인 : 아닙니다. 구조 기술자 안보여씨에게 균열현상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앞으로의 보강조치를 보고받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변호인 : 삼팔백화점 사장으로서 고객의 안전보다는 영업이익에 집착했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고인 :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라뇨, 그랬다면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냉각탑을 끄지도 않았겠죠, 폭폭 찌는 백화점에 고객이 들어오겠습니까?

변호인 : 앞서 이붕피 회장이 진술한 내용 중 사고당일 오후 5시 40분 A동으로

부터의 긴급전화를 받은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대책회의에 참석한 두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 그 순간 저와 회장님은 오직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구조기술자들은 안전하다, 안심하라고 말해 놓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릴 보고 어찌란 말입니까?

변호인 :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억뿐입니까? 달리 고객을 위한 긴급조치는 취하지 않았나요?

피고인 : 아닙니다. 긴급대피를 지시했습니다.

변호인 : 확실합니까?

피고인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욕하겠지만 저희 백화점 고객이 다치게 되면 그만큼 저희 백화점에도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저 이번 사고를 미리 예상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인 : 보신 것처럼 이참사 사장 역시 붕괴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고객을 보호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구요. 오히려 기술담당자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판단으로 이참사 사장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 역시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검사 더 물어보실 말씀있습니까?

검 사 : 예, 건축 전문가인 안보여씨의 건물붕괴 위험 보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보고 받은 보강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피고인 :

검 사 : 오후 5시 40분쯤 긴급 대피를 지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죠?

피고인 : 긴급대피를 지시했습니다.

검 사 : 물건 대피지시입니까? 고객과 종업원을 대피시키라는 지시입니까?

피고인 : 글썄....

검 사 : 사고 당일 직원의 안전하다는 방송외에 어떤 방송도 없었다는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로써 각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마치고 증거조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재판장 : 먼저 검찰측 증거신청 하십시오.

〈검사〉물증 : 사고당시 건물잔해인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과학수
사연구소의 보고서

서증 : 우원감리측의 감리결과 보고서

삼팔백화점의 설계도면

피고인 검찰신문조서

증인 신문조서

인증 : 한꺼더

공구리

전재포

구사일생

왕깁새

재판장 : 변호인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변호인〉물 증 : 설계감리필증서

A,B동이 붕괴시 서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설
계도

인 증 : 안보여

재판장 : 검사측이 신청한 전재포 왕깁새 공구리 한꺼더 구사일생을 인증으로 채
택하고 김수쌍 교수는 본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기각합니다. 물
증으로 사고당시 건물 잔해인 콘크리트 구조의 일부를 채택하고 소증으
로 신청한것을 모두 채택합니다. 변호인측이 신청한 안보여씨를 인증으
로 채택하고 설계감리필증서를 서증으로 채택합니다.

증인 인정신문

재판장 : 증인 한꺼더, 공구리, 왕깁새, 안보여, 전재포, 구사일생씨 입정하십시오.

재판장 : 서기 주민등록증 확인하세요.

재판장 : 증인, 한꺼더씨 맞습니까?

한꺼더 : 예

재판장 : 본적이 어디입니까?

한꺼더 : — — —

재판장 :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한꺼더 : — — —

재판장 :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한꺼더 : 1947년 6월 6일 입니다.

재판장 : 현재까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꺼더 : 전 ○○구청장이었습니다.

재판장 : 증인, 공구리씨 맞습니까?

공구리 : 예

재판장 : 본적이 어디입니까?

공구리 : — — —

재판장 :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공구리 : — — —

재판장 :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공구리 : 1956년 3월 17일 입니다.

재판장 : 현재까지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공구리 : 삼팔건설 현장소장이었습니다.

재판장 : 증인 왕킴새씨 맞습니까?

왕킴새 : — — —

재판장 : 본적이 어디입니까?

왕킴새 : — — —

재판장 :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왕킴새 : — — —

재판장 :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왕킴새 : 1964년 7월 17일입니다.

재판장 : 현재까지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왕킴새 : 춘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안보여

본 적 : ---

현주소 : ---

생년월일;1958년 4월 15일

현재까지 직업 : 한 건축연구소장

전재포

본 적 : ---

현주소 : ---

생년월일 : 1944년 4월 4일

현재까지 직업 : 우원감리회사 직원

구사일생

본 적 : ---

현주소 : ---

생년월일 : 1971년 1월 4일

직 업 : 삼팔백화점 매장 직원

재판장 : 증인들은 선서하세요.

증인들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 : 증인 한꺼번에만 남고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증인 (전 구청장)

검 사 : 90년 7월 당시 당신 직책이 뭐였습니까 ?

증 인 : 구청장입니다.

검 사 : 89년 11월 30일 가사용 정식사용의 개설증인서가 났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 인 : 잘 모르겠습니다.

검 사 : 90년 7월 중순에 피고인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 인 : 예

검 사 : 어떠한 사유로 받았습니까?

증 인 : 이봉괴 회장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서 제가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봉괴 회장은 좀 미흡하더라도 잘 봐달라면서 막무가내로 천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검 사 : 증인은 그 당시 담당 주택과장 김주택에게 준공검사 승인 결재서류 작성을 지시 했지요?

증 인 : 예

검 사 : 그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가, 반려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 인 : 예

검 사 : 무슨 이유죠?

증 인 : 신호등 문제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보고가 없어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며, 검토 보고서를 먼저 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 사 : 그 이후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지장이 없다는 요지의 허위 결재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지요 ?

증 인 :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 주택과장한테 돈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자니 서울시에서 계속 반려하고 해서 참 난감했지요.

검 사 : 그럼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증 인 : 아니, 주택과장이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했지요.

검 사 : 증인, 당시 주택과장이 당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증 인 : 그건...

검 사 : 좋습니다. 90년 7월 27일 오후 말을 맞춰 놓았던 이승리국장에서 임국장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 김과장이 가져온 서류가 반려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증 인 : 첫날이라 내용을 모르겠다고 나중에 업무 파악한 뒤에 처리하겠다고 했지요.

검 사 : 증인, 그때 다급한 나머지 김과장에게 국장 결재란을 비운 채 내 도장만 받으라며 임국장을 빼돌린 채 직접 결재했죠 ?

증 인 :

검 사 : 그리고 나서 만약을 대비해 임국장이 부임하기 직전 27일 오전에 서류를 비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것 아닙니까?

증 인 : 아니 그 생각은 제가 한것이 아닙니다.

검 사 : 좋습니다. 그후 삼팔측으로부터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1백만원, 백화점 옥상의 골프 연습장 설치를 허가해 주며 1백만원을 받았지요?

증 인 : 그 돈 다 내가 쓴거 아닙니다. 직원들 술값하라고 썼지요.

검 사 :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검 사 : 증인, 공직자의 책임자로서 생각하기를 정상적인 절차로라면 삼팔 백화점이 준공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까?

증 인 : 글썄요. 저희들이 까다롭게 검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건물 문제 많아요. 삼팔사람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으니까요.

검 사 : 마지막으로 증인 할 말 있습니까 ?

증 인 :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증인 (삼팔건설 현장소장)

검 사 : 증인 언제 우석으로부터 공사를 떠맡았죠?

증 인 : 89년에 맡았습니다.

검 사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 근게 89년 3월쯤인가 아마 그쯤 될 것어요.

검 사 : 공사 수주당시 공사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증 인 : 기둥 몇개 정도 세워졌읍니다.

검 사 : 우석측에서 공사를 포기한 이유가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대금을 깎은 이유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 인 : 즈그들 때려친 이유를 내가 어찌 알것소?

검 사 : 공사착수 당시 설계도면이 원설계도면과 차이가 났지요?

증 인 : 아.

검 사 : 그럼 설계 변경을 했다는 거군요?

증 인 : 아파.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들었소?

검 사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석건설 공사당시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는데 몇 번인지 아십니까?

증 인 : 허, 시도 때도 없이 즈그들 끌리는 데로 했는 갔습니다.

검 사 : 삼팔건설의 공사착공 이후에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증 인 : 한 시번은 될 것ियो.

검 사 : 세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뭘니까?

증 인 : 내가 알겠는가. 우계서 시킨게 했쥴이.

검 사 : 세차레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에 따른 구조계산은 했습니까?

증 인 : 아, 하긴 했쥴이.

검 사 : 89년 12월에 백화점 개장을 했지요? 그 당시 건물이 완성된 상태였습니까?

증 인 : 지금 다 뺏아진 A동은 다 지어가고 있었고요, B 동은 내부 공사 중이었어라.

검 사 : 증인, 그 기간이 불과 20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 기간동안 견고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증 인 : 택도 없소, 그래도 우계서 시킨게 넌들 어쩍니까?

검 사 : 왜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공기 단축을 했지요?

증 인 : 제가 알기로는 연말과 구정사이가 대목이기 때문에 그때 맞춘다고 그랬던거 같습니다.

검 사 : 영업이 우선이었던 거군요. 92년 10월에서 93년 6월까지 지하 1 층 운 동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고, 5층 탈의실 상부를 증축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 인 : 아.

검 사 : 지하 1층을 판매시설로 확장할 때 몇 개의 기둥을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 인 : 아. 있습니다.

검 사 : 건물의 기둥은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조 계산,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서 제

거한 것입니까?

증 인 : 하긴 했지만 건물 전체의 하중에 별 무리가 없는 기둥만 제거 했지여.

검 사 : 별무리가 없는데 건물이 무너집니까?

삼팔현장소장 (반대신문2)

변호인 : 삼팔백화점의 공사 공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요.

증 인 : 예. 지진에도 견딜만큼 튼튼한 공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로선 아무리 설계변경과 부실이 심했기로 그처럼 폭삭 내려 앉는건 지금도 상상이 안돼요.

변호인 :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었군요. 이상입니다.

증인 (당시 백화점5층 식당가 주인 왕김새)

검 사 : 사고 당일 증인은 어디에 있었죠?

증 인 : 저네요. 5층에서 춘원 식당을 했는데 주로 된장찌개, 육개장, 갈비탕을 팔아요.

검 사 : 5층에서 식당을 경영했지요?

증 인 : 예

검 사 : 사고 당일 오전 8시쯤부터 5층 바닥이 솟아 오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단데 맞습니까?

증 인 : 예

검 사 :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 인 : 5층 내부 기둥이 20cm 가량 금이 가고 아 글썽 천장이 내려앉은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요 관리실에 문의 했어요. 그리고나서 맞은편 냉면집에서는 글썽 천장이 우두둑 하면서 가라앉고 어머니 세상에, 우동집에서는 우동이 떨어지고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아 글썽 도망을 갈까 가슴도 쿵닥쿵닥 뛰고, 휴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직도 뛰네...

검 사 : 그때 시간을 정확히 아십니까 ?

증 인 : 9시인가? 10시인가? 아냐 아냐 9시 30분인가?... 한 오전 9시 30분에
서 10시사이였습니다.

검 사 : 백화점에서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증 인 : 5층 식당가에 노란 출입금지 테이프를 치더라고요, 그때 뭐하나 했지..

검 사 : 그 밖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증 인 : 점심때 쯤인가 대리석 바닥을 뜯더니 ‘어, 철근이 없네’ 하면서 어디론
가 가더라구요

검 사 : 5층에 전시된 미술품과 보석등을 간부지시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데, 목격했습니까?

증 인 : 예 (흥분하며) 말도 마세요. 아주 나쁜놈들, 간부들은 사고를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불안해서 제가 왜 옮기냐고 계속 물었는데도 아무런 대
답도 해주지 않은거 있죠?

검 사 : 사고당일 오후 1시쯤 5층 식당가에 백화점 간부들이 와서 기둥 밑바닥
을 뜯어냈다는데 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증 인 : 기둥 밑바닥을 한 가로 20cm 세로로 약 120cm 정도 뜯으니까 철물 구
조물에 금이 가 있다고 그랬어요.

검 사 : 사고당일 오후 2시에 무전기를 들은 관리직원이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
다니며 ‘양호, 양호’라고 말했다는데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증 인 : 열댓 들은 것도 같은데...

검 사 : 사고당일 오후 4시쯤 증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증 인 : 5층에서 4층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었죠, 뭐.

검 사 : 왜죠 ?

증 인 : 전 아주 불안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직도 뛰네. 아직도...
휴 (부들부들 떠다)

검 사 : 증인,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 인 : 그 당시 5층 식당가 일부 주인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건물을 빠져
나가고 있었어요. 전 백화점 5층 식당가에 전 재산을 털어 넣었고, 건물
이 잘못되면 전 끝장이예요. 아저씨...

검 사 :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증 인 : 건물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3층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수해야 되는거 아니냐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렸어요.

검 사 : 관리직원들은 뭐 하던가요?

증 인 : 얼굴표정이 다들 긴장이 되어 있었지요. 어떤 직원들은 4층, 5층 매장 물건을 옮기고 있었더라고요.

검 사 : 사고당일 4시에서 5시 사이에 고객이 많았습니까?

증 인 : 4시부터 5시 사이가 장바구니를 든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아이고 글썄 그 시간에 하필 무너져 가지고.. 어휴 뭐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검 사 : 사고당일 5시 50분쯤 누군가가 갑자기 빨리 대피하라고 고함을 쳤다는데 맞습니까?

증 인 :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나서 우르르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어요.

검 사 : 사고당일 오후 5시이후 4층 식당가 보수 지역을 칸막이로 막고 영업을 강행했다는데 맞습니까 ?

증 인 : 그때 그 생각만하면 그것들 그냥

검 사 : 증인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증 인 : 예.

검 사 : 어떤 보수를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증 인 : 상황점검만 한 것 같고 나쁜 놈들...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검 사 : 그 당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증 인 : 아니요. 식당가 사람들도 그랬지만 직원들도 발발거리며 떨고 있었어요.

검 사 : 다른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증 인 : 아무리 그래도 종업원들은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해요. 고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뭐.

검 사 : 3층, 2층과 1층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증 인 :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1층, 2층 사람들은 새까맣게 물랐을 거예요

증인 (매장직원)

검 사 : 증인 사고당일 오후 5시부터 붕괴순간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증 인 : 3층 신사복 코너에 있었습니다.

검 사 : 사고 당일 오후 5시 47분께 직원들 사용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증 인 : 위급상황이니 빨리 매장의 상품을 철수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 사 : 그 당시 증인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증 인 : 지시사항이니까 일단 상품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검 사 : 혼자 옮겼습니까?

증 인 : 아니요. 여럿이 옮겼습니다.

검 사 : 고객들은 그런 사실을 아는 눈치였습니까?

증 인 : 아니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검 사 : 일부 임원들이 건물 붕괴 직전 대피 사이렌과 함께 안내 방송을 했다고 들었나요?

증 인 : 아니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검 사 : 그럼 그 당시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었나요?

증 인 : 오후 5시 이후에 직원들 사이에 많이 술렁거렸어요.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그런데 방송에서는 안전하니까 동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했어요.

검 사 : 증인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이 사고로 할 말 있습니까?

증 인 : 지금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저 역시 붕괴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고객과 종업원을 대피시키지 않고 상품만 옮기라고 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평소 직장을 가정과 같이 여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그들은 살아남고, 결국은 우리 동료와 고객이 죽었습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매장직원 (반대신문1)

변호인 : 당시 무전 연락을 받았습니까?

증 인 : 아니오. 같은 매장의 상급자가 연락 내용을 지시 했습니다.

변호인 : 그럼 증인은 그 지시의 정확한 출처를 모르겠군요. 이상입니다.

증인 (전재포 — 우원건축 설계감리사)

검 사 : 증인 당신 직책이 뭐죠?

증 인 : 네. 제 직책은 감리소장입니다. 그리고 삼팔백화점의 설계감리를 맡았습니다.

검 사 : 설계 감리사라면 시공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의 일치 여부를 감리하는 것이죠?

증 인 : 예.

검 사 : 증인은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인정합니까?

증 인 : 인정합니다.

검 사 : 왜 그랬어요?

증 인 : 저희 탓이 아닙니다. 저희는 완공 후에야 백화점 측으로부터 감리를 허가 받았고 그나마 현실적일 수 밖에 없는 감리조차 삼팔측의 간섭으로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요.

검 사 : 왜 그들이 감리에 간섭했다고 생각합니까?

증 인 : 그들은 자신들의 건설 경력을 아주 대단히 여기는 듯 했어요. 우리가 규정에 맞는 얘기를 하면 그들은 마치 우리를 물정 모르는 샌님 취급하더라구요.

검 사 : 사건당일 이참사 사장으로부터 건물 5층 균열 및 침하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요?

증 인 : 예.

검 사 : 몇시경 점검을 실시했습니까?

증 인 : 아마 정오쯤 일 겁니다.

검 사 : 점검결과 어떤 조치가 필요했습니까?

증 인 : 당시 건물 4, 5층 특히 5층의 침하가 상상외로 심해 5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검 사 : 예를 들어 고객들을 이동시키는거, 뭐 그런거 말입니까?

증 인 : 예 또 에어컨탑의 진동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 사 : 증인이 삼팔층에 긴급조치를 요구한 것은 증인이 당일 정오에 실시한 건물의 감리결과, 감리자의 입장에서 건물 4, 5층의 붕괴가 예견되었기 때문입니까?

증 인 : 그게 아니고 단지 건물의 침하가 심해서....

검 사 :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이때 재판장은 증인이 더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검사를 제지한다.)

증 인 : 에어컨탑이 계속 가동되고 600명 정도 고객이 이동할 경우 붕괴는 거의 분명했습니다.

검 사 : 백화점 간부와 함께 부실공사도 확인했죠?

증 인 : 예.

검 사 : 방금 전 증인은 거의 확실히 건물의 붕괴를 예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실에 기인한 것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그러한 인식은 삼팔층에 전적으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증 인 : 예.

검 사 : 증인은 확인한 부실이 건물의 4층과 5층에만 국한된다고 느꼈습니까?

증 인 :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검 사 : 그렇다면 건물의 붕괴가 예견된 4, 5층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건물로 비치고 있었던거군요. 증인?

증 인 : 그랬던것 같습니다.

검 사 : 증인, 증인이라면 위 상황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증 인 :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가능한 애깁니까?

검 사 :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신문(전재포)

변호인 : 증인은 삼팔측의 방해로 설계감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완전한 감리를 증빙한 문서에 결제를 했나요?

증 인 :

변호인 : 증인이 결제한 감리필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인 : 증인, 부실감리를 삼팔측에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증 인 : 아닙니다.

변호인 : 설사 삼팔측이 결제를 강요했다 치더라도 증인은 부실 감리를 거부할 직업적 의무가 있지요?

증 인 : 있긴 있습니다만.

변호인 : 그럼 증인은 부실시공에 적극적으로 한몫 했군요. 사건 당일 오후 4시에 증인은 어디 있었나요?

증 인 : 저는 그때 비상대책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변호인 : 그 자리에서 증인은 건물전체의 붕괴위험에 대해 증인의 참석자들에게 설득시켰나요?

증 인 : 예, 설득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제 얘기보다는 구조 기술자 안보여씨의 의견을 더 믿는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 이참사 사장은 증인이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증인이 건물상태에 대해 안보여씨 자신과 일치된 의견을 보였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 인 : 했는데요.

변호인 : 또 책임전가를 하는 겁니까?

변호인 : 사건당일 증인이 정밀진단도 직접했고 게다가 감리를 맡았던 건물이니 만치 위험성도 남보다는 더 심각하게 느꼈을테구요 붕괴되는 순간쯤에 어디 멀리 피해 있었죠?

증 인 : 무슨 소리요! 난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는거요!

변호인 : 아! 그래요? 붕괴될걸 예견하시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셨다.... 사고당일 오후 5시 40분경 A동에서 걸려온 비상 전화를 듣고 이 붕괴 회장 및 이참사 사장 증언에 의하면 대책회의 임원 모두가 혼비백산 했고, 붕괴직전 자동 비상벨이 울리자 본능적으로 건물을 빠져나갔

다던데, 그 순간 오직 증인만은 담담했겠군요? 거짓말 작작하시고 솔직히 좀 대답해 주세요.

증 인 : — — —

변호인 : 불행하게 증인에게도 역시 건물 붕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이 자신의 진술대로 붕괴순간까지 붕괴 위험을 백화점 임원들에게 설득시키고자 의도했다면 왜 진작 철저한 감리로 부실을 근본 차단하지 않았으며 구조기술자 안보여씨의 잘못된 판단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증인의 진술은 변호인이 보전에 전혀 고려할 진실성이 없다 사려되오니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 기대하며 이상 마칩니다.

변호인측 증인 1. 안전담당 안보여

변호인 : 증인, 증인은 이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가 난 백화점 건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조기술자로서 학계 및 현장에서 인정 받으시고... 증언 이전에 간단히 하실 말 없습니까?

증 인 : 모든 것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호느낀다)

변호인 : 증인. 증인은 자신이 이 사건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증인은 피고 이붕괴 회장과 이참사 사장에게 무슨 책임감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행위를 숨겨주고 싶었던가...

증 인 : 두분 모두 제말을 믿고 저의 보수 브리핑을 듣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두분에게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무수한 희생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두 피고인을 위해 진실을 감추겠습니까? 오직 제가 아는 바를 솔직히, 아주 솔직히 말할 뿐입니다.

변호인 : 사건당일에 대해 물겠습니다. 증인은 우원측의 긴급 진단 결과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렸고 백화점측의 대책이 증인의 진단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증 인 : 우원측의 진단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원측의 보고 내용대로 건물의 침하가 진행된 사실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물의

4, 5층을 관찰해 본 결과 더이상의 침하는 없는 소강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측이 원하지 않는 영업중단까지 할 필요는 없고 건물의 4, 5층의 출입을 통제한 뒤 철저히 아주 철저히 보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인 : 우원측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증 인 : 저의 의견대로 우원측도 소강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 사고당일 오후 4시부터 증인과 이형제, 우원측 소장이 참석한 비상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럼 그 자리에선 주로 기술자인 증인과 전재포 소장의 보고가 주요사항이었습니까?

증 인 : 예

변호인 : 증인은 부실 시공된 건물을 자주 접했을텐데, 어떻습니까?

증 인 : 비교적 접했습니다.

변호인 : 그럼 당 사건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경우 고층의 붕괴가 저층의 붕괴로 이어집니까?

증 인 :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문제된 층만 일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인 : 사고 당일도 붕괴 우려는 건물의 4, 5층에 집중되었군요.

증 인 : 그렇죠. 사실 지금도 이렇게 폭삭 가라앉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변호인 : 붕괴는 A동 건물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의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 연결된 B동 건물의 안전성은 어느정도 보장 받습니까?

증 인 : 일단 이런 붕괴가 일어난다면 누구도 B동 건물의 안전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B동 역시 A동만큼 같은 정도로 위험하지요.

변호인 : 그럼 증인과 백화점 간부진이 B동 건물에 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이었나요?

증 인 : B동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건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B동에 있던 저는 땀잡았습니다.

변호인 : 증인이 보수 브리핑 중이던 사고당일 오후 5시 40분경 이충실씨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기억하시지요?

증 인 : 예

변호인 : 이충실씨의 전화내용이 ‘현재 소리가 나며 붕괴 되는것 같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증 인 : 앉아서 이해했습니다.

변호인 : ...뭐요? ..그런말이 아니라..

증 인 : 순간 저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인 : 그럼 그 순간 전체 건물 붕괴를 예감했다는 겁니까?

증 인 : 건물전체 붕괴를 예감한건 전화 후 잠시뒤 B동 건물까지 흔들리며 비상벨이 울렸을 때였습니다.

변호인 : 증인의 말만 믿고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간부진과 건물안에 있던 고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까?

증 인 : 솔직히 후달렸습니다.. 누구나 할것없이 일단 건물밖으로 빠져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변호인 : 재판장님, 방청객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두 피고는 사고당일 오직 두 기술자, 여기있는 구조기술자 안보여씨와 앞서 증언한 검찰측 증인 전 재포씨만을 믿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영업을 지속시켰으며 오늘 살인죄의 피고로 이 법정에서 있습니다. 여기 증인 안보여씨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이 엄청난, 믿기 어려운 붕괴를 저 문외한인 두 피고가 예상했겠습니까?

안전담당 안보여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

재판장 :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검 사 : 증인. 당신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죠?

증 인 : 예.

검 사 : 증인은 ‘한’ 건축 연구소장이 맞지요?

증 인 : 예, 땃힌 ‘한’이 많아 한이라고 했습니다.

검 사 : 증인은 맹자 대학의 강사로 출강한 적도 있지요?

증 인 : 예.

검 사 : 경력이 몇 년입니까?

증 인 : 한 20년 정도 됩니다.

검 사 : 증인. 증인은 삼팔이외에 건물의 안전진단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가는 편입니까?

증 인 : 대개는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가지요.

검 사 : 그런데 삼팔측에는 왜 맨몸으로 갔지요?

증 인 : 방금 제가 말했듯이 잔밥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뭐 꼭 장비를 가져가야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귀찮기도 하고, 빨리 오라고 해서....

검 사 : 변호인 질문에 우원측 보고 내용대로 건물 침하가 진행된 사실을 목격했다는데, 맞습니까?

증 인 : 예. 하지만 많이 침하하진 않았습시다.

검 사 : 혹시, 지하 1층부터 쪽 검사해보지 않았죠?

증 인 : ---

검 사 : 이 건물이 부실 시공이라는데 아십니까?

증 인 : 잘 모르겠습니다.

검 사 : 그렇다면 지하 1층부터 전체를 검사도 하지 않고 그나마 육안으로만 4, 5층을 관찰했는데 그것으로 건물이 안전하다, 금방 무너질리 없다 등을 알수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인정 받는 기술자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증 인 :

검 사 : 증인, 4, 5층을 관찰해 본 결과 더이상 침하가 없는 소강 상태였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침하되던 건물이 잠시, 아주 잠시, 중단됐다 해서 침하되던 건물이 계속 침하되지 않던가요?

증 인 : 아닙니다.

검 사 : 증인이 육안으로 관찰해서 건물 침하가 목격되었다면 정밀검사와 차이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측의 원하지 않는 영업 중단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삼팔측에 잘 보일 일이 있나요?

증 인 : 아니 검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심한 말을..

검 사 : 그럼 평소에도 백화점측이 안전보다는 영업을 더 우선시 했다는 거군요. 증인. 사고 당일 오후 5시 40분경 이충실씨에게 전화가 왔었다는데 그 내용 보고 받고서 당신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 회장과 간부들도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았겠네요?

증 인 : 전화후, 회장님 이하 간부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검 사 : 예, 사고당일 대책회의에 임하는 이 회장의 태도가 혹시 건물 안전보다는 영업강행에 더 신경을 쓰는거 같지 않던가요?

증 인 : 그렇지요 뭐, 그러니까 저도 영업중단 해야한다는 말을 꺼렸고...

검 사 : 평소에도 그랬습니까?

증 인 : 그런 편이었습니다.

검 사 : 아까 붕괴가 일어났다면 누구도 B동건물의 안전은 예측할 수 없고 A동 건물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붕괴 조짐현상들이 B동에도 보였나요?

증 인 : 검사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바로 옆 건물인데 안전하겠어요?

검 사 : 건축 전문가로서 그런 말로 밖에 표현이 안되요? 붕괴 조짐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증 인 : ---

검 사 : 증인, A동과 B동이 따로 따로 설계되었고 다리 하나로만 연결된거 아니에요?

증 인 : 그건 그렇지만...

검 사 : 증인, 만약 A동과 B동의 안전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면 회장과 부회장 및 모든 이사진들이 A동 현상을 직접 확인하지 어떻게 B동에 있었겠어요? B동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한거 아니에요?

증 인 : ---

검 사 : 비상벨 사이렌이 울렸다는데 직접 들었습니까?

증 인 : 사이렌 소리로 알고 있는데요..

검 사 : 여기 그 당시 1층에 있었던 모대학 교수는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그리고 대피하라는 안내방송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만약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면 1층에 있었던 직원과 고객들이 못 빠져 나올리가 있겠습니까? 사이렌이 울리고, 안내 방송이 나왔다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검사는 최후 논고해 주세요.

최후 논고

수 신 : ○○ 형사 지방 법원 합의 3부

제 목 : 의견서

귀원 95 다합 1124 피고인 이봉괴 이참사 2명에 대한 뇌물공여, 살인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95. 10. 2

지난 95년 6월 29일 온 국민을 경악케한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과 몇달전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것이 었그제 같은데 대형참사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조롱이라도 하듯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만명이 드나드는 백화점이 아무런 외부의 충격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최근 2년 반동안 9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한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천민 자본주의의 당연한 결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본 사건 기소사실중 뇌물공여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진술은 생략하고 두 피고인의 기소 내용중 살인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본 검사단이 확신하는 바를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건물의 이상을 영업개시 이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했으며 더 나아가 문제된 상황들이 인명의 사상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것을 당일 긴급 진단 결과로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여타 미온적인 조치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 중 에어컨 탑의 가동중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쥔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 진술대로 과연 중단조치가 고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본 검사단의 소견으로는 그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탑을 중단한 것은 상식적으

로 생각해 보건데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영업강행은 오로지 영업이익에 눈이 먼 상태였던 것을 극명히 드러냈다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된다한들 그들의 맹목적 탐욕을 저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그들은 이 형언 못할 참사가 그들 눈앞에 드러나지 않고서는 결코 고객을 위한 영업중단을 할 위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첫째, 구사일생씨의 증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붕괴직전까지도 물건을 팔아줄 고객에게는 안전하다는 방송으로 고객의 인명을 기만함과 동시에 피해가 확실히 되는 매장물품의 이동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자신들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상황에서 고객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상품의 소실방지에만 몰두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의식상태는 피고인들의 살인에 대한 고의는 더 할 수 없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많은 희생자들이 왜 희생되었는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법가치가 사회의 어느 가치보다 앞서야 될 시점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좌우배석 판사님!

따라서 본 검사단은 국민들의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보조와 안정을 위해 사회에 만연된 부실의 모든 행태에 대해 뿌리를 뽑는 참된 시작으로 위 두 피고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최고의 책임을 단호히 물을 수 밖에 없다는 변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 129조 1항(뇌물공여)및 제 250조 1항(살인죄)을 물어 피고인 이붕괴, 이참사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예비적으로 제 129조 1항(뇌물공여), 제 268조 1항(업무상 과실 치사상)을 물어 금고 7년 6개월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피고인, 최후진술 하세요.

이붕괴 :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유가족여러분에게 헌납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참사 : 제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죄송할 따름입니다.

재판장 : 변호인, 최후변론해 주세요.

최후 변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두 피고는 우리의 기억속에 최악의 사고로 기억될 삼팔백화점 붕괴의 책임자로서 살인의 혐의를 받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 사건의 참혹한 결과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변호사들로 하여금 선뜻 두 피고를 변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재판심리과정 안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주지되어야 할 증거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본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 살인혐의와 관련하여 위 주장이 부당함을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가지로 요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피고인 이참사는 사고당일 건물의 이상침하를 발견하고 그 즉시 사장으로 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설계감리사에게 긴급 진단을 요청했고 진단결과를 피고인 이붕괴에게 알렸으며 문제된 층에 출입을 통제시켰습니다. 오후 두시경, 연락받은 피고인이 도착했으므로 피고인 이 참사가 살인의 고의를 책임소재가 이전되기 이전의 과정에서 그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긴급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 이붕괴는 자신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제된 층에 직원을 보내는 한편 자신이 신뢰하는 구조전문가 안보여씨에게 연락하여 상황의 보다 분명한 파악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미 심리과정안에서 드러나 밝혀졌듯이 구조전문가와 파견된 직원들이 한결같이 문제된 상황의 「종료」를 보고했고 이 참사는 그렇게 어이없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번째, 붕괴직전 A동 건물에서 걸려있던 이충실씨의 전화와 붕괴사고로 이미 사망한 이충실씨와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까맣게 모른 채 보수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던 대책회의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대책회의는 이제까지 자신들이 취한 고객안전조치를 갑자기 망각하고 회장 및 사장 자신에게 별 경제적 타격이 되지 않는 상품손실이나 막자고 이를

지시했다는 것인데.... 글썄요. 이따위 명령을 이행하고자 이충실씨가 붕괴를 파악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상품대피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은 본 변호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믿고 싶지 않겠지만 혹시 그들은, 이 사고의 책임자들은 정말 그들이 간신히 자신들의 목숨을 건졌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붕괴를 예견치 못했던 건 아닐까요? 본 변호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치 구니 없으나 이것이 우리 눈앞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은 심리과정안에서 모두 확인된 내용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본 변호인단이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살인의 죄로서 본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 처벌코자 한다면 이 사건에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본 변호인도 피고인들에게 심한 분노와 허탈을 느끼지만 이들을 살인의 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법적상식 아닐까요? 검찰의 그러한 의도가 혹시 죄형법정주의에 큰 오점이나 남기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피고들은 살인혐의와 관련해 전적으로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좌우석 판사님 현명하신 판결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 잠시 휴정후 판결하겠습니다.

I. 주 문

- 피고인 이붕괴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 이참사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II. 이 유

1. 범죄 사실

피고인 이붕괴는 삼팔건설 회장으로서 '95년 6월 29일 본인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 삼팔백화점 건물의 붕괴를 사망 503명, 부상 932명, 실종 65명 총 1500명의 사상자를 발생케한 자이다.

피고인 이참사는 붕괴전 삼팔백화점의 사장으로서 동년동월일 자신이 경영하

고 있는 동 건물의 붕괴로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케한 자이다.

2. 법령적용

신문과정에서 나타난 1987년 7월 건축허가시 실제 7만여평의 면적을 2만평 이하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건축허가를 피할 수 있었고, 89년 11월에 매장확장을 위한 2차례 설계변경과 3차례에 걸친 부분적 가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서 93년 6월까지 지하 1층 운동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5층 탈의실을 증축한 혐의로 3천만원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안정성을 제고하지 않은 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은 애당초 건물건축 당시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6월 27일 안전진단 결과 4, 5층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적절한 보수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붕괴전날 5층 바닥이 조금 솟아오르고, 조금씩 금이 간 상태였고, 당일 오전 11시쯤 안전진단 결과 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점심시간 이후 고객의 출입을 일부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오경 우원 감리측 전재포 감리사의 건물 붕괴 위험의 보고와 건물붕괴를 촉진할 원인이 될 수 있는 냉각탑의 작동을 멈추게 한 사실이 있다.

2시 30분경 구조전문가인 안보여씨의 건물조사 결과 건물붕괴가 소강상태라는 말만 신뢰하였고 안보여씨의 브리핑 중 5시 40분경 A동 시설부장 이충실이 대책회의실로 전화를 해서 건물에서 소리가 나며 침하가 진행되었다고 했고, 당시 증인 구사일생의 증언에 의하면 직원들 사용 무전기로 매장의 물건을 철수하라는 백화점 측에서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고, 또한 여러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5시 47분경 방송에서는 안전하다며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써 이충실씨의 전화 후 대피조치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그 후 약 10분 후인 5시 57분 건물이 붕괴되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충실씨의 5시 40분경의 보고 전화와 붕괴시간인 5시 57분 사이에는 17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이 17분이라는 시간을 백화점 내의 고객 및 정원들은 대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긴급대피 조치는 취해진 사실이 없고, 단지 물건의 대

피지시가 있었던 일련의 사실만이 인정된다. 양 피고인은 4, 5층 건물에서 건물 바닥에 철골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기둥에 금이 간 상태등의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건물 4, 5층 자체에만 붕괴의 위험성이 있고, 건물 전체의 붕괴에 대해선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형건물인 5층짜리 삼팔백화점의 4, 5층이 붕괴된다면 건물 전체의 붕괴는 예측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4, 5층만의 붕괴만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건물전체의 붕괴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어도 4, 5층의 건물의 붕괴는 얼마든지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4, 5층의 전면 폐쇄가 아닌 부분적 폐쇄로 인해 4, 5층 직원과 고객들이 대피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붕괴 전날부터 건물 붕괴의 위험성을 어느정도 예견하고 있었고, 특히 붕괴당일 5시 40경에는 붕괴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실하고, 인명 대피를 시키기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서 생명에 대한 안전의무와 보호의무를 지닌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물건의 대피와 인명의 대피라는 두가지 선택 상황하에서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물건의 대피만을 지시한 행위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백화점 내의 고객과 종업원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이붕괴를 형법 제 250조에 의거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이참사를 형법 제250조에 의해 무기징역에 처한다.

1995년 10월 2일 ○○ 지방법원 재판장 ○○○

판 사 ○○○

판 사 ○○○